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이주 다양성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문영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주여성들은 그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역할을 하며 서울시민과 함께 생활하고, 나이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 이주민 중 여성은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주 이슈를 여성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본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체류자격에 의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주여성들을 서울생활 경험과 생애주기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삶이 노동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유학생에게 공부가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이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연구를 통해 분석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외국인고용조사, 그리고 서울서베이 외국인 조사 등 각기 다른 조사에서도 이주여성이 경제활동, 가족 및 자녀 돌봄, 건강, 지역 활동 등 한국인들과 다른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면접조사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대가를 지급받거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 돌봄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주여성이 마주하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 서울시민의 일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주민으로서의 고충이 결합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일과 생활로 일상이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면접조사에 참여해 서울생활 이야기를 전해 주신 39명의 이주 여성분들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불어 주말도 없이 이주여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을 위

해 애써주시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혀 주신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분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 분들과 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서울시민이 함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 경희

Contents

I 서 론 _ 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7
3. 연구의 추진체계	10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현황 _ 13

1. 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15
1) 한국 내 체류 지위에 따른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	16
2) 이주여성의 출신 국적에 따른 연구	20
3) 이주여성의 생애사적 경험 관련 연구	24
4) 이주민 관련 논의와 중앙정부 정책의 흐름	27
2. 서울시의 관련 정책	28
1) 다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	29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세부 과제	31
3. 이주여성의 정책 이용 확장 가능성	33
1) 서울시 복지 정책과 건강 정책	33
2) 여성·가족·보육 정책	37
4. 요약 및 시사점	40

Ⅲ 서울시 이주여성의 현황 _ 43

1. 이주여성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45
1) 연령구간 별 이주여성 현황	47
2) 체류기간 별 이주여성 현황	49
3) 출신국적별 이주여성 현황	51
2. 이주여성의 실태와 삶의 질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분석	56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7
2) 서울 거주 결심 요인 및 거주 이후 서울에 대한 이미지	65
3) 가족생활 및 자녀 양육	68
4) 건강상태 및 관리	70
5) 사회적 관계망 및 부당한 대우 경험	73
6) 삶의 질과 행복도	81
7)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84
3. 이주여성의 노동의 실태 : 외국인고용조사 분석	88
1) 서울시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89
2) 취업 관련 실태	98
3) 현재 직장 및 관련 개인 이력	102
4) 이직 관련 이력	105
5) 구직 관련 경험	107
6) 기타 : 체류 희망 및 조사 참여 유학생 관련 결과	110
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와 공통 항목 비교	113
1) 경제 상태 및 주거	113
2) 경제활동 현황	115
3) 일을 둘러싼 경험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	119
4)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123
5. 요약 및 시사점	125

IV 이주여성의 서울생활 경험과 정책 수요 _ 129

1. 이주여성의 서울생활 경험에 대한 조사 개요	131
1) 면접조사 참여 집단별 특성	132
2) 면접조사 참여자 개인별 특성	137
2. 체류 지위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보편성	139
1)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과 경제력	139
2) 드러나지 않는 삶, 왜곡되는 현실	144
3. 체류 지위에 묶인 삶	153
1) 같은 일 다른 대우	154
2) 서울에 사는 다른 아이들, 다른 가족들	158
4.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생애사의 사건들	164
1) 격려 받지 못하는 임신과 출산	164
2) 아픈 몸, 불안한 노후	165
3) 삶을 위한 공간 확보	167
5. 이주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169
1) 기본권으로서의 건강	170
2) 적응지원 만큼 중요한 귀국 준비 지원	172
3) 통합지원의 과제	175
6. 요약 및 시사점	177

V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_ 181

1.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방향	183
1)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의 지속	184
2) 이주여성지원 정책의 확장 가능성 : 일반정책의 이용	185

Contents

2. 이주여성의 생애주기와 이주주기를 고려한 정책 지원	186
1) 건강	187
2) 자녀 양육 및 교육	188
3) 적응과 귀환 지원	189
3. 기타	190

참고문헌 _192

Abstract_195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1	연구 방법 및 내용	8
표 I-2	연구 추진체계	11
표 II-1	이주여성 출신국적에 따른 연구	21
표 II-2	이주여성의 생애사적 경험 관련 연구	25
표 II-3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주요내용(2014.05)	30
표 II-4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사업	31
표 II-5	제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서울시 세부 사업	32
표 II-6	서울시 복지 정책 사업	33
표 II-7	서울시 건강 정책 사업	36
표 II-8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사업	37
표 II-9	서울시 가족 정책 사업	38
표 II-10	서울시 보육 정책 사업	40
표 III-1	서울시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2014-2016)	46
표 III-2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연령구간별 분포 현황(2016)	47
표 III-3	서울시 등록외국인 성별*연령구간별 분포(2016)	48
표 III-4	서울시 성별*연령구간별 외국국적동포 인구(2016)	49
표 III-5	서울시 국민의 배우자 성별*연령구간별 분포(2016)	49
표 III-6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체류기간별 현황(2016)	50
표 III-7	국적 취득 이후 경과 기간별 주민 현황(2016)	51
표 III-8	동북아 지역 출신 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서울시, 2016)	51
표 III-9	동남아 지역 출신 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서울시, 2016)	52
표 III-10	중앙·서남아시아 등 출신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2016)	54
표 III-11	북미 및 유럽 출신 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2016)	55
표 III-12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출신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2016)	55
표 III-13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개요 (2016)	56
표 III-14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표본 할당표 (2016)	57
표 III-15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58
표 III-16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직업 분포 현황	60
표 III-17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고용형태	61

Contents

【 표 III-18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62
【 표 III-19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거주 주택 형태	62
【 표 III-20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주거 점유 관련 현황	63
【 표 III-18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거주 형태	64
【 표 III-22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거주지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	65
【 표 III-23 】	서울 거주 결심 요인 (5점 만점)	65
【 표 III-24 】	서울 거주 후 이미지 변화	67
【 표 III-25 】	서울 거주 후 이미지 변화 원인	67
【 표 III-26 】	결혼생활 만족도	68
【 표 III-27 】	취학연령 자녀 유무	69
【 표 III-28 】	취학연령 자녀와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유	69
【 표 III-29 】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양육 방법 (중복응답)	70
【 표 III-30 】	건강상태	71
【 표 III-31 】	건강 관리 방법_주로 찾는 의료기관	72
【 표 III-32 】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72
【 표 III-33 】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형태 (중복응답)	73
【 표 III-34 】	정기적 참여단체(중복응답)	74
【 표 III-35 】	감정·심리 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	75
【 표 III-36 】	건강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	75
【 표 III-37 】	금전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	76
【 표 III-38 】	취업·창업 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	77
【 표 III-39 】	차별 대우 경험 (5점 환산)	78
【 표 III-40 】	차별 이유 (중복응답)	80
【 표 III-41 】	차별 시정 요구 경험	80
【 표 III-42 】	임금체불 경험	81
【 표 III-43 】	서울 거주 이주여성이 보는 삶의 질	82
【 표 III-44 】	서울 거주 이주여성이 보는 행복도	83
【 표 III-45 】	서울 거주 이주여성이 겪는 삶의 어려움	85
【 표 III-46 】	서울 거주 이주여성의 지난2주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86
【 표 III-47 】	스트레스요인	87
【 표 III-48 】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88
【 표 III-49 】	외국인고용조사 시도별 표본 할당 구성	89
【 표 III-50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90

표 III-51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출신국적별 구성	91
표 III-52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학력별 구성	91
표 III-53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체류자격별 구성	92
표 III-54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체류기간별 구성	93
표 III-55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혼인상태별 구성	94
표 III-56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배우자 동거 관련 구성	95
표 III-57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배우자 국적별 구성	95
표 III-58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배우자 체류자격별 구성	96
표 III-59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가구유형별 구성	96
표 III-60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주거형태별 구성	97
표 III-61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주거 점유 형태	97
표 III-62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지난 1주간 유급노동 여부별	98
표 III-63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 성별 * 지난 1주간 무급가족노동여부별	99
표 III-64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지난 1주간 일시휴직 여부별	99
표 III-65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 *주당 총 취업시간	100
표 III-66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주당 총 주당 취업시간의 성격별	101
표 III-67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직업 분류별	101
표 III-68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종사상 지위별	102
표 III-69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사업장 산업분류별	102
표 III-70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월평균임금별	103
표 III-71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사업장 소재지별	103
표 III-72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사업장 규모별	104
표 III-73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현재 직장 근속기간별	104
표 III-74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동일직업근무 기간별	105
표 III-75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직장변경 유무별	105
표 III-76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직장변경 횟수별	106
표 III-77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이전 직장 산업분류별	106
표 III-77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이직 사유별	107
표 III-78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4주간 구직여부별	108
표 III-79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취업가능 여부별	108
표 III-80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구직활동 기간별	109
표 III-81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지난 1주간 활동 상태별	109
표 III-82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구직 희망여부별	110

Contents

【 표 III-83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계속 체류 희망여부별	110
【 표 III-84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계속 체류방법별	111
【 표 III-85 】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 *지난1년 취업 상황별	111
【 표 III-86 】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 *지난1년 취업 상황별 실태	112
【 표 III-86 】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일한 장소별	112
【 표 III-87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졸업 후 계획별	113
【 표 III-88 】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2015)	114
【 표 III-8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114
【 표 III-90 】 다문화가족의 주택점유 형태	115
【 표 III-91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구직경로(2015)	115
【 표 III-92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여부(2015)	116
【 표 III-93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종사상 지위(2015)	117
【 표 III-94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종사 직종(2015)	118
【 표 III-95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월평균 임금(2009, 2012, 2015)	118
【 표 III-96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지난 3개월 평균 임금(2015)	119
【 표 III-97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한국에서 구직 시 어려움: 복수응답(2015)	120
【 표 III-98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2015)	121
【 표 III-99 】 한국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2015)	121
【 표 III-100 】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내 사회적 지위(서울서베이, 2016)	122
【 표 III-101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관련 기관·단체 이용률(2015)	123
【 표 III-102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복수응답(2015)	124
【 표 IV-1 】 면접조사 시기 및 조사별 참여자 개요	132
【 표 IV-2 】 현재 체류 지위에 따른 면접조사 참여 이주여성	133
【 표 IV-3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따른 면접조사 참여 이주여성	135
【 표 IV-4 】 면접조사 참여 이주여성의 개인 특성	137
【 표 IV-4 】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170

그림 목차

■ 그림 V-1 ■ 이주 주기를 고려한 정책 과제	187
-----------------------------------	-----

■ 연구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이주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이주민의 삶 전반을 통찰해 왔다가 보다 국가가 나눈 체류 자격에 따라 구분하고, 정책적으로 분류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주민 인구의 규모가 크고, 이주민의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에서 혹은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민 정책을 바라볼 필요성도 있음.
- 이주여성의 삶이 연령이나 생애 단계에 따라 선주민의 그것과 다를 수 없음에도 이주여성 중 극히 일부 그리고 생애 단계의 특정 시점만이 정책적 관심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 이주민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현재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체류자격이 아닌 이주여성의 삶에 기반한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서울시 이주여성의 전체적인 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통계를 활용해 제시하고, 각 체류 자격에 따른 연령별 분포에서는 출입국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보조 자료로 사용하여 현황을 파악함.
- 이주여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자료로 2015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5), 외국인조용조사(2016)와 함께 서울 서베이의 외국인주민조사(2016)를 이용해 각 조사의 유사항목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주여성 공통의 이슈에 주목함. 이를 통해 국가가 부여한 다른 체류 자격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의 일면을 읽어내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실태를 제시하고자 함.
- 보다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면접조사임. 체류자격이 규정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은 실태조사나 기존 통계를 통해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주여성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성이

주노동자, 동포 등 이주민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나 이주민 전반을 지원하는 이슈별 지원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표 1 연구 방법 및 내용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정책진단을 위한 문헌 연구	- 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체류자격, 연령, 생애주기별 관련 연구 분석
	- 서울시 관련 정책 검토 - 여성가족부 등 정책 검토	- 외국인다문화정책 및 복지, 건강 정책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 실태 분석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자료	- 서울시 이주여성의 규모, 출신국적, 체류자격별, 성별*연령별 분포 등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2016) - 외국인고용조사(2016)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 각 조사에서 드러난 이주여성의 실태 - 각 조사의 공통질문 항목 분석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정책 수요 분석	-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 - 이주여성 지원기관 관계자	- 이주여성 전반을 위한 공통 지원 과제 - 기존 정책 이용에 대한 이주여성의 수요
	- 전문가 자문	-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 검토 - 서울시 이주여성 지원 정책 과제 발굴

- I 장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내용을 통해 연구 개요를 소개하고, 연구의 추진 체계를 기술함.
- II 장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의 현황을 제시하고, 복지정책, 건강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함. 이를 통해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변화 성장하는 이주여성의 현황에 발맞춘 정책 방향성 제시의 기반을 마련함.
- III 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통계, 출입국관리 통계를 통해 서울시 이주 여성의 규모를 파악함. 서울서베이의 외국인조사를 통해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의 분리 분석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노동 실태를 분석함. 이어 2015 전국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실태를 서울서베이와 외국인고용조사 분석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제시함. 기존의 설문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각 조사의 공통 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특히 체류자격별로 이주민 통계를 내고, 한국 내 삶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파악하고자 하는 실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함.

- IV장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에 연고를 둔 이주 여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등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구체적인 경험과 그에 따른 고충, 정책 수요를 제시함. 질문의 항목은 크게 첫 입국 경로,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 입국 후의 삶의 이력과 현재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함. 사적 공간, 일터, 지역 사회 등 삶의 공간별로 발생하는 문제, 건강, 일·생활 양립, 인권이나 차별 이슈에서 향후 전망까지를 망라한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V장에서는 서울시 이주여성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의 주민정책이 이주여성 전반에게도 확장될 필요성을 제안함. 즉 전반적인 현황, 당사자와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 분석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정책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여성지원 정책이 여성정책과 어떠한 연계성과 특수성 안에서 시행될 것인지를 방향성에 주목함.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의 서울살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하여 입국에서 출국 재입국 등의 분절적 단계가 아닌 전체 삶을 구성하는 한 시기로서 서울에서의 삶과, 입국에서 영주나 귀화 혹은 귀환까지 이주 전체를 아우르는 이주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함.

□ 연구 결과

-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정책, 그리고 일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정책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주민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복지정책이나 건강, 보육, 일자리 정책 중 특별히 정책 이용자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여성이나 그 가족도 주민 차원에서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기본적인 외국인 주민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2 ■ 서울시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2014-2016)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여	남	합계	여	남	합계	여	남
외국인근로자	104,309	45,464	58,845	102,081	42,425	59,656	85,878	34,154	51,724
결혼이민자	29,818	22,289	7,529	27,573	19,665	7,908	33,139	23,615	9,524
유학생	29,308	17,597	11,711	31,129	19,813	11,316	37,178	24,129	13,049
외국국적동포	96,440	52,990	43,450	80,707	44,830	35,877	80,712	44,603	36,109
기타	80,975	40,578	40,397	95,626	45,165	50,461	98,260	45,925	52,335
혼인귀화자	18,926	17,504	1,422	20,439	16,242	4,197	40,775	28,364	12,411
기타귀화자	25,057	14,631	10,426	20,081	11,704	8,377			
외국인주민자녀	30,226	14,899	15,327	30,447	15,111	15,336	28,095	13,886	14,209
전체	415,059	225,952	189,107	408,083	214,955	193,128	404,037	214,676	189,361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4.1% (전국 3.1%)			4.1%(전국 3.4%)			4.1%(전국 3.4%)		

- 연령대별로 전체 외국인 주민은 50대> 20대> 30대> 40대 순의 분포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 20대> 50대> 30대> 40대 순, 남성은 50대> 20대> 30대> 40대 순임
- 전체적으로 체류기간 5-10년 사이의 주민이 최다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년 미만 거주력을 가진 외국인 주민의 규모도 19.4%임. 1년 미만 거주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규모가 5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많고, 1년 미만 거주자 중 최다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이 39.4%를 차지함.

- 국적 취득자를 제외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총 335,167명(여성 172,426명/남성 162,741명) 중 동북아지역 출신자의 비율은 76.7%로 이주여성 중 동북아 출신은 77%, 남성은 동북아 출신자의 비율은 76.3%임.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조선족” 혹은 “동포”로 불리는 한국계가 압도적 다수로 전체 동북아지역 출신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전체 동북아 출신자의 65.4%를, 남성은 72.9%를 한국계 중국인이 차지함.
- 서울 서베이, 외국인고용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공통으로 관심을 보이는 질문 항목은 월평균 소득, 주거점유 형태, 고용형태 등 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
- 서울 서베이 주요 분석 결과
 - 서울거주 결심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는 경제 환경을 꼽았고, 거주 이후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 그 원인으로 여성은 외국인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차별을 들고 있음.
 - 취학연령 자녀가 있으면서도 서울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으로 여성은 본국과 다른 교육시스템을, 남성은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음. 초등 이하 자녀의 양육 방법으로는 가장 많은 여성이 어린이집을 들었으나, 실제 한국 국적자 가족이 아닌 경우, 어린이집 이용은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뒤에 이어지는 면접조사에서 이주여성들의 불만이 드러남.
 -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비용문제를 들고 있으며, 남성 응답자는 의료급여 형태에 대해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개인의료보험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정기적 참여 단체가 있는 경우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파악되는데, 한국사회에서 각종 어려움에 부딪칠 경우는 모국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차별 대우를 당한 경우 그 원인으로 는 출신국가와 한국어 능력을 들고 있음.

○ 외국인 고용조사 주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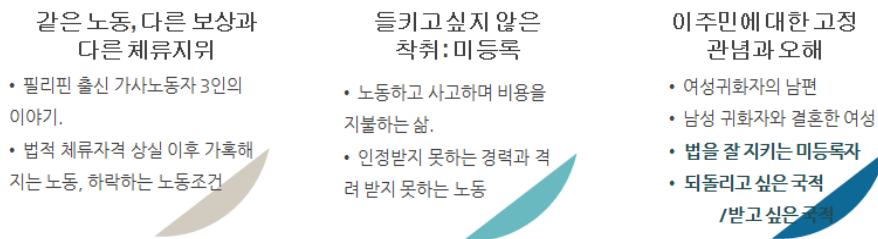
- 조사 참여자 중 여성은 유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사례에서 국내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응답이 역시 높게 나타남.
- 주거지는 일반주택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가보다는 월세, 전세의 비율이 높는데, 조사 참여 여성의 절반은 지난1주간 유급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주당 총 취업시간에 대해 여성은 20시간 미만 구간의 응답률이 전체 748명 중 391명으로 52.3%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전체 613명 중 40-50시간 구간이 195명으로 31.8%임.
- 서울 서베이와 외국인 고용조사의 차이는 조사 참여자의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나는데 서울 서베이에서 상용직이나 일용·임시직이 모두 30%대였던 데 반해 외국인고용조사에서 특히 여성은 상용직이 31.1%, 임시일용직이 63.2%라고 응답하고 있음.
- 월평균 임금에서 여성은 100-200만원 구간이 59.8%, 남성은 200-300만원 구간이 44.1%로 응답되어 임금의 성별 격차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응답 경향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유사항목에서도 나타남.

○ 면접조사 주요 결과

-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체류지위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얀마, 러시아 등 다양한 출신국적의 이주여성 39명과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 6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 이주여성들은 체류 지위가 무엇이든 급여를 받는 일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임금노동이 아니라고 해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음.
- 흔히 “불법체류자” 로도 인식되어 있는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임금노동에 참여하며,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지만, 오히려 일터나 지역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체류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도 발견됨.
- 질병의 치료가 생명과 연결된다는 점,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이주민에게도

미래와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건강권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정책임.

-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서 주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주민의 인식개선 노력도 개별 사안으로 무시할 수 없음.
- 이주민 지원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나 육아 등 생애주기와 맞물린 이슈와 함께 입국초기부터 귀환이나 영주로 이어지는 이주 주기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임. 현재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이나 이주민 공동 활동 지원에서 나아가 귀환을 위한 준비, 이주 주기에 따라 서울살이 전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함.
- 이주민을 둘러싼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



○ 정책의 방향과 과제

- 현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을 포괄하는 주민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정책이 이주민을 포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 생존권으로서 건강, 미래에 대한 권리로서의 육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공동체 형성 지원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과정의 이주민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제임.
- 한국어 교육이나, 생활 상담에서 나아가 입국초기부터 수입과 지출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경력 등을 기반으로 서울 생활 전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체류 기간이 정해진 귀환 예정자의 경우 귀환 준비부터 이후의 삶의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연구의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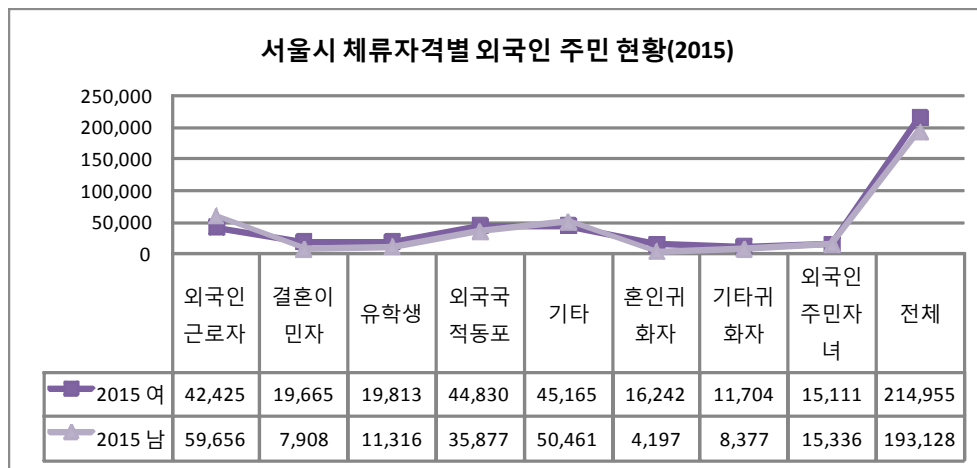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동포, 난민……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은 그들에게 국가로서의 한국이 부여한 체류자격으로 호명된다. 그리고 그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지고, 같은 삶의 단계에 있다고 해도 사회적 지원의 수준과 범위가 달리 적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에 따라 경험하는 삶이 다르다 해도 같은 시대 일정 연령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생애사적 사건이 있고, 매일 매일의 삶이 국가가 부여한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만이, 유학생에게 공부를 위한 삶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주자에게 결혼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이슈가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삶은 비자 체류 자격에 의해 결정되고, 체류자격이라는 규정은 이주민의 삶에 일종의 통제와 억압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이주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이주민의 삶 전반을 통찰해 왔다기보다 국가가 나눈 체류 자격에 따라 구분하고, 정책적으로 분류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이주민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선주민과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으며, 일하고, 감정을 나누며 사고하는 인격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온 기존의 정책 관행을 성찰하는 데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다른 체류 자격으로 살고 있지만, 동일한 시대를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인 이주민에 대해 정책이 간과

한 지점을 파악하고, 이주민을 개별화하거나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주민 인구의 규모가 크고, 이주민의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에서 혹은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이주민 정책을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 결혼이주자뿐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 그룹에서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기존의 통계를 통해서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여성정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슈는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에 더해 이주민이 처한 특별함을 정책이 어떻게 정교하게 반영해 갈 것인지도 간과할 수 없다. 기존 결혼이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정책이 집중해 온 분야뿐 아니라 노동, 건강, 돌봄, 노후준비 등 여성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에서 이주민을 기존 정책의 범주에서 포괄해 가는 것은 결국 이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인식과도 연결된다.

서울시의 경우 결혼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국내 체류 동포를 정책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까지 일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 정책 전반의 참여자나 수혜자로 이주민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이주민 정책이 외국인다문화라고 하는 범주에 묶여 시민 일반에 대한 정책과 별도의 범주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현실은 현재 정책이 가진 한계이자 선

주민과 이주민으로 양분화 된 체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동포 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분류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그동안의 정책이 관심을 기울여 온 법적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이주여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이 실제 어떠한 삶의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제시한다. 기존의 통계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도 체류 자격 별로 이주여성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외국인고용조사, 외국인주민조사라는 각기 다른 조사들이 이주민에게 던진 질문이 공통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체류자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다문화정책으로 대표되는 이주민 정책과 함께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검토하여 이주여성이 이용할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진단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이 실제 이주민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시한다. 특히 인간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건강, 기본적인 생활과 연결되는 복지 이슈에서 이주여성이 서울시 정책 이용자로 입지를 취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을 서울시 정책과 상호 보완점 모색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당사자의 현실에 기반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지원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어떠한 현실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심층면접

을 통해 제시해 갈 것이다. 이주여성의 삶이 연령이나 생애 단계에 따라 선주민의 그것과 다를 수 없음에도 삶의 극히 일부분만이 정책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넘어 이주민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현재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체류자격이 아닌 이주여성의 삶에 기반한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경을 넘는 이주가 일반화된 시대에 법적으로 부여한 체류 자격은 개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체류자격 그 자체가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현실을 진단할 필요성은 보다 잘 살아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 온 행위가 삶 자체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서도 비롯된다. 국가가 개인으로 하여금 국경을 넘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또한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에서, 거리에서 보다 많은 이들과 접촉면을 넓혀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선주민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새로운 정책 과제의 발굴에 앞서 선주민이나 이주민 일부에게 적용되는 지원 정책이 이주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주민에 대한 연구나 정책은 일종의 소수자 연구 내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보편적 복지 이전에 선택적 복지 논의에서도 우선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주여성에게 적용되는 정책이 단속이나 규제 등 억압이 아닌 지원으로 기능하고 이주민 또한 선주민과 더불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방안을 찾는 것은 이주민을 받아들인 우리 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한번 뿐인 삶의 일회성, 국경을 넘는 행위로 인해 단절될 수 없는 삶의 지속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적 다름, 언어 문제,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등을 겪는 이주여성에게는 보다 첨예할 수밖에 없다. 노동하고, 생활하며, 감정적 교류를 하며 살아가는 이주여성의 삶은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유학생 등 단일하게 주어진 체류자격 안에서 묶여 있으면서도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선주민이 겪고 있는 도시거주자의 다층적 부담이 중첩된 일상의 연속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에서 이주여성은 기존의 외국인주민 통계에서 사용되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혼인귀화자 및 기타 사유 귀화자 등을 의미한다. 서울 거주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이 처한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이미 집계되어 있는 통계나 설문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에 의한 분석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서울시 이주여성의 전체적인 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되는 외국인주민통계를 활용해 제시하고, 각 체류 자격에 따른 연령별 분포에서는 출입국관리본부의 통계 자료를 보조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가장 최근의 외국인주민통계가 2017년 11월 발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본부의 통계 또한 이와 시점을 함께 한 자료를 위주로 인용한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자료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외국인조용조사(2016)와 함께 서울서베이의 외국인주민조사(2016)를 이용하고자 한다. 특히 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체류 이주여성에 대해 조사들이 보는 공통의 주제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부여한 다른 체류 자격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의 일면을 읽어내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보다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면접조사이다. 연구가 애초 문제제기했던 체류자격이 규정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은 실태조사나 기존 통계를 통해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왔을 지라도 같은 시기, 한 공간을 공유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공통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으로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에 따라 유사한 문제라고 해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이야기는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이주여성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성이주노동자, 동포 등 이주민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나 이주민 전반을 지원하는 이슈별 지

원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정책연구의 특성 상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서울시 차원의 정책 과제 발굴을 염두에 둔 연구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이주민 정책을 기본으로 복지정책, 건강정책을 함께 검토하여 이주민이 서울에 사는 거주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의 범주가 보다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해 갈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함께 일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이주민 정책으로 포괄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 주된 분석 범주로 고려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앞서 밝혔듯 이 연구는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에 대해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의 정책은 서울시 정책과 상호 보완 지점을 찾는 선에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심으로 보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별 정책으로 외국인을 별도의 범주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민여성 과 귀화자 가족을 정책 범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이주여성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서울시 이주여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제를 발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주여성들이 서울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서울시 민과 더불어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1 연구 방법 및 내용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정책진단을 위한 문헌 연구	- 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체류자격, 연령, 생애주기별 관련 연구 분석
	- 서울시 관련 정책 검토 - 여성가족부 등 정책 검토	- 외국인다문화정책 및 복지, 건강 정책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 실태 분석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자료	- 서울시 이주여성의 규모, 출신국적, 체류자격별 성별*연령별 분포 등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2016) - 외국인고용조사(2016)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 각 조사에서 드러난 이주여성의 실태 - 각 조사의 공통질문 항목 분석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정책 수요 분석	-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 - 이주여성 지원기관 관계자	- 이주여성 전반을 위한 공통 지원 과제 - 기존 정책 이용에 대한 이주여성의 수요
	- 전문가 자문	-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 검토 - 서울시 이주여성 지원 정책 과제 발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의 현황을 제시하고, 복지정책, 건강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변화 성장하는 이주여성의 현황에 발맞춘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III 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통계, 출입국관리 통계를 통해 서울시 이주 여성의 규모를 파악한다. 서울서베이의 외국인조사를 통해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의 서울시 분리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실태를 서울서베이와 외국인고용조사 분석 결과의 연장선 상에서 제시한다. 기존의 설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각 조사의 공통 질문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이주민 통계를 내고, 한국 내 삶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파악하고자 하는 실태가 있다는 점에서 이주여성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V 장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에 연고를 둔 이주 여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등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구체적인 경험과 그에 따른 고충, 정책 수요를 제시한다. 질문의 항목은 크게 첫 입국 경로,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 입국 후의 삶의 이력과 현재까지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적 공간, 일터, 지역 사회 등 삶의 공간별로 발생하는 문제, 건강, 일·생활 양립, 인권이나 차별 이슈에서 향후 전망까지를 망라한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

악한다.

V 장에서는 서울시 이주여성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의 주민정책이 이주여성 전반에게도 확장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즉 전반적인 현황, 당사자와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 분석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정책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여성지원 정책이 여성정책과 어떠한 연계성과 특수성 안에서 시행될 것인지를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의 서울살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하여 입국에서 출국 재입국 등의 분절적 단계가 아닌 전체 삶을 구성하는 한 시기로서 서울에서의 삶과 입국에서 귀환까지 이주 전체를 아우르는 이주 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3. 연구의 추진체계

기존 연구가 체류 자격, 입국 목적에 따른 이주여성의 현황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면 이 연구는 이주여성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이주여성에 대한 특화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의 복지, 건강 등의 정책 이용자로 이주여성이 포함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즉 주민 권리 관점에서 다양한 이주여성이 어떻게 정책 범주에 포함될 것인지를 고려하고, 특화정책으로서의 외국인다문화정책과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연계점을 모색함으로써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확장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I-2 연구 추진체계

단계	주요내용		
1단계 연구 기획 및 착수	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서울시 정책 검토: 행정자료 분석 - 이주여성 인구 : 외국인주민통계 및 출입국 통계 분석	
	착수 자문회의	- 대상: 학계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 논의내용: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착수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조사	실태분석	- 기존조사에 나타난 서울시 이주여성의 현황 및 정책 이슈 도출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한 실태 및 쟁점 분석,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공통항목 비교 분석	서울시 이주여성 의 현황 및 정책 지원의 범주 파악
	이주여성 면접조사	- 이주자의 삶에 기반한 정책 이슈 도출: 가족, 노동, 일상 의 도시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정책 요구	
3단계 정책 방안 도출	전문가 FGI	-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범주 - 생애주기와 한국에서의 거주력 등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서울시 여성정책과 외국인다문화 정책에서 이주여성 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 과제 제안 - 복지·건강 등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정책의 가능성 제시	
4단계 최종 보고	최종심의 및 최종보고 연구보고서 발간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현황

1. 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서울시의 관련 정책
3. 이주여성의 정책 이용 확장 가능성
4.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현황

1. 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이주와 관련된 가장 큰 현상적 흐름은 국경을 넘어 나가는 이주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이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 이주와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어 2006년 이후에는 ‘다문화열풍’으로 불릴 정도로 관련 논의가 급증하였다(이혜경, 2014). 애초 노동이주, 이주노동자 문제가 먼저 제기되었으나, 논의의 흐름은 곧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슈와 맞물려 결혼이주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쪽으로 전개된다. 이와 함께 이주민을 포함한 그 가족에 초점을 둔 다문화가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보다 강화되었다. 일부 한국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출신국가를 변수로 상정하고 있으나, 정책이 그러한 변수를 고려해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적 관심은 이주민의 체류 자격(혹은 입국 목적)에 따라 분리되고 있으며, 이 또한 이주민으로서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초기 적응과 사회구성원(혹은 국민)으로서의 정착과 재생산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

국제이주와 다문화의 긴밀한 연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 국제 이주와 다문화를 별개의 현상인 듯 논의해 온 데 대한 비판은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아시아에서 결혼이주가 노동이주의 여성 버전이라는 인식은 동남아 지역에서 여성의 이주 욕망에 비해 좁은 이주의 통로가 결혼이주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기준 141만 명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주자가 차지하는 비

중은 16%에 불과하나, 2012년 국제이주 연구의 55%, 다문화 연구의 60% 이상이 다문화,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이혜경, 2014)는 지적도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마치 다문화에 관한 연구로 인식되어 다문화라는 이름의 연구가 폭증하였기 때문으로 진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한국 내 체류 지위에 따른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둔 최근(2013-2017) 연구는 취업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임금문제, 취업준비와 노동 특성 등에 따른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에 주목한 연구(장명선 외, 2017)에서는 이주여성을 취업지원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생산적 기여자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며, 노동현장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주여성이 출신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 연구(김민길 외, 2016)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을 기준으로 베트남 출신여성이 가장 저임금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일반적인 차별 문제에서는 필리핀 출신 여성이 보다 큰 차별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국에서의 인적 자본이 한국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직업 및 기술 교육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직업 커리큘럼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네팔 출신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사례 연구(이기연, 2015)는 중소형 공장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 시간제·임시직 노동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임금 노동이 소수자로서 협상의 매개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임금노동이 주체적 의사결정에 작용해 자기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수자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노동의 기회와 권리가 소중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적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난한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는 소수자 위치성이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순 또한 반대 급부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 출신 여성들의 취업 준비 경험에 대한 연구(공수연 외,

2014)는 이들이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모성에 기반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모델 제공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육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화된 직종인 통번역사 창출과정과 노동 경험을 분석한 연구(김경희 외, 2014)는 통번역사는 일종의 에스닉 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외면적 특성에 반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예산이나 정책 환경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분석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종사하는 통번역사 직종의 특성을 이주 경험과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로 살아가면서 습득한 정보와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이주민들을 대변하거나 조력하는 역할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지역사회 통역의 전문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고급 통역과는 다른 기준의 전문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지위가 낮은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베트남, 몽골, 중국 출신 여성 중 취업 중인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를 분석한 연구(박미숙 외, 2014)는 출신국적과 문화 특성을 고려한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 초청 제도 완화, 자녀 양육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도시 지역에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일할 수 없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농촌 지역에는 자녀 양육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희망 직종에도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강조하였는데, 농촌 지역 여성은 봉제, 농림, 음식조리, 간병 간호 등의 취업 교육을 원하는 반면 도시 지역의 여성은 컴퓨터, 피부미용 교육을 희망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주여성 노동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예술홍행비자 소지 여성의 인권 침해(이병렬 외, 2017), 산업재해 경험(노지현, 2015), 특히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직장 문화 적응(박준성 외, 2015), 여성이주 노동자의 몸 아픔(이해웅, 2014), 한국에서 조선족 이모로 살아가는 육아 가사 도우미 노동 여성 등에 대한 내용(이송이 외, 2010)이 주를 이루는 한편 유학생들의 인턴십 경험(김선영, 2015)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술홍행 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경우 성매매, 출장 데이트 등을 강요당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두드러지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근로 계약 미준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 프로모션 관계자, 업소 사

장 및 관계자나 한국 동료 등에게 언어폭력, 구타 등의 물리적 폭력, 성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결국 상당수가 직장에서 이탈하여 미등록자 신분으로 체류 해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병렬 외, 2017). 유흥주점 및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노지현, 2015)에서는 열악한 처지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됐을 경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현실을 분석해 산업재해 치료 과정에서 내국인들의 억압과 착취, 변호사 등의 피해보상금 착취, 병원에서의 권력 구조 등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치료나 회복보다는 경제문제 등의 현실에 대한 고려로 자가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안정을 염두에 둔 결혼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이주를 둘러싼 이슈가 단순히 결혼이주인가 이주노동인가의 최초 체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주자 집단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족 직장 여성의 문화 적응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박준성 외, 2015)는 이들의 대처 유형을 순응형, 도구형, 도피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한국인과 다름을 밝혀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구조의 틀을 형성하는 형, 갈등과 차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을 참거나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형, 차별 후 이직을 선호하거나 하루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형으로 각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주 노동 과정에서의 건강과 관련한 연구(이해웅, 2014)는 특히 중장년여성(44-65세)을 중심으로 몸 아픔이 가시화되지 않는 구체적 과정과 자발적으로 몸을 혹사하게 되는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직장보험 가입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현실의 문제가 존재한다. 조선족 출신의 육아도우미 여성을 심층 면접한 연구(이송이 외, 2010)에서는 이들이 중국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로 한국을 좋아하지만 언어 사용의 미묘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아이부모들과의 관계, 한국인 가족과 삶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 등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공부와 노동을 이어주는 활동으로 인턴십 경험이 표면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내면적으로 자신감을 회복

하는 기회로 작용해 유학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선영, 2015)는 장점도 보고되고 있다.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중앙아시아(강현민 외, 2014), 중국(신선희 외, 2014), 몽골(최은희 외, 2014) 등 출신 국가 별로 접근한 연구가 있으며, 문화 및 교육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차별의 문제가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각 연구들은 유학 초기 생활 양상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강현민 외, 2014), 심리 상담과 사회적 지지망 형성지원, 취업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신선희 외, 2014), 대학 차원의 차별 제거 노력(최은희 외, 2014)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 출신 유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한국에서의 취업을 기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전문직으로 일하며 경제·사회적 대우를 받기 원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 신선희 외(2014)는 유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으로 전공 수업, 친구 사귀기,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외국인 여성으로서 성희롱과 성적 비하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성희롱 대처에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학생뿐 아니라 이주여성노동자 역시 직장 내에서 겪을 수 있으므로 체류 지위를 막론한 여성의 이슈로 접근할 과제이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차원에서 수행되었다.²⁾ 개별 연구자의 연구로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오는 부모를 따라 온 몽골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민가영, 2009)가 있는데, 이는 정책 연구들이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인 중도입국자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 한 것과는 차별성을 띤다. 한국과 몽골 사이를 반복적으로 왕래하며 둘 중 어느 한 곳

1) 이 연구의 면접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나는 점도 발견되는데, 몽골 출신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단순히 본국과의 연결선으로 상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 내 취업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와 한국 사이에 자원 개발, 건설 시장 등을 매개로 국내에서 취업이 되고 있는 데 반해 몽골과의 제한된 교류로 인해 취업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

2) IOM이민정책연구원(2013)에서는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201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 방향』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2012년 수립된 바 있으며 2017년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 후속 연구가 별도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 부분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지는 않음을 밝힌다.

에서도 동 세대인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는 특수성, 한국에서의 미등록 문제, 한국에서 유학생이라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몽골에서의 노동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특징을 보인다.

2) 이주여성의 출신 국적에 따른 연구

이주여성의 출신국적에 따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전반에 관한 연구(김민길 외 2016; 윤승주 외, 2016; 이희영, 2014; 박재규, 2013)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자(이민경, 2015; 공수연 외, 2014; 박준성 외, 2015; 이해웅, 2013; 이송이 외, 2010; 윤민숙 외 2011), 베트남(이은아, 2013), 필리핀(김영경 외, 2014), 네팔(이기연, 2015), 몽골(윤승주 외, 2016; 최은희 외, 2014; 민가영, 2009), 우즈베키스탄(노지현, 2015; 강현민 외, 2014), 일본 출신자(박재규, 2013; 이희영, 2014)에 대한 연구로 재분류 될 수 있는데, 위 연구들은 체류 자격별로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에 둔 연구이다.

결국 체류 지위에 따른 연구가 되었든 출신국적에 따른 연구가 되었든 현재 이주여성 연구의 중심에는 결혼이민여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어느 정도 한국 사회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네팔 여성에 대한 연구(이기연, 2015)에서는 출신국과 한국의 정책이 여성의 이주를 결혼이주로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드러나 있다. 즉 한국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외화벌이를 위한 네팔 정부의 여성이주정책이 이들의 한국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네팔 사회의 가부장성이 결혼이주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결혼이주를 통해 네팔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흐름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의 서울 거주 여성에 주목한 연구(김경희 외, 2014)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는 정책적으로 부정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 편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번역사라는 전문 직종에 고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문제를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출신 국적에 따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또한 지적하고 있는데 서구 출신 외국인에게는 글로벌, 국제의 이름으로 아시아 이주여성에게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윤승주 외, 2016).

표 II-1 | 이주여성 출신국적에 따른 연구

국적별	저자	내용
동아시아 국가	김민길, 김영직, 조민호(2016)	- 일본을 제외한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들은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음 -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과의 임금격차의 크기는 베트남인, 기타 동남아인, 필리핀인, 일본인,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순으로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더 차별을 받고 있음
	이희영(2014)	□ 여성의 출신국적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의 차이 - 한-조선족, 한-캄보디아 결혼의 경우 양국 사이 경제적 격차가 기본적 행위요소로 작동 - 한-일 결혼의 경우 국가 간 경제력보다 젠더위계가 강하게 작동 - 한-중, 한-일본 결혼의 경우 남편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현재 공간과 미래 공간이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구성됨
	박재규(2013)	□ 국적별로 선호하는 취업 내용의 차이(박재규 외, 2010) -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주여성 : 의복, 봉제, 음식 조리, 미용 피부 교육에 관심 - 필리핀 이주여성 : 자동차 건설 면허 취득에 관심 - 조선족 이주여성 : 컴퓨터 정보통신, 음식 조리 관심 ⇒ 국적별 선호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 교육 프로그램 구성 단계부터 이주여성의 국적별 특성 고려 필요
중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	이민경(2015)	- 고학력자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에 내재하는 지배적 이미지를 인지,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범주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한국사회에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주류와 동일시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나감
	공수연, 양성은(2014)	□ 한족-조선족 사이의 차이점 나타남 - 조선족은 한족을 토종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한족은 조선족을 한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부럽게 여김 - 한편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 중 자신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주류사회에 더 근접하다고 생각함 - 같은 중국인이지만 한족은 한족끼리 중국인은 중국인끼리 어울림
	박준성, 허성호, 전미연, 정태연(2015)	□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특성 - 중국 국민이면서 조선 민족이라는 이중 정체성 가짐 - 남한 정부로부터 제도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임을 인정받고 싶지만 차별의 경험을 통해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정체성 확인 - 이중 언어 사용자로 상황에 맞추어 언어의 전환(code-switching)을 꾀함

국적별	저자	내용
		-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차이 - 특히 여성들은 “한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준비된, 위장결혼 등으로 돈 벌러 온, ‘못 사는’ ” 중국에서 온 조선족 여성이라는 담론이 지배적 □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노동이주여성들의 이중적 정체성 - 정체성 : 국가정체성은 ‘중국’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민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 통해서 민족정체성은 ‘한민족’ 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법적으로는 외국인일 뿐임 - 언어적 의사소통 : 코드 스위칭, 즉 일할 때는 한국어 사용하지만, 일상에서는 중국어 사용. 다른 말투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정치경제적 측면 : 공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 경험,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 내에서 집약적이고 장기적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월급을 한국인보다 적게 받음, 4대보험과 실업급여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함 - 대인관계 측면 : 나이를 따지는 문화에 적응이 어려움
	이해웅(2013)	-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직장보험 가입이 어려운 직종(개 인간병, 가사도우미 등)이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송이, 홍기순, 손여경(2010)	- 말이 통해서 편안하지만, 단어의 사용이 중국과 조금씩 달라 서로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겪기도 함 - 언어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주여성 당사자가 지게 됨
	윤민숙, 이정훈, 김정련(2011)	- 필리핀, 일본 등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조선족 출신 여성의 여가시간이 높게 타났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풍습이 비슷해서 한국문화 및 사회적응을 경험하고 습득하기 쉽게 때문으로 분석
베트남	이은아(2013)	- 베트남은 부부가 함께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양면적 가족문화를 배경으로 함 - 베트남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를 통해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과 문화적 차이를 더 크게 경험함
필리핀	김영경, 이정향(2014)	- 필리핀의 가톨릭 문화 때문에 종교공동체(성당)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필리핀의 친족주의 집단 형성하려는 문화적 정체성과 필리핀 고유의 가족주의, 카톨릭 문화가 결합되어 성당의 활동이 매우 정기적이고 빈도 높게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의 내부 결속력도 매우 강하게 나타남 - 반면 가족주의를 근거로 하는 문화 때문에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적게 나타남

국적별	저자	내용
네팔	이기연(2015)	□ 네팔 여성이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는 이유 - 외모의 유사성과 문화적 친숙함 - 외화벌이를 위한 네팔 정부의 여성 이주 정책 - 엄격한 가부장제 구조인 네팔 사회에서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이주를 선택 - 네팔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이주하게 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네팔 여성이 한국이주를 결정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침 - 한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됨 □ 네팔 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 네팔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몽골계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사회에서 거부감 없이 수용됨 - 네팔 사회의 뚜렷한 젠더관념 같은 요소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최소화시킴 - 대부분 결혼중개소 통해 이주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가 가장 안전한 정착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남아시아의 다른 이주와 유사함
몽골	윤승주, 원재연(2016)	- 사회주의 사회로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교육을 받고 가사도 부부가 분담해야 하는 몽골과 다르게, 한국사회에서 겪는 시댁의 커다란 권력이 힘들게 다가옴
	최은희, 조영아(2014)	- 몽골 유목민의 자립적인 특성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경제적인 어려움은 적게 경험 -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선후배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몽골과 비교할 때 교수나 선후배 관계, 연구실 환경 적응 등의 어려움 -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학위과정 후 몽골로 돌아가 전문직으로 일하며 경제적, 사회적 대우를 받기 원함
	민가영(2009)	- 몽골에서 구할 수 없는 화려한 옷, 인형과 동일시된 ‘잘사는 나라’ 한국에 입국했으나, 몽골에서보다 더 못한 집과 동네에서 살게 되며 한국 내의 이질성 경험 - 다시 몽골로 돌아갔을 때 아무런 노력 없이도 합법적 지위 갖지만, 몽골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또래로부터 ‘다른 사람’ 취급을 받는 상황 경험
우즈베키스탄	노지현(2015)	- ‘튀는’ 외모 때문에 아시아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식당 등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음
	강현민, 니고라혼, 홍유나(2014)	□ 우즈베키스탄 출신(여성) 유학생의 학교 적응 경험 - 교육 시스템의 차이 : 우즈베크는 러시아 교육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의 경쟁적 방식보다 협동적 방향을 제공하고 있음 - 우즈베크의 문화도 선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이

국적별	저자	내용
		기 때문에 교수나 선배와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자신을 서양인으로 대하는 시선이 힘들지만, 역으로 이 상황에 적응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워냄
일본	박재규(2013)	- 일본 국적 이주여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취업 가능성 낮게 나타남 ⇒ 일본 국적의 이주여성 취업의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기존연구에서 이유를 유추 가능(박재규 외, 2010)
	이희영(2014)	- 일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재 공간과 노년의 미래 공간을 분리해서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3) 이주여성의 생애사적 경험 관련 연구

일부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주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개별 이주 집단을 넘어 종족적 소수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에 대한 요구는 이주여성의 현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체류 지위에 따른 연구 현황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으며, 체류지위와 무관한 공통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여성 319명에 대한 서베이 조사(문형란, 2016)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분석을 통해 높은 자아 존중감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이 신뢰와 언어능력에 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친구와 이웃의 지지를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요인으로 꼽으며, 한국어 중심의 사회통합 교육 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자본은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³⁾ 즉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 신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결국은 이주여성 정책 전반에서 참고할 만하다.

건강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윤기찬 외, 2016)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지원되는 정책 프로그램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체류

3) 연구 결과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어 있으나, 배우자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다른 체류 지위의 이주여성에게도 모두 해당하는 공통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자격의 이주여성에 대한 접근보다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중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사적 사건이 반드시 결혼이주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이주여성 과 이주자 가족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Ⅰ 표 Ⅱ-2 Ⅰ 이주여성의 생애사적 경험 관련 연구

생애사적 시점	저자	내용
청소년	민가영(2009) (중도입국청 소년 10대)	- 일상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언어, 또래 문화, 소비문화를 경험하면서 ‘십대’로서 한국 또래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인정된 삶을 얻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등록’이라는 한계를 인식하며 완전한 학생, 소비자로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됨 -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대가로 사춘기 시절의 반항을 반납함
대학생 (유학생)	신선희, 유문무 (2014)	□ 유학생으로서의 어려움 - 전공수업의 어려움 - 친구사귀기의 한계 : 중국학생끼리 어울림, 한국은 나이가 많으면 친구되기 어려움 - 외로움, 우울, 그리고 극복 : 외롭고 우울함, 참고 버틴 것은 가족 때문 - 사회·문화적 차이에 당황 : 외래어, 더치페이 등 서구적 문화와 선후배 서열관계의 어려움 - 차별과 무시 : 한국인과의 차별대우, 중국인은 더럽다는 선입견 - 중국(산)에 대한 무시 □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 성희롱 : ‘외국인=약자’라는 인식에 ‘여성=약자’라는 인식이 더해져 중국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적 비하 - 성희롱 대응 방법의 부재 : 한국어의 어려움과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참고 넘어감
	민가영(2009) (대학생)	- 중도입국 자녀로 한국에 살다가 몽골로 돌아가서 다시 유학생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역할(대학생)에 충실할 수 없는 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됨
청장년 (임신, 출산, 양육기)	윤승주, 원재연(2016)	- 가정에서 가부장제 경험 : 훈육되어 강요된 가부장제의 모습을 경험, 시댁과의 마찰, 가사 주도권을 시어머니에게 빼앗김, 강요된 출산 등 - 자녀의 학교에서 낙인과 타자화 경험 : 학교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다문화’ 담론은 결혼이주여성 과 자녀가 계층적 낙인 경험을 하도록 함

생애사적 시점	저자	내용
	박미숙, 김영순, 홍유나(2014)	- 취업을 하고 싶으나 친정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대로 취업이 어려움 -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혹은 출산 양육 시기에 친정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장갑수(2013)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 - 정보부족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철분제 제공 등 산전관리 서비스 받지 못함 - 통역관이 없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다녀야 하는 불편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거의 없고, 시어머니나 산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만 산후조리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 -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급여의 상당액을 송금해주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경우 양육의 문제
중장년	이해웅(2013)	- 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도시에서 대가족을 먹여 살리며 체력이 소진된 상태로 한국에 이주해 이주노동의 ‘고됨’과 ‘비참함’을 더욱 느낌 - 법적 취약성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인한 신체화 증상 +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몸을 혹사하며 얻게 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파열 + 산재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경험
노년 (노후생활 준비)	성지혜(2015)	□ 결혼이주여성 고령화의 잠재적 위험 요인 - 현재 40대 이상이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60.6%를 차지(2012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제한된 정보 - 빈곤으로 노후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남편과의 큰 연령차 : 남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수입이 조기 단절된 상태에서 노년기의 상당기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함 - 약한 사회적 네트워크 : 노년기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음 (이혼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함) □ 연구결과 -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직업에 만족해 각종 보장과 연금 등의 혜택으로 노후준비에 불리함 - ‘집’에 대한 요구가 강하여 집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 ⇒ 내 집 마련을 노후 준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 -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 여성에게 변화하는 가족관계, 긴 노년에 대비한 기회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 노년을 대비하거나 준비하

생애사적 시점	저자	내용
		지 않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절반가량이 고향 베트남으로 되돌아가 노년의 삶을 보내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 - 노년기 삶을 지탱할 경제 자원으로 국가와 자녀에게 기대 ⇒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스스로의 미래생활설계가 가능하도록 자립의지와 역량 강화 필요
	이민경(2015)	- ‘현재는 여기, 미래는 거기’ : (중국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공간과 노년의 미래 공간을 상대적으로 분리해 생각하여 미래의 삶은 떠난 본국을 향하고 있음
기타 (생애주기 고려)	장명선, 김선옥 (2017)	-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을 비판하며,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하고 노동시장과의 수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취업지원역량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4) 이주민 관련 논의와 중앙정부 정책의 흐름

199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노동자, 소수자, 해외교포 등 이민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변화 역시 관련 연구자들이 기본 골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임현진·설동훈, 2000).

2004년 7월 법무부 산하에 이민행정연구위원회가 조직되고, 학계, 기업,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2005년 5월에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에 적응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은 이미 이민국가로 들어섰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2006년 5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가 발표되었다. 이어 법무부는 2006년 12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이혜경, 2011). 한편 2006년 이후 한국 사회에 다문화 열풍이 불면서 이주 연구 역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2005년 4월 당시 대통령 지시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

책 등을 발표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여러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 부처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중앙정부의 관심이 다문화가족으로 옮겨지면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미약해지고 대신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위원회가 신설되었다(이혜경, 2014). 2000년대 관련 정책 논의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단체 대표들과 학자들이 관련 정부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이주 관련 정책의 주요 변화는 관-민-학의 합작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김혜순 외, 2007; 이혜경, 2007; 윤인진, 2007), 2008년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는 물론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외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이혜경, 2014).

현재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일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정책의 차이라면 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세부과제로 실행되지만,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관리공단⁴⁾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귀국지원, 외국국적동포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며 일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소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으로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과정 훈련과 재직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등이 제공된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 및 필요 기능을 습득하고, 체류기간이 만료 시 본국에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안내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서울시의 관련 정책

서울시는 2012년 다행복 서울 플랜, 2014년 다가치 서울플랜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 왔다. 2012년 8월 “다행복 서울 플랜”

4) <http://eps.hrdkorea.or.kr/main/intro.do>

을 발표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결혼이민여성 지원 정책을 시작하였다고 평가받는데, 2012년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는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 지원 부족이었다. 더불어 그에 따른 결혼이민자 자립역량강화, 인권보호 및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 필요하다(김재민 외, 2012)는 지적이 이어진 데 대한 정책의 응답이었다. 다행복 플랜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드는 다행복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 하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서울시 외국인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다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

서울시는 2013년 이전까지의 외국인주민정책에 대해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인프라 건설 및 확보, OECD 국가 외국인 주민 중심, 서울시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선택적·유인적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즉 그동안의 외국인 주민 정책이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하위 과제로 외국인 주민 생활편의 증진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 등 선진 다문화도시 정책은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로 진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14년 이후 정책의 방향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전의 정책에 비해 보다 다양한 범주의 이주민을 외국인정책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이나 이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정책 과제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중심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소위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뚜렷이 드러난 바가 없다는 점도 향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표 II-3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주요내용(2014.05)

4대 목표	주요 내용	비고
인권 가치 확산	외국인주민인권팀 전국 최초 신설	2명 외국인공무원
	권역별 1개소씩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	민간쉼터 재정지원
	서울통신원, 사법 통번역사 신규 양성	의사소통 지원
	공무원, 42개 시설 종사자 '다문화감수성교육'	
문화 다양성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15년 신설	정책의제 자체 발굴 및 상정
	'통합국제문화원' 건립	
	'글로벌 볼런티어(가칭)' 구성	재능기부·봉사활동 참여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도입	
	'모범외국인주민' 선발 시장 표창	2015년 세계인의 날부터 시행
	'통합국제문화원' 18년 개소 목표로 건립	다문화도시 랜드마크 육성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 행사 및 축제	
성장의 공유	'제2글로벌센터' 영등포구에 1개소	
	글로벌센터 및 42개 시설 운영시간 주말까지 확대	
	온라인·모바일 한국어교육환경 구축	
	외환 송금 및 환전수수료 할인서비스	민간은행과 연계
	'시민되기 아카데미' '15년부터 운영	법·질서 등 기초소양 교육
역량 강화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 신설	
	생계형 창업점포 찾아가는 '글로벌점포클리닉'	
	'외국인 창업대전' 열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관' 운영	변호사 또는 노무사 구성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 지원센터' 설치	지자체 최초
	'유학생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대학-기업 연계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민간재원 활용
	시립기술교육원 1곳 외국인주민자녀 취업 중점지원	
	중국동포 활동가 육성 : 한중 가교역할	

최근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으로는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가 있다. 이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 하여 건강상태를 이력 관리하는 제도이다.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별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하여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하여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

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상호 의사소통 등에 도움을 주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안전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근로자를 위해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아침체조, 근로현장 투입 전 마주보고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서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세부 과제

서울시는 자체 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과제들도 수행 중에서 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른 과제는 법적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가 그 주요 관심사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이주여성을 정책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Ⅰ 표 II-4 Ⅰ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사업

영역별	'16년	'17년	증감	비고
계	27	27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1	1	-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9	10	1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7	8	1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	2	△2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4	4	-	
6. 정책추진체계 정비	2	2	-	

정책 수행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영역의 과제를 이주민이나 인종 문제 등 전반을 아우르는 선주민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수 이주민이 정책의 이용자로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정의하는 정책 대상은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다문화”가 포함시켜야 할 이주와 관련된 많은 주제와 사람들을 정책의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의 최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II-5 제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서울시 세부 사업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비고
		'13년	'14년	'15년	'16년 (A)	'17년 (B)	증감 (B-A)	
	합 계	5,557	8,246	8,320	9,782	10,118	336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096	4,596	4,805	5,812	5,927	115	
1-1-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2,096	4,596	4,805	5,812	5,927	115	
	2.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1,509	1,440	1,167	1,163	1,556	393	
2-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확대	556	559	534	555	548	△7	
2-1-3	이중언어 교육단계적 확대	178	179	122	125	139	14	
2-1-5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제작	40	40	40	30	30	-	민간재원 60
2-1-6	다문화자녀 보육시설 운영	104	124	166	186	194	8	
2-1-7	다문화자녀 및 일반청소년 교류지원사업	20	2	2	2	2	-	민간재원 2
2-3-3	자녀생활서비스확대	22	33	39	39	27	△12	
2-3-5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	290	297	38	-	90	90	민간재원 400
2-4-1	기초학력지원 강화(방문학습)	293	200	220	220	220	-	
2-4-3	다문화가족 학위취득 지원	6	6	6	6	6	-	
2-4-4	문화통합프로그램다같이놀이자프로젝트	-	-	-	-	300	300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1,254	1,557	1,537	1,735	1,846	111	
3-1-4	국제결혼중개업 단속, 조사강화	-	-	-	-	-	-	비예산
3-2-5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175	75	130	174	130	△44	
3-2-7	한국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통합 프로그램	-	-	-	-	-	-	민간재원 60
3-2-8	외국인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10	14	17	20	20	-	
3-3-5	다문화가족 정신건강 지원사업	10	20	20	16	15	△1	
3-4-4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내실화	759	1,140	1,043	1,198	1,341	143	
3-4-5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270	278	297	297	310	13	
3-4-6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30	30	30	30	30	-	추가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240	210	245	277	342	65	
4-2-2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170	145	200	235	300	65	
4-4-4	자조모임 활성화	70	65	45	42	42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447	432	547	780	430	△350	
5-2-5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확대	70	105	220	405	105	△300	
5-2-7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250	200	200	250	200	△50	
5-3-1	공무원교육원 다문화교육과정 운영	7	7	7	5	5	-	
5-4-1	청소년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	120	120	120	120	120	-	
	6.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11	11	19	15	17	2	
6-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지역량 강화지원	10	10	10	10	12	2	
6-2-2	지자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1	1	9	5	5	-	

3. 이주여성의 정책 이용 확장 가능성

서울시 정책은 크게 주제 중심의 정책과 대상 중심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외국인다문화 정책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를 주제로 볼 때에는 다문화정책으로 정책 이용자를 중심에 둘 때에는 외국인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 정책 이외에 일반적인 복지정책, 건강 정책 등에서 이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 정책의 이용자로 이주여성이 포함될 여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이 일부 특정 이주 배경 주민만을 선별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특별히 정책 이용자가 제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이주여성이 정책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의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다문화정책이 특화정책으로서 무의미하다는 관점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 서울시 복지 정책과 건강 정책

아래 목록은 2017년 서울시 복지정책국의 정책 사업으로 특별히 정책 이용자가 누구라고 하는 제한이 없다. 이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주민 또한 정책의 이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아래 목록을 제시한다. 특히 금천, 관악 등지에서 시행되는 주거 취약지역 고립가구 돌봄 사업과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이 대표적인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이 정책 사업의 이용자로 고려될 때 보다 정책 효과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

표 II-6 서울시 복지 정책 사업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살피고 돌보는	민관 네트워크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	☐ 상시 발굴체계 구축 - 복지플래너,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 통·반장, 나눔 이웃 등 활용 민관 합동 발굴 - 단전·단수가구,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체계 확 립 ⁵⁾		- 발굴가구 우선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하고,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확대 - 복지부 빅데이터 제공 정보 추가(서울시 건의사항 반영) : 12개관 25종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일제 전수조사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상시 발굴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상시 돌 봄 체계 구축	-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일자리, 보람일자리 등 연계 강화 및 나눔 이웃 적극 확대 - 주거취약지역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 추진 (노원, 금천, 관악 각 1개동)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견고한 복지안정 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 장제도 개선으 로 취약계층 지 원 강화	- 생계급여 5.2% 인상 : '16년 236천원 → ' 17년 248천원(1인 가구 기준) - 선정기준 완화 :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단축(6개월→1개월), 근로 능력가구 지원 연장(3개월→6개월) 등 - 지원인원 및 예산 : '16년 4,628명 → ' 17년 4,980명, 12,542백만원
	서울형 긴급복 지 지원대상 확 대로 복지사각 지대 최소화	- 지원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85% 이하 - 생계·주거·의료비 2배 확대 : '16년 최대 50만원 → ' 17년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확대 : '16년 8,338가구 → ' 17년 10,700가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 능한 지 역 복지 공동체 조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 보는 '나눔이 웃' 확산	- 나눔이웃 : 지역 내 주민이 직접 어려운 주민을 자주 만나면서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조성 - '16년 나눔이웃 4,709명(동중심형 1,402명, 민간거점기관 3,307명) - '17년 200개동 참여 추진(' 16년 86개동 참여, '17년 114개동 신규)
	물품, 서비스를 저소득 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나눔가게' 발굴, 확대	- 나눔가게 : 지역내 자영업자가 물품 서비스를 직접 기부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공동체 - '17년 1,500개 이상 신규 발굴 → ' 18년부터 1,000개 발굴
재가어르 신 맞춤형 서비스로 촘촘한 돌 봄서비스 실현	독거어르신 등 보호가 취약한 재가어르신의 현황조사(매년) 로 맞춤형 서비 스 제공	- 취약 어르신 돌봄 '17년 53,166명(전년대비 2,037명 0000000 ↑) 지원 ①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안전 확인,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 '17년 25,904명 ② 재가지원서비스(일상생활, 주거환경개선, 여가활동지원 등) : '17년 3,680명 ③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경로식당 및 식사·밀반찬 배달지원) : '17년 23,582명
활기찬 노후를	노인여가복지 시설 이용 어르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일자리 원스톱 제공 (구인구직→상담→알선→사후관리 등 전과정 관리) : 어르신 민간부문 일자리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위한 세 대통합형 여가 인 프라 구 축	신 일자리 상 담·알선 기능 강화 및 사회참 여 확대	(경비, 주차관리 등) 확대 : '16년 4천명 → ' 17년 5천명 - 경로당 및 타 기관간 자원연계로 어르신 사회참여(자원봉사) 확 대 : 경로당이용 어르신 중 '서울둘레길지킴이', '치매서포 터즈' 선발
	어르신 아카데 미 운영으로 생 활 속 유익강좌 를 통한 노후생 활 준비	- 노후설계, 여가문화, 건강관리, 인문학 등 평생교육 실무강좌 운영 - 공모를 통해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선정(2월) 및 운영(3-12월)
	어르신과 지역주 민이 함께 향유 하는 문화공연· 생활체육 확대	-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확대 : '16년 8회 → ' 17년 12회 - 생활체육 건강프로그램 운영 :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등
쪽방 주 거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	쪽방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 차보증금 지원	-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운영시설 지원, 입주자 생활안 정 :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673호에 평균 970만원 융자지원, 월 3만 2천원 저감
	쪽방지역 주거 환경 개선	- 저렴쪽방임대사업 추진 : '16년 93호 → ' 17년 218호, 중 125호 - SH공사 임대주택 우선지원 : '16년 101호 확보 → ' 17년 100호 확보 예정
	건강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보 호 강화	-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6명) → 정규직 간호사 전환으로 안정 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시민건강국의 연간 계획 중 이주여성을 이용자로 확대할 가능성을 타진해 볼 만
한 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임신이나 출산 등은 생애주기에 따른 사건이자 여성과
아이의 건강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건강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여성이 두려움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당위성도 존재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아 등에 대한 지원
은 특히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주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주
여성은 바로 법적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이다.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직장이든
지역이든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미등
록 이주여성의 경우는 모든 공적 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5) ① 사각지대 주민 발굴·상담 → ② 지역사회 내 해결 → ③ 지속적인 돌봄을 원칙으로 함

표 II-7 서울시 건강 정책 사업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생애주기 별 질병 예방, 건 강 관 리 지원	건강한 임신· 출산·양육 지원	☐ 「모자건강센터」 설치로 임신·출산·양육 통합지원 환경조성 : 2개구 → 4개구 - 보건소(모성실·영유아실) 통합공간 조성으로 총괄지원센터로의 역 할 기능 수행 - 임신부 등록관리, 양육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 서울맘(Mam)을 위한 스마트 임신지원 및 난임시술 지원 - 스마트폰을 이용해 임신여부 즉시(약5분 소요)확인 : '17년 5,500여 명 지원 *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후 실시 : 시범추진 → 성과분석 → 단계별 확대 - 모든 난임부부 대상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최대 10회 1,350만원 - 분만출혈,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영유아·아동기 건강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관리 - 영유아(만2세미만)가구육아용품(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중위소득 40%이하, 월64천원 -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최대 15백만원 까지 지원 - 산후관리를 위한 출산가정 방문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80%이하, 2~4 주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 진을 통한 우울증 및 치매예방 강 화	☐ 우울증 발병율이 높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추진 - 비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정신건강검진기관에 지원(인당 최대 5만원) * ' 16년 24개 자치구 및 지역 정신의료기관 145개소 참여, 총 227명 검진 및 심리상담 ☐ 치매 조기검진의 정례화를 통해 어르신 인지건강 관리와 치매예방 실천 - 만60세이상어르신대상치매정기검진인식강화 ' 16년27만명→' 17 년28만명 - '건강한 어르신' 부터 '치매어르신' 까지 인지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실천 도모

이와 같은 정책은 앞서 밝혔다시피 특별히 누가 정책 이용 대상자인지가 특정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주여성 또한 서울시에 연고를 두고 있을 경우 충분히 이용가
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체류지위를 가진 이들에게는 지역건강 보험 등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조치도 필요한 동시에 미등록 이주여성이라고 해도 기본권 보
장 차원에서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2) 여성·가족·보육 정책

서울시민 여성을 위한 정책 또한 이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으로 타진해 볼 수 있다. 이주여성 중 특별히 취업이주자 자격으로 온 경우가 아니라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점에서 일자리정책 중에서 이주여성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사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I-8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사업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지속가능한 여성 일 자 리 인 프 라 구 축 및 일 자 리 창출 지 원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및 뉴딜 일 자리 창출 지원	○ 돌봄분야 정규직·시간제등일자리확대: ' 16년9,700명 → ' 17년 11,358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등 : 1,268명 -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육가정 아이돌보미 등 10개 사업 : 10,090명 ○ 여성친화형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 ' 16년 341명 → ' 17년 641명 - 여성안심보안관, 아동복지시설 양육도우미 등 안전·돌봄분야 : 536명 - 시민사회 협력활동가, 외국인주민 강사 등 지역사회 활성화분야 : 105명
	여성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 선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 기업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 22개 기관 26개 과정 - 경력단절여성 대상 기업현장 실무체득 위주의 심화과정 개설·운영 - 여성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유망직종 추가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 자리 창출 강화 - '16년 4개 과정(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 전문가, 소프트웨어 테스터, 수면컨설턴트 등) → ' 17년 6개 과정 (기존+여성미진출 및 장래 유망 직종) ○ 청년여성의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 「청년원더 프로젝트」 운영 : 15개 고교·대학 - 비전설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커리어 개발 등 다양화 특강과 체험 활동 ○ 기업 디딤돌 일자리 '여성 인턴십' 운영 : 28개 기관, 700명 연계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인건비(60만원, 3개월) 및 정규직 전환시 취업 장려금(기업체·참여자 각 60만원) 지원 ○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 '17년 6~10월 중 구역별 개최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여 성 공 예 창업지원으 로 지속가 능한 여성 일자리 창 출	○ 공예창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공예인 발굴 - 여성공예 전문심화 과정 운영 : 4개 과정 - ECO-DIY 인테리어 디자인, 3D 프린팅 전문가 과정 등 - 여성공예 창업대·소전, 여성공예페어, 777프로젝트 등을 통한 우수 공예인 발굴 및 성장 지원 ○ 공예창업 공간 및 창업 컨설팅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동부·남부·북부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창업플라자(도곡, 북부) 내 - 창업공간 지원 : 141개 - 심층분석 및 진단을 통한 공예창업지원 맞춤형 솔루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법적 다문화가족만을 그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족정책 사업 중 이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업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이주민에게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는 1인 가구 정책의 이용자로 이주여성의 다수가 포함될 여지를 만들어갈 필요성도 존재한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시될 시민 의견 수렴에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등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II-9 서울시 가족 정책 사업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다 양 한 가 족 이 행 복 한 서울 조 성	다양한 서 울 가 족 을 위한 가족 친화 프로 그램 운영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 17.3 ~ 10월) - 서울시 1인가구 특성에 맞춘 분야별(주거·안전 등) 정책과제 도출 ○ 10대(중·고등)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신규 추진(' 17.5월) - 부모역할, 이성문제, 아이돌보기 실제체험 등 부모로서의 사전 준비교육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컨텐츠 개발), 교육청(학교모집) 등 협업 추진 ○ 「서울 가족학교」 운영 확대 : 15개소(' 16년) → 20개소(' 17년) - 교육접근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등 사각 지대 최소화 - 부부교실(예비부부, 중·노년부부), 아빠 육아교육, 밥상머리 인성교육 등 강화 ○ 가족 종합정보 포털사이트(www.seoulfamily.or.kr) 운영(' 17.2월 ~) - 가족문제 상담코너, 상담·교육 등 분야별 가족생활 정보, 시민 참여 공간 등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한부모가족의 맞춤형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 긴급지원(' 17. 2월) - 심리·정서 등 1:1 상담, 사각지대 미혼모 통합사례관리 등 - 긴급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핫라인 전담인력 추가 배치(2명 → 4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환경 개선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증액 지원 : 100천원 → 120천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25개소) 입소아동 학대 예방교육 정례화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지원 서비스 강화	○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등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취약가족의 전문상담사 파견 부모교육, 지속적 사례관리 등 ○ 취약·위기가족 돌봄사업 운영 -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자녀학습·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등 -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의 자녀교육상담(개별·집단), 가족캠프 등 문화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강화	○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68만건(' 16)→ 69만건(' 17) ※ 아이돌봄 서비스 활동 인력 : 2,638명(' 16년말) ○ 다양한 유형의 가정내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연령 확대 - 종합형 돌보미, 보육교사형 돌보미, 긴급 돌보미, 대학생아이돌보미 등 - 영아종일제 연령 확대(24개월 이하 → 36개월 이하) ○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제공 : 연 11회 - 신규직원 양성 교육 9회, 서비스 다양화 교육 2회 등

다음으로는 현재 국가 차원의 이주정책이 가족 동반을 극히 일부에 한해 허용하고 있을지라도 각종 국제 협약 등을 통해서도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보육 정책 중 이주민이 이용 가능한 정책 사업 목록을 제시하도록 한다. 현재 미등록이라고 해도 의무교육인 정규 교육 과정에 입학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에서 원칙의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으나, 이 점은 지속적으로 홍보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과제이다. 더불어 현재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이주통합 어린이집”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체류 지위의 이주민 자녀에게 일부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표 II-10 서울시 보육 정책 사업

목표	사업명	추진 실적 및 '17년 사업 계획
맞춤보육 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 문화 확산	공동육아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공유 보육 가치 실현	○ 지역주민이 함께 돌보고 배우는 ‘공동육아공동체’ 지원(49개) - 3인이상·비영리단체 제안 공동육아 사업, 개소당 약 7백만원 -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도록 맞춤 컨설팅 지원 ▶ 아빠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직장맘과 전업맘이 협업시가점 부여 ○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 제공(39개소) 및 나눔축제(' 17.10월) 개최 ○ 지역내 열린육아방 설치(12개소) -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부모·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아동 및 양육자의 근로 형태,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 보육’ 확대	○ 가정양육 부모의 주간 보육공백시 시간단위 보육 지원 - 시간제 보육(시간당 2천원) : 60개소 80반('16년) → 68개소 88반(' 17년)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 49개소('16년) → 55개소(' 17년) ○ 거점형 시간연장(10개소), 장애아 통합(344개소)어린이집 운영 ○ 24시간(90개소)·휴일(87개소)·365일 열린(3개소) 어린이집 운영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일부 외국인주민이나 선주민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 시급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는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 240원,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되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⁶⁾

4.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통합적 관점과 이주를 구성하는 다양성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개념을 하나의 제목에 담고 있다. 이에 연구의 의의와 한계 또한 그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가 지향하는 통합적 관점이란 이주민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범주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이다. 이에 그동안 법적 체류지위, 출신 국적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를 생애주기별 연구로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각 연구에서 드러난 이주

6)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46351&call_from=media_daum

여성 경험의 공통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주여성 연구의 절대량이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로 인해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의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이주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정책 또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을 이어 받은 세부 사업에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인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국동포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 연구에서 논점으로 삼고자 하는 바는 바로 기존의 외국인 다문화 논의에 많은 이주여성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체류 자격에 의해 이주민을 분류하면서 각각의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된 삶이 마치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치부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보고자 하는 통합은 주민 차원에서 이주민 전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범주이며, 이주다양성은 이주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주민”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주다양성을 기존의 체류자격, 출신국적을 중심으로 보아오던 관행을 넘어 이주 주기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이주여성에게 입국 초기 서울에서의 적응을 위한 시기부터 귀환 혹은 영주나 귀화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해당 시기는 이주여성의 연령 등 변수에 따라서는 생애주기와의 맞물릴 수도 있으며, 서울 생활 경험을 입국에서 귀환까지 이주 주기로 정의하여 해석한다고 하는 차원의 기술적인 문제이다. 다만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는 한계로 인해 이 부분은 면접조사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영주나 귀화보다는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보다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뿐 아니라 특별히 정책 이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복지, 건강, 여성일자리, 보육 정책 등에 이주여성이 정책 이용자로 포함될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것이 특화된 이주민 정책이 필요없음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그보다는 당장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면 기존 정책 체계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에서 주민 개념을 중시한 논의(한승미, 2010)에 따르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생활할 것을 전제로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이주민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생활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사회·문화형성에 기여할 때 지역 사회의 정책 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정책이 현재의 협소한 범주 정의를 넘어 실제 서울을 구성하는 이주민 전반을 아우르며 다양한 층위의 정책이 이주민을 포괄해 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찍이 이주민 정책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은 2007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업무편람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즉 중앙정부의 역할은 개별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통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생활인으로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정부의 초기 논의에서조차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원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도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이 포괄해야 할 주민에 이주여성이 간과될 수 없다는 논의는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된다.

III

서울시 이주여성의 현황

1. 서울시 이주여성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이주여성의 실태와 삶의 질: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분석
3. 이주여성의 노동 실태: 외국인고용조사 분석
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와 공통 항목 비교
5.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이주여성의 현황

1. 이주여성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매해 7월 외국인 주민현황을 발표해 왔다. 이어 2015년부터는 새로이 인구주택총조사 발표 시기와 맞추어 11월 1일자 집계를 시작하였다.⁷⁾ 외국인주민의 현황은 크게 체류 지위에 따라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혼인귀화자, 기타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자녀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성별로 범주화되어 있는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된다. 한편 현황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 ~ 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이며,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유학생은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외국국적동포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를 의미한다. 기타의 경우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⁸⁾를 의미한다.

7) 이 장에서 해당 통계의 경우 2014년은 이듬해 7월 1일자로 발표된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 현황으로, 2015년-2016년도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시점을 일치시킨 2016년 11월 1일자 기준 자료를 인용한다. 2016년도에는 7월 1일자 집계도 발표되었는데, 그 수치가 11월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7월 1일자 통계에서 11월 1일자 외국인주민의 규모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전체 457,8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4.5%로 보고되었다.

8) 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되어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⁹⁾이다.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되며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표 Ⅲ-1 서울시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2014-2016)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여	남	합계	여	남	합계	여	남
외국인근로자	104,309	45,464	58,845	102,081	42,425	59,656	85,878	34,154	51,724
결혼이민자	29,818	22,289	7,529	27,573	19,665	7,908	33,139	23,615	9,524
유학생	29,308	17,597	11,711	31,129	19,813	11,316	37,178	24,129	13,049
외국국적동포	96,440	52,990	43,450	80,707	44,830	35,877	80,712	44,603	36,109
기타	80,975	40,578	40,397	95,626	45,165	50,461	98,260	45,925	52,335
혼인귀화자	18,926	17,504	1,422	20,439	16,242	4,197	40,775	28,364	12,411
기타귀화자	25,057	14,631	10,426	20,081	11,704	8,377			
외국인주민자녀	30,226	14,899	15,327	30,447	15,111	15,336	28,095	13,886	14,209
전체	415,059	225,952	189,107	408,083	214,955	193,128	404,037	214,676	189,361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4.1% (전국 3.1%)			4.1%(전국 3.4%)			4.1%(전국 3.4%)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전국대비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의 수와 비율을 반영한다.¹⁰⁾ 전체 외국인주민에 혼인귀화자나 기타사유귀화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모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혼인귀화자나 기타 사유 귀화자와 같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인 주민을 외국인 주민 통계로 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실제 이주여성의 구성하는 인구 중에는 혼인귀화자와 결혼이

9)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되어 있다.

10) 2016년 11월 1일 발표된 경기도의 2015년도 외국인주민 인구는 12,479,061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은 4.4%인데,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달리 전체 인구 중 남성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난다.

민여성을 합한 인구보다 외국국적동포나 외국인근로자 여성이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현재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이 보다 다양한 체류 주민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¹¹⁾

1) 연령구간 별 이주여성 현황

이주여성이 실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체류 지위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주여성이 어떤 생애시기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서울에서의 삶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요구되는 정책 또한 다를 수 있다. 2015년도까지 외국인주민현황에서는 연령별로 별도 집계하지 않았으나, 2016년도 자료부터는 각 체류 자격별 외국인주민의 연령 분포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표 III-2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연령구간별 분포 현황(2016)

구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소계	여	남
총	335,167	172,426	162,741	85,878	34,154	51,724	33,139	23,615	9,524	37,178	24,129	13,049	80,712	44,603	36,109	98,260	45,925	52,335	40,775	28,364	12,411
0-9세	13,653	6,585	7,068	***12)	***	***	***	***	***	***	***	***	360	170	190	13,293	6,415	6,878	1,092	569	523
10-19세	13,481	7,499	5,982	49	29	20	55	55	***	5,266	3,625	1,641	688	330	358	7,423	3,460	3,963	1,201	648	553
20-29세	74,848	43,631	31,217	10,454	4,018	6,436	4,892	4,465	427	29,129	19,108	10,021	15,159	8,467	6,692	15,214	7,573	7,641	4,363	2,991	1,372
30-39세	60,197	28,070	32,127	16,311	4,740	11,571	10,395	7,600	2,795	2,469	1,240	1,229	12,713	6,397	6,316	18,309	8,093	10,216	8,535	6,531	2,004
40-49세	57,913	26,763	31,150	21,942	8,251	13,691	8,541	5,683	2,858	273	140	133	9,790	5,139	4,651	17,367	7,550	9,817	10,539	7,254	3,285
50-59세	70,856	36,327	34,529	32,054	14,943	17,111	7,086	4,557	2,529	35	14	21	13,606	8,141	5,465	18,075	8,672	9,403	9,588	6,581	3,007
60-69세	36,084	18,339	17,745	4,761	1,999	2,762	1,883	1,109	774	6	***	***	23,183	12,327	10,856	6,251	2,902	3,349	4,258	2,938	1,320
70세이상	8,135	5,212	2,923	307	174	133	287	146	141	***	***	***	5,213	3,632	1,581	2,328	1,260	1,068	1,199	852	347

연령대별로 전체 외국인 주민은 50대> 20대> 30대> 40대 순의 분포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 20대> 50대> 30대> 40대 순, 남성은 50대> 20대> 30대> 40대 순이다. 외

11) 이하 III. 1.에서 제시되는 표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2017년 1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임을 밝힌다.

12)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

국민근로자의 경우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50대의 비중이 가장 크고, 외국국적동포는 60대>20대>50대>30대 순으로 60대의 비중이 높고, 성별로 볼 때에도 여성은 60대>20대>50대>30대 순으로, 남성 또한 60대가 가장 많고 그 뒤를 20대와 30대가 잇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은 30대>40대>50대>20대, 남성은 40대>30대>50대 순이다. 유학생의 다수는 여성, 남성 공히 20대에 포진되어 있다. 전체 외국인주민의 규모에서 차이는 있으나 연령 구간을 좀더 세분화한 출입국외국인 주민통계 중 등록외국인의 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50-54세>25-29세>20-24세>55-59세>45-49세 구간 순으로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고령 인구층이 두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여성과 남성 인구의 비중을 보면 30세-49세 구간과 60세-74세 구간에서는 남성 인구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인구 차이가 가장 큰 연령층은 20-24세 구간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의 두 배 수에 이른다.

표 Ⅲ-3 서울시 등록외국인 성별*연령구간별 분포(2016)

성별	총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273,441	8,583	5,068	2,874	10,137	32,829	34,219	29,432	22,009	20,978	27,468	35,063	27,581	12,222	2,848	982	564	584
여	142,851	4,210	2,444	1,367	6,319	22,133	18,996	14,378	10,100	9,390	13,431	17,668	14,291	5,747	1,312	430	309	326
남	130,590	4,373	2,624	1,507	3,818	10,696	15,223	15,054	11,909	11,588	14,037	17,395	13,290	6,475	1,536	552	255	25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12월 말 통계 현황

거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최다 분포 연령 구간은 60-64세 구간으로 나타나 이미 고령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은 다소 복잡한데, 영주권에서 최대 체류기간 3년의 방문취업, 일반적으로는 최대 체류기간 1년의 방문동거 등으로 외국국적동포라는 단일한 이름 아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나, 거주 가능 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선 외국인주민 현황에서는 외국국적 동포의 수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의 통계보다 적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비자체류자격을 외국국적동포로 보았는가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출입국통계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동거(F-1)와 기타자격의 외국국적동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Ⅲ-4 서울시 성별*연령구간별 외국국적동포¹³⁾ 인구(2016)

성별	총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134,905	263	409	399	916	6,431	17,164	14,013	8,683	7,191	9,167	11,086	10,630	24,764	14,239	4,820	2,811	1,919
여	75,067	129	186	172	435	3,495	9,832	7,568	4,258	3,489	5,047	6,720	6,429	13,580	7,612	2,838	1,865	1,412
남	59,838	134	223	227	481	2,936	7,332	6,445	4,425	3,702	4,120	4,366	4,201	11,184	6,627	1,982	946	50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12월 말 통계 현황

현재 출입국관리통계에서 국민의 배우자는 비자체류자격 F-2, F-5, F-6을 가진 외국 국적자를 의미한다. 즉 혼인귀화자를 제외한 셈이다. 여성의 경우 25세-39세 구간에 전체 결혼이민여성의 51.2%가 분포되어 있으나, 남성은 35세-49세 구간에 45.9%가 분포되어 여성과 남성 간에 최대 분포 연령 구간에 차이를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경우 20-24세 구간, 55-64세 구간의 결혼이주여성의 규모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표 Ⅲ-5 서울시 국민의 배우자 성별*연령구간별 분포(2016)

성별	총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27,473	63	1,283	3,465	4,989	4,325	3,566	3,410	3,036	1,812	922	363	134	63	42
여	20,209	63	1,262	3,159	3,991	3,188	2,475	2,301	1,952	1,027	492	192	57	31	19
남	7,264	0	21	306	998	1,137	1,091	1,109	1,084	785	430	171	77	32	2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12월 말 통계 현황

2) 체류기간 별 이주여성 현황

이주여성이 특정 사회에서 어떠한 현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중요 변수 중의 하나는 얼마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 왔는가이다. 2015년까지 발표된 자료에서 이주민의 한국 내 체류 기간을 따로 공개한 통계는 행정안전부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도 없다. 다만 현재 발표되는 자료 중 2016년 외국인주민현황이 체류기간별 집계를 내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3)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방문동거(F-1)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집계에서 외국 국적동포의 주요 체류 자격이다

표 Ⅲ-6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별*체류기간별 현황(2016)

구분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총	335,167	172,426	162,741	85,878	34,154	51,724	33,139	23,615	9,524	37,178	24,129	13,049	80,712	44,603	36,109	98,260	45,925	52,335
1년 미만	65,134	35,263	29,871	19,423	7,656	11,767	2,263	1,735	528	17,200	11,766	5,434	8,596	4,958	3,638	17,652	9,148	8,504
1-2 년미만	51,411	26,118	25,293	20,618	8,450	12,168	2,243	1,718	525	8,231	5,477	2,754	8,973	5,117	3,856	11,346	5,356	5,990
2-3년 미만	60,219	29,002	31,217	31,820	13,119	18,701	2,949	2,131	818	4,560	2,971	1,589	11,536	6,521	5,015	9,354	4,260	5,094
3-4년 미만	29,963	15,606	14,357	4,673	1,879	2,794	2,733	1,997	736	2,741	1,670	1,071	12,881	6,812	6,069	6,935	3,248	3,687
4-5년 미만	22,526	11,608	10,918	2,111	630	1,481	2,529	1,853	676	1,848	1,013	835	8,454	4,534	3,920	7,584	3,578	4,006
5-10년 미만	74,519	38,604	35,915	4,599	1,289	3,310	12,369	8,770	3,599	2,396	1,141	1,255	25,524	13,869	11,655	29,631	13,535	16,096
10년 이상	31,140	16,107	15,033	2,520	1,079	1,441	8,032	5,397	2,635	190	84	106	4,725	2,780	1,945	15,673	6,767	8,906
미상	255	118	137	114	52	62	21	14	7	12	7	5	23	12	11	85	33	52

실제 체류 기간에 따라 정책적 요구나 삶의 상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류 기간을 파악하는 것은 이주민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체류기간 5-10년 사이의 주민이 최다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년 미만 거주력을 가진 외국인 주민의 규모도 19.4%이다. 1년 미만 거주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규모가 5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많다. 1년 미만 거주자 중 최다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이 39.4%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나, 기타로 분류되는 주민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주목되는 바는 체류기간 10년 이상인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도 적지 않으며, 수적으로는 남성이 1,441명, 여성이 1,079명으로 남성이 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귀화자의 경우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따로 집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국적 취득 이후 체류 기간을 보는 것은 실제 어느 시기에 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적 취득자 집계의 경우 성별 분리 통계가 아닌 전체 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표 Ⅲ-7 국적 취득 이후 경과 기간별 주민 현황(2016)

구분	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전국	159,447	8,030	10,173	11,064	11,691	11,652	71,844	34,993
서울	40,775	1,693	2,475	2,587	2,708	2,394	19,064	9,854

귀화자와 외국인주민자녀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 인구 중 서울시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3.7%, 전체 귀화자 중 서울시 인구는 25.6%로 나타나고 있다. 국적취득 이후 5년~10년이 지난 이들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도 서울시에서도 45% 이상을 차지해 2005년~2010년 사이에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출신국적별 이주여성 현황

외국인주민현황에서는 이주민의 출신지역과 국적별 집계도 하고 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집계에서도 출신국적으로는 한국계 중국출신자를 포함한 중국국적자가, 지역으로는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 출신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동북아 출신자들의 현황을 다른 지역 출신자들과 별도로 파악해 가고자 한다.

표 Ⅲ-8 동북아 지역 출신 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서울시, 2016)

구분	동북아시아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총	257,027	132,809	124,218	30,743	44,594	15,887	5,942	17,163	7,489	36,132	29,292	32,884	36,901
중국	60,560	34,156	26,404	1,570	2,446	4,954	1,200	14,279	6,515	-	1	13,353	16,242
중국(한국)	177,339	86,791	90,548	28,777	41,781	8,379	4,217	37	42	36,032	29,249	13,566	15,259
대만	6,436	3,450	2,986	97	24	309	227	513	71	8	6	2,523	2,658
일본	5,918	4,393	1,525	97	93	1,859	263	906	102	92	36	1,439	1,031
몽골	6,774	4,019	2,755	202	250	386	35	1,428	759	-	-	2,003	1,711

국적 취득자를 제외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총 335,167명(여성 172,426명/ 남성 162,741명) 중 동북아시아 출신자의 비율은 76.7%로 이주여성 중 동북아 출신은 77%, 남성 중 동북아 출신자의 비율은 76.3%이다.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조선족” 혹은 “동포”로 불리는 한국계가 압도적 다수로 전체 동북아시아 출신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전체 동북아 출신자의 65.4%를 남성은 72.9%를 한국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동북아시아 지역 다른 이주자들의 경우 여성이 수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한국계 중국인은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남성은 외국인근로자와 기타로 분류된 이주민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여성은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그룹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중 72.8%, 유학생 중 69.6%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주민의 출신 지역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전체 이주민 중 6.7%가 동남아 출신자로 여성이 14,312명, 남성이 8,044명으로 이 지역 출신자들 또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구체적인 체류 자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은 97%에 이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65%는 베트남 출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자들 내에서의 수치이고, 결혼이민여성 역시 동북아 출신자가 15,887명으로 단순 수치 비교에서도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3배에 이르고 있다.

표 Ⅲ-9 동남아 지역 출신 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서울시, 2016)

구분	동남아시아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동남아시아	22,356	14,312	8,044	821	2,420	5,245	164	3,078	2,100	7	12	5,161	3,348
베트남	10,010	6,809	3,201	110	650	3,405	74	1,673	1,343	-	-	1,621	1,134
필리핀	3,901	2,683	1,281	433	637	1,013	56	143	87	-	-	1,094	438
태국	4,096	2,589	1,507	133	240	354	8	207	52	1		1,894	1,207
인도네시아	981	555	426	43	159	65	8	268	127	-	6	179	126

구분	동남아시아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캄보디아	997	519	478	45	341	328	2	44	43	-	-	102	92
미얀마	653	183	470	11	321	13	5	99	60	-	-	60	84
말레이시아	1,022	547	475	38	65	28	5	375	250	-	-	106	155
라오스	199	109	90	-	-	27	-	19	21	-	-	63	69
동티모르	23	7	16	-	-	-	-	6	12	-	-	5	
기타	474	311	163	8	7	12	6	244	105	6	6	41	39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 아시아 지역 출신 서울거주 이주민의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 출신자는 결혼이민자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수적으로 우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이 여성 근로자나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높은 뿐 다른 국가들에서는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자들과 유사한 경향성을 읽기 어렵다.

우즈베키스탄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나 기타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최다수 이주민의 출신국가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유학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윤성학 외, 2011), 이와 더불어 자국 내 고등교육 이수중으로 등록된 여성의 비율도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사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서울 거주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아 입국 목적에 따른 성별 인구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다.

표 Ⅲ-10 중앙·서남아시아 등 출신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2016)

구분	계 (명)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서남아시아	4,941	1,235	3,706	70	1,125	118	208	248	708	-	-	799	1,665
스리랑카	330	69	261	3	97	2	11	42	83	-	-	22	70
파키스탄	1,194	209	985	2	79	11	88	36	241	-	-	160	577
방글라데시	695	146	549	6	172	13	39	32	91	-	-	95	247
네팔	1,016	318	698	21	299	88	33	53	118	-	-	156	248
기타	1,706	493	1,213	38	478	4	37	85	175	-	-	366	523
중앙아시아	4,568	2,247	2,321	386	314	359	20	451	523	455	284	596	1,180
우즈베키스탄	2,549	1,307	1,242	323	241	259	16	133	416	343	221	249	348
카자흐스탄	1,460	639	821	41	43	45	2	248	72	75	46	230	658
키르기스스탄	452	268	184	20	23	54	2	60	24	33	14	101	121
기타	107	33	74	2	7	1		10	11	7		16	53
기타아시아	1,616	531	1,085	17	48	3	50	148	298	5		360	687

수적인 면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이어 북미 지역 출신자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자 집단이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인구나 남성인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아시아 지역 이주자들과는 달리 결혼이민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다(남성 59.7%)는 점이 특징이며,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수준이다

유럽 지역 역시 전체 이주자 규모에서 성별로 특정 성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북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개별 국가에 따라서는 경향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러시아의 경우는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계 러시아인은 유학생의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유학생의 규모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실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1 북미 및 유럽 출신 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2016)

구분	계 (명)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북미	27,628	13,765	13,863	1,452	1,772	1,359	2,012	602	372	6,682	5,369	3,670	4,338
미국	21,956	10,799	11,157	1,129	1,355	998	1,481	529	327	4,765	3,971	3,378	4,023
캐나다	5,672	2,966	2,706	323	417	361	531	73	45	1,917	1,398	292	315
유럽	9,344	4,717	4,627	454	1,016	410	663	1,810	933	625	511	1,418	1,504
러시아	1,623	1,041	582	52	81	201	23	317	46	-	-	471	432
러시아(한국계)	730	443	287	8	3	24	4	2		386	260	23	20
영국	1,212	443	769	162	369	27	192	87	47	65	46	102	115
기타	5,779	2,790	2,987	232	563	158	444	1,404	840	174	205	822	937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경우 실제 서울 거주 이주민의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1개국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파악된다. 오세아니아 출신자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가, 중남미는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남성이, 아프리카는 유학생이 서울 거주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2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출신국가별*성별 이주민 현황 (2016)

구분	계 (명)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오세아니아	2,507	1,150	1,357	67	150	147	286	52	59	666	603	218	259
중남미	1,343	672	671	29	119	59	48	298	179	30	34	256	291
아프리카	3,775	959	2,816	115	166	27	129	278	388	2		538	2,132
기타	62	29	33	0	0	-	-	-	-	0	0	25	30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대다수는 중국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12월 말 현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집계한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총 수 273,441명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위 기타로 분류된 국가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제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인구가 10인 미만인 출신 국

가가 50개국에 이르며, 70개국에 달하는 국가의 출신자들은 10인 이상 100인 미만 이 서울에 살고 있다.

2. 이주여성의 실태와 삶의 질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분석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내 표본 2만 가구, 거주 기간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주민 2,500명을 응답자로 설정하고 있어 외국인주민현황과 연계하여 분석하기에 적절한 기존의 조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 인용하는 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2016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현황을 통해 본 서울 거주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현황과 시점에 차이가 없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에 서울서베이(2016) 외국인조사를 통해 서울시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¹⁴⁾

■ 표 Ⅲ-13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개요 (2016)

구 분	외국인 조사
모 집 단	2016년 10월 1일 현재 서울시 거주 외국인 중 만 20세 이상, 91일 이상 거주자
조사 내용	서울에서의 삶의 질, 교통 및 환경, 서울의 물가 수준, 문화시설, 결혼생활, 건강, 사회 교류 및 일상생활, 정보수준, 주거 및 직업 등 총 36개 항목
조사 기간	2016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조사 기준일: 2016. 10. 1.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표본 크기	2,500명
표본 오차	± 1.96%(95% 신뢰수준)
표본 추출 방법	1차 추출: 층화 단순임의 추출법(체류자격별) 2차 추출: 층화 계통 추출법(국적별) 분류지표: 체류기간, 성별, 연령

14) 다른 한편으로는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에서 서울시 거주자 부분을 분리 분석하여 서울서베이와 공통되는 질문항목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서울 거주 이주여성노동자의 삶의 실태를 파악해 갈 것이다. 2015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광역자치단체별 분리분석이 불가능하고, 법적다문화가족만을 그 주요 관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일부 공통 질문항목들을 중심으로 서울서베이나 외국인고용조사와 비교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목표 모집단에 의거한 대상 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2016년 6월 30일) 현재 국내 91일 이상 서울시에 관광이 아닌 체류목적으로 체류 중인 만20세 이상 외국인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DB”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외국인은 조사시점 현재 한국 외의 국적을 소지한 자로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 등록된 외국인을 의미한다.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관광객 및 단기 체류자, 군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되었다. 또한 표본에서는 목표모집단 중 서울시에 관광이 아닌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등록 면제자(외교, 공무, 협정수행자 등) 및 주한 외국군인은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2016년 6월 30일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만 20세 미만 제외) 즉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와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동포 명부’가 활용되었다. 할당된 표본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Ⅲ-14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표본 할당표 (2016)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E7)	유학 (D2,D4)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F3)	재외 동포 (F4)	영주자 (F5)	결혼 이민자 (F6)	기타 (G-1)	계
중국	413	37	99	102	256	181	77	40	1,205
일본	0	11	21	18	16	27	22	22	137
타이완	0	8	14	23	5	50	8	11	119
베트남	0	9	27	28	0	10	30	14	118
아시아 기타	38	26	48	33	28	18	29	37	257
미국	0	31	16	15	121	14	16	26	239
영미권 기타	0	25	9	10	85	12	14	11	166
유럽권	7	19	27	15	36	14	14	20	152
기타	0	14	26	15	12	6	10	24	107
계	458	166	261	244	547	326	210	181	2,500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할당에서 출신국, 비자체류 자격 등에 따른 할당을 한 결과, 앞선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나타난 출신국별, 비자 체류 자격별 인구 규모를 반영하고 있으나, 연령에서는 50대의 인구가 20대와 유사했던 외국인주민 현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

울서베이 외국인조사의 경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9.3%이며, 50대의 비율은 13.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연령별 할당은 현황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체류자격의 경우는 외국인주민통계 현황에 비해 보다 상세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근로자)로 분류하지 않고 비자체류자격에 따라 방문취업과 전문인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체류자격을 통해 볼 때 나타나는 특징은 외국인주민통계에 비해 유학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다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실제 비자체류자격이 F4가 아닌 H2의 경우도 현실에서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외국인주민통계나 서울서베이가 분류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F4 비자의 경우 공사 현장이나 소위 “막노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이가 있는 일부 동포들은 F4비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면접조사에서 나오고 있다.

【 표 Ⅲ-15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연령대 (2016년 기준 만나이) 15)	20대	636	44.3	346	32.5	982	39.3
	30대	332	23.1	323	30.4	655	26.2
	40대	148	10.3	150	14.1	298	11.9
	50대	179	12.5	156	14.7	335	13.4
	60대	109	7.6	67	6.3	176	7.0
	70대 이상	33	2.3	21	2.0	54	2.2
국적	중국	666	46.3	552	51.9	1218	48.7
	일본	106	7.4	47	4.4	153	6.1
	타이완	126	8.8	39	3.7	165	6.6
	베트남	112	7.8	54	5.1	166	6.6
	아시아기타	130	9.0	101	9.5	231	9.2
	미국	98	6.8	96	9.0	194	7.8
	영미권기타	76	5.3	51	4.8	127	5.1
	유럽권	64	4.5	50	4.7	114	4.6
	기타	59	4.1	73	6.9	132	5.3
체류	방문취업(H2)	154	10.7	186	17.5	340	13.6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자격	전문인력(E1-E7)	63	4.4	63	5.9	126	5.0
	유학생(D2, D4)	418	29.1	172	16.2	590	23.6
	방문동거/거주/동반(F1-F3)	113	7.9	89	8.4	202	8.1
	재외동포(F4)	305	21.2	220	20.7	525	21.0
	영주자(F5)	126	8.8	100	9.4	226	9.0
	결혼이민자(F6)	139	9.7	36	3.4	175	7.0
	기타	119	8.3	197	18.5	316	12.6
체류 기간 ¹⁶⁾	3개월이상 6개월 이하	168	11.7	60	5.6	228	9.1
	6개월초과 1년 이하	232	16.1	95	8.9	327	13.1
	1년 초과 3년 이하	378	26.3	358	33.7	736	29.4
	3년 초과 5년 이하	198	13.8	215	20.2	413	16.5
	5년 초과 10년 이하	298	20.7	245	23.0	543	21.7
	10년 초과	163	11.3	90	8.5	253	10.1
학력	무학	4	0.3	2	0.2	6	0.2
	초등학교	57	4.0	34	3.2	91	3.6
	중학교	205	14.3	153	14.4	358	14.3
	고등학교	330	23.0	364	34.2	694	27.8
	전문대	186	12.9	151	14.2	337	13.5
	대학교	559	38.9	282	26.5	841	33.6
	대학원이상	96	6.7	77	7.2	173	6.9

이 연구는 서울 거주 이주여성의 실태 파악에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 이에 서울 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기본 정보에 의거해 외국인주민 조사 응답의 성별 비교와 함께 출신국적, 연령 등에 대해서는 여성에 한해 각 변수에 따른 상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여성은 학생(33.3%), 전업주부(10.7%), 음식점 종업원(10.2%), 미취업(6.6%), 단순노무자 및 건설노동자(6.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직업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5) 평균연령 38.79세, 여성평균연령 36.01세, 남성평균연령 38.84세

16) 평균 체류기간 4년 7개월, 여성 평균 체류기간 4년 7개월, 남성 평균 체류기간 4년 6개월

【 표 Ⅲ-16 】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직업 분포 현황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변호사	7	0.5%	3	.3%	10	.4%
엔지니어	15	1.0%	24	2.3%	39	1.6%
경영자	11	.8%	13	1.2%	24	1.0%
기업 과장 이상	11	.8%	9	.8%	20	.8%
자영업자	28	1.9%	36	3.4%	64	2.6%
노동조합 간부	2	.1%	3	.3%	5	.2%
교사/강사	62	4.3%	26	2.4%	88	3.5%
보험설계사	2	.1%	2	.2%	4	.2%
비서	5	.3%	0	0.0%	5	.2%
판매원, 점원	52	3.6%	41	3.9%	93	3.7%
사무기계 조작원	23	1.6%	18	1.7%	41	1.6%
사무보조	36	2.5%	24	2.3%	60	2.4%
조장, 반장	1	.1%	7	.7%	8	.3%
숙련공	22	1.5%	42	4.0%	64	2.6%
정비, 수리공	10	.7%	21	2.0%	31	1.2%
공장노동자	49	3.4%	103	9.7%	152	6.1%
경비원, 순찰원	1	.1%	2	.2%	3	.1%
음식점 종업원	147	10.2%	37	3.5%	184	7.4%
수위, 집 운반원	3	.2%	8	.8%	11	.4%
음식점 주방장, 요리사	35	2.4%	50	4.7%	85	3.4%
가사도우미	69	4.8%	10	.9%	79	3.2%
간병인	25	1.7%	11	1.0%	36	1.4%
엔터테이너	4	.3%	5	.5%	9	.4%
자동차 운전자	1	.1%	4	.4%	5	.2%
농민, 어민	0	0.0%	5	.5%	5	.2%
단순노무자, 건설노동자	88	6.1%	278	26.2%	366	14.6%
학생	479	33.3%	203	19.1%	682	27.3%
전업주부	154	10.7%	0	0.0%	154	6.2%
미취업	95	6.6%	78	7.3%	173	6.9%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여성과 남성 사이의 직업 현황 차이는 여성은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남성은 단순노무자, 건설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¹⁷⁾ 일과 관련해서 실제 어떤 직업인가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이주민의 경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의 구분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체류 지위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용직이라고 해도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나 정년이 보장된다거나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서베이 참여자의 경우 여성은 상용직이, 남성은 임시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양자 간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다.

【표 III-17】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고용형태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상용근로자	276	38.9%	273	34.9%	549	36.8%
임시근로자	262	37.0%	279	35.7%	541	36.3%
일용근로자	128	18.1%	179	22.9%	307	20.6%
단독자영업자	28	3.9%	36	4.6%	64	4.3%
고용주	11	1.6%	15	1.9%	26	1.7%
무급가족 종사자	4	.6%	0	0.0%	4	.3%
전체	709	100.0%	782	100.0%	1491	100.0%

월평균 소득은 구간별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가늠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200만원을 구간으로 잡아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100-300만원 구간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100만원에 근접한 소득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조사 참여자가 300만원 가까이에 포진되어 있는지에 따라 월평균 소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소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보인다.

현재 제시된 현황에서 문제는 여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구간의 응답자가 300만원 이상을 응답한 이들보다도 많다는 데 있다. 이에 반해 남성은 100만원 이하 구간

17) 이하 제시되는 통계표는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2016 서울서베이 외국인주민조사표임.

을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300만원 이상을 응답한 이들의 절반 수준으로 이주민의 월평균 소득에서도 성별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표 Ⅲ-18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00만원 이하	107	15.1%	56	7.2%	163	10.9%
100-300만원	527	74.3%	603	77.1%	1130	75.8%
300-500만원	41	5.8%	89	11.4%	130	8.7%
500만원 이상	34	4.8%	34	4.3%	68	4.6%
전체	709	100.0%	782	100.0%	1491	100.0%

주택 형태별로는 여성, 남성 모두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단독주택(다가구포함), 아파트가 뒤를 잇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터, 고시원, 쉼터에 거주하는 경우와 상가 내 거처 등 기타로 분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은 편이다. 주거공간의 독립성을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Ⅲ-19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거주 주택 형태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단독주택(다가구포함)	307	21.4%	253	23.8%	560	22.4%
아파트	207	14.4%	156	14.7%	363	14.5%
다세대주택	385	26.8%	310	29.2%	695	27.8%
연립주택/빌라	199	13.8%	149	14.0%	348	13.9%
오피스텔	51	3.5%	39	3.7%	90	3.6%
일터, 고시원, 쉼터	161	11.2%	112	10.5%	273	10.9%
기타(상가내 거처 등)	127	8.8%	44	4.1%	171	6.8%
전체	1437	100.0%	1063	100	2500	100.0%

주거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라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미미하게나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 중에 결혼이민여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는데, 여성은 66.9%, 남성은 69.2%로 생계비 중 주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급여를 300만원이라고 상정해도 월세를 50만원 낸다고 할 때에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83% 수준으로 줄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월세가 얼마이든 수입의 상당수를 주거와 관련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0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주거 점유 관련 현황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주거 점유 형태	자가	98	6.8%	45	4.2%	143	5.7%
	전세	196	13.6%	150	14.1%	346	13.8%
	보증부 월세	677	47.1%	563	53.0%	1240	49.6%
	월세	285	19.8%	172	16.2%	457	18.3%
	무상 및 기타	181	12.6%	133	12.5%	314	12.6%
보증금 ¹⁸⁾	해당 없음	562	39.1%	349	32.8%	911	36.4%
	100만원 이하	55	3.8%	46	4.3%	101	4.0%
	100-500만원	128	8.9%	130	12.2%	258	10.3%
	500-1000만원	198	13.8%	165	15.5%	363	14.5%
	1000-5000만원	301	20.9%	237	22.3%	538	21.5%
	5000만원 -1억	121	8.4%	92	8.7%	213	8.5%
	1억 이상	72	5.0%	44	4.1%	116	4.6%
월세 ¹⁹⁾	해당 없음	475	33.10%	328	30.90%	803	32.10%
	10만원이하	10	0.70%	3	0.30%	13	0.50%
	10-30만원	220	15.30%	198	18.60%	418	16.70%
	30-50만원	541	37.60%	417	39.20%	958	38.30%
	50-100만원	185	12.90%	107	10.10%	292	11.70%
	100만원 이상	6	0.40%	10	0.90%	16	0.60%

18) 보증금 평균 2218만원, 여성평균 2313만원, 남성평균 2094만원

19) 월세 평균 30.85만원, 여성평균 31.23만원, 남성평균 30.36만원

거주형태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부모·가족과 거주한다는 응답이 전체 4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남녀 모두 유학> 재외동포> 방문취업 순의 체류 형태에 따른 인구 규모를 보였는데, 이는 결국 가족원이 각각의 비자로 한국 입국한 후 동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8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거주 형태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혼자 생활	438	30.5%	377	35.5%	815	32.6%
부모/가족과 거주	579	40.3%	420	39.5%	999	40.0%
외국인 동료와 거주	234	16.3%	187	17.6%	421	16.8%
한국인 동료와 거주	75	5.2%	39	3.7%	114	4.6%
기타 타인과 거주	119	7.8%	40	3.6%	159	6.1%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또한 거주지 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 교통이 편리한 곳> 동포 등 모국인들이 많은 곳 순으로 드러나 경제적인 이유가 그 무엇보다 우선함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도 나타나는데, 남성은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을 응답한 비율(30.4%)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응답한 비율(25.6%)보다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두 항목의 응답률이 동일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일터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을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여성, 남성 공히 응답률 3순위로 모국인들이 많은 곳을 꼽은 것은 생활의 편의성과 정서적인 측면의 두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자재 등을 구하는 데 비교적 유리하며, 모국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모국어 사용이나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다.

표 Ⅲ-22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참여자의 거주지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동포 등 모국인들이 많은 곳	317	22.1%	247	23.2%	564	22.6%
교통이 편리한 곳	419	29.2%	272	25.6%	691	27.6%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	420	29.2%	323	30.4%	743	29.7%
직장과 가까운 곳	159	11.1%	173	16.3%	332	13.3%
자녀교육환경 좋은 곳	48	3.3%	19	1.8%	67	2.7%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	60	4.2%	26	2.4%	86	3.4%
기타	14	1.0%	3	0.3%	17	.6%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2) 서울 거주 결심 요인 및 거주 이후 서울에 대한 이미지

서울거주 결심 요인을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주민에게 다른 나라로 가거나 스스로의 출신국에 머물 선택지가 다양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조사 참여자에 방문취업, 유학생, 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때 경제 환경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와 관련된 응답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거주 결심보다는 입국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질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외 취업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제도에 의해 한국으로 왔고, 오기 이전에 이미 일할 곳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학생의 경우도, 장학금 수혜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섬세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유로 서울에 거주할 것을 결심했다는 항목에 대한 해석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Ⅲ-23 서울 거주 결심 요인 (5점 만점)²⁰⁾

구분	사례	비율	주거 환경	경제 환경	복지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도시 안전	평균
전체	2500	100%	3.45	3.62	3.25	3.33	3.3	3.42	3.40
여성	1437	57.5%	3.5	3.55	3.25	3.35	3.38	3.48	3.42

20) 5점 매우 큰 영향을 줌, 1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함. 성별*서울거주결심요인(평균) 유의도 0.053

구분	사례	비율	주거 환경	경제 환경	복지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도시 안전	평균
남성	1063	42.5%	3.39	3.72	3.24	3.31	3.20	3.35	3.37
여성*중국인	666	26.6%	3.57	3.70	3.34	3.40	3.34	3.49	3.47
여성*일본인	106	4.2%	3.35	3.11	2.94	3.02	3.45	3.09	3.16
여성*타이완	126	5.0%	3.65	3.43	3.22	3.35	3.71	3.70	3.51
여성*베트남	112	4.5%	3.59	3.63	3.25	3.48	3.77	3.65	3.56
여성*아시아 기타	130	5.2%	3.68	3.61	3.31	3.46	3.14	3.65	3.47
여성*미국	98	3.9%	3.11	3.36	3.19	3.15	3.10	3.16	3.18
여성*영미권 기타	76	3.0%	3.09	3.38	3.08	3.21	3.17	3.24	3.20
여성*유럽권	64	2.6%	3.17	3.23	3.08	3.23	3.58	3.52	3.30
여성*기타 지역	59	2.4%	3.56	3.54	3.25	3.42	3.31	3.68	3.46
여성*방문취업	154	6.2%	3.30	3.71	3.34	3.29	2.99	3.38	3.34
여성*전문인력	63	2.5%	3.33	3.52	3.38	3.52	3.17	3.51	3.41
여성*유학	418	16.7%	3.62	3.46	3.05	3.38	3.91	3.65	3.51
여성*방문동거/거주/동반	113	4.5%	3.43	3.52	3.42	3.44	3.35	3.52	3.45
여성*재외동포	305	12.2%	3.40	3.45	3.26	3.23	3.14	3.31	3.30
여성*영주자	126	5.0%	3.52	3.69	3.40	3.24	3.12	3.40	3.39
여성*결혼이민자	139	5.6%	3.54	3.62	3.39	3.39	3.23	3.38	3.42
여성*기타 체류	119	4.8%	3.65	3.77	3.30	3.45	3.21	3.57	3.49
여성*20대	636	25.4%	3.54	3.48	3.14	3.36	3.73	3.57	3.47
여성*30대	332	13.3%	3.52	3.69	3.38	3.43	3.24	3.48	3.46
여성*40대	148	5.9%	3.57	3.67	3.32	3.24	3.13	3.34	3.38
여성*50대	179	7.2%	3.35	3.68	3.43	3.28	2.93	3.35	3.34
여성*60대	109	4.4%	3.38	3.27	3.18	3.22	2.94	3.38	3.23
여성*70대 이상	33	1.3%	3.27	3.33	3.15	3.27	3.00	3.39	3.24

서울거주 후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8%로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여성 응답자의 8.8%, 남성 응답자의 8%가 서울 거주 후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응답해 여성이 미미하게나마 서울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여성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남성은 과반 이상이 변화 없음을, 여성은 과반을 못 미치는 정도의 인원이 서울 거주를 전후로 이미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Ⅲ-24】 서울 거주 후 이미지 변화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나빠짐	10	.7%	5	.5%	15	.6%
나빠짐	117	8.1%	69	6.5%	186	7.4%
변화없음	657	45.7%	537	50.5%	1194	47.8%
좋아짐	567	39.5%	387	36.4%	954	38.2%
매우 좋아짐	86	6.0%	65	6.1%	151	6.0%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여성과 남성 간에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차별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남성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개방 및 포용 미흡에 응답률이 높았다. 외국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미흡, 민원행정 서비스 미흡은 여성과 남성에 관계없이 서울 이미지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표 Ⅲ-25】 서울 거주 후 이미지 변화 원인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외국인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차별	38	29.9%	12	16.2%	50	24.9%
외국인 민원행정 서비스 미흡	23	18.1%	12	16.2%	35	17.4%
외국인을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 미흡	15	11.8%	14	18.9%	29	14.4%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개방 및 포용 미흡	23	18.1%	21	28.4%	44	21.9%
외국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미흡	23	18.1%	13	17.6%	36	17.9%
기타	5	4.0%	2	2.8%	1	3.5%
전체	127	100.0%	74	100.0%	201	100.0%

3) 가족생활 및 자녀 양육

서울서베이 응답 외국인 주민 중 68%는 현재 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참여자 중 40%만이 부모나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추어 다수 외국인 주민이 배우자와 별거 상태임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생활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 3.3%, 남성 3.1%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 외국인 주민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 관계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하다.

표 Ⅲ-26 결혼생활 만족도²¹⁾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결혼상태 아님	510	35.5%	289	27.2%	799	32.0%
매우 불만족	15	1.0%	7	.7%	22	.9%
약간 불만족	33	2.3%	22	2.1%	55	2.2%
보통	250	17.4%	198	18.6%	448	17.9%
약간 만족	486	33.8%	425	40.0%	911	36.4%
매우 만족	143	10.0%	122	11.5%	265	10.6%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자녀와 관련하여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14.8%로 응답되었는데, 여성 응답자의 12.3%, 남성응답자의 18.3%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응답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9.3%이고, 26.2%를 차지하는 30대 인구 중 3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한다면 응답자 구성에 따라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생각해 볼 문제는 현재 비자체류 제도에서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비자가 얼마나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는 점이다.

21) 성별*결혼생활 만족도 유의도 0.532

표 Ⅲ-27 Ⅲ 취학연령 자녀 유무²²⁾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취학연령 자녀 있고, 동거	263	18.3%	193	18.2%	456	18.2%
취학연령 자녀 있으나 비동거	177	12.3%	194	18.3%	371	14.8%
취학연령 자녀 없음	997	69.4%	676	63.6%	1673	66.9%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취학연령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의 다수는 경제적 원인(49%)과 본국의 시스템과 다른 한국의 여건으로 인한 학업지속성 확보 곤란(34.8%)을 들고 있다. 경제적 이유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교육할 비용의 문제인지, 자녀를 동반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경제적 이유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개인의 이주가 가족의 이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가족 동반이 불가능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거주 기간 동안 가족을 대체할 사회적 지지망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체류자격을 허가하는 제도 자체가 자녀 동반이나 가족 동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면 항목 자체가 큰 의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Ⅲ-28 Ⅲ 취학연령 자녀와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유²³⁾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의 외국인학교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9	5.1%	15	7.7%	24	6.5%
본국 시스템과 달라 학업 연속성 확보 어려워서	75	42.4%	54	27.8%	129	34.8%
한국의 정규학교 이외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19	10.7%	16	8.2%	35	9.4%
경제적 이유	74	41.8%	108	55.7%	182	49.1%
기타	0	0.0%	1	.5%	1	.3%
전체	177	100.0%	194	100.0%	371	100.0%

22) 성별*취학연령 자녀 유무 유의도 0.001 이하

23) 성별*취학연령자녀를 서울에 데려오지 않은 이유 유의도 0.019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교육 방법으로 응답된 것은 어린이집>유치원>한국학교>직접 돌봄 순이다. 그러나 법적 다문화가족 이외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응답자에 일부 결혼이민여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가족은 법적 다문화가족으로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 한국학교를 이용한다는 응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응답률이 높은 현상은 여성 응답자 중 일부 결혼이민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표 Ⅲ-29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양육 방법 (중복응답)

구분	성별				전체(중복)
	여성		남성		
	총계(중복)	%	총계(중복)	%	
유치원	43	18.1%	33	20.4%	76
어린이집	66	27.8%	22	13.6%	88
사설학교	15	6.3%	23	14.2%	38
국제학교	19	8.0%	19	11.7%	38
한국학교	47	19.8%	25	15.4%	72
직접 돌봄	31	13.1%	32	19.8%	63
친척/도우미	13	5.5%	6	3.7%	19
기타	3	1.3%	2	1.2%	5
전체	237	100%	162	100	399

4) 건강상태 및 관리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하여 보통 이하의 응답은 여성 응답자 중 8.4%, 남성 응답자 중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주관적 건강상태일 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III-30 | 건건강상태²⁴⁾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나쁨	20	1.4%	12	1.1%	32	1.3%
나쁨	101	7.0%	53	5.0%	154	6.2%
보통	457	31.8%	287	27.0%	744	29.8%
좋음	658	45.8%	509	47.9%	1167	46.7%
매우 좋음	201	14.0%	202	19.0%	403	16.1%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과반수이상의 외국인 주민은 주로 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보다도 응답이 낮았으며, 처방 없이 약국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은 남성 쪽에서 여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며,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 약간 높다.²⁵⁾ 문제는 여성응답자의 15.7%, 남성 응답자의 15.3%는 아플 때 그냥 참는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로 직장이든 지역이든 건강 보험 가입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이상의 이주민이 의료 서비스 밖에 방치된 상태이다. 이는 소위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적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모든 의료비를 개인부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법적 미등록 체류자가 어느 정도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4) 성별*건강상태 유의도 0.001, 성별*주로 찾는 의료기관 유의도 0.006, 성별*의료기관이용시어려운 점 유의도 0.063

25) 여성이 보건소 이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은 일부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 관리나 자녀 예방 접종 등과 관련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면접조사 과정에서 서울에서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표 Ⅲ-31 】 건강 관리 방법_주로 찾는 의료기관²⁶⁾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병원/한의원	753	52.4%	528	49.7%	1281	51.2%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94	6.5%	102	9.6%	196	7.8%
보건소	86	6.0%	42	4.0%	128	5.1%
처방 없이 약국	279	19.4%	228	21.4%	507	20.3%
그냥 참는다	225	15.7%	163	15.3%	388	15.5%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비용문제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던 응답과 함께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의 문제(여성 28.1%, 남성 25%)도 들고 있어, 생존권과 연계된 의료기관 이용에서 통역 등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환자로서 이주민이 몸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서부터 의사가 이를 이해하고, 진단 내용을 답해 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일상 회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단순한 통역이 아닌 의료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가진 통역 서비스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 표 Ⅲ-32 】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²⁷⁾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의사소통	341	28.1%	225	25.0%	566	26.8%
이용절차	133	11.0%	117	13.0%	250	11.8%
비용	480	39.6%	329	36.6%	809	38.3%
거리가 멀	73	6.0%	68	7.6%	141	6.7%
기타	185	15.3%	161	17.9%	346	16.4%
전체	1212	100.0%	900	100.0%	2112	100.0%

26) 성별*건강상태 유의도 0.001, 성별*주로 찾는 의료기관 유의도 0.006, 성별*의료기관 이용 시어려운 점 유의도 0.063

27) 성별*건강상태 유의도 0.001, 성별*주로 찾는 의료기관 유의도 0.006, 성별*의료기관이용시어려운점 유의도 0.063

의료기관 이용에서 비용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던 만큼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여성은 응답자의 25.1%, 남성은 27.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비용 문제를 제기한 여성 480명과 남성 329명 중 다수가 의료비 전액을 개인 부담으로 지출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표 Ⅲ-33 Ⅲ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형태 (중복응답)

구분	성별				전체 (중복)
	여성		남성		
	총계(중복)	%	총계(중복)	%	
직장가입 건강보험	279	19.2%	264	24.5%	543
지역가입 건강보험	159	11.0%	102	9.5%	261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	144	9.9%	120	11.2%	264
개인 의료보험	473	32.6%	287	26.7%	760
없음	364	25.1%	296	27.5%	660
기타	33	2.3%	7	.7%	40
합계	1452	100%	1076	100%	2528

5) 사회적 관계망 및 부당한 대우 경험

외국인 주민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라는 점에서는 사회적 지지망 확보를 위해 단체나 모임 참여 등이 보다 절실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모임이나 모국인 친구 모임 이외에는 10% 미만의 이주여성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도 전체 25.1%에 달하고 있어, 자칫 사회적 고립에 처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한다는 여성은 여성 응답자의 4.7%, 남성 응답자의 6.1%에 불과하며, 다문화센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여성의 8%, 남성의 5.6%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답하고 있는 참여단체는 종교모임과 모국인 친구모임으로 여성 응답은 종교모임에서 15.7%, 남성은 모국인 친구모임에서 17.7%의 응답이 나왔다.

표 Ⅲ-34 정기적 참여단체(중복응답)

구분	성별				전체 (중복)
	여성		남성		
	총계(중복)	%	총계(중복)	%	
여성결혼이민자모임	72	3.6%	37	2.6%	109
한국다문화센터	159	8.0%	80	5.6%	23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3	4.7%	86	6.1%	179
유학생 네트워크	192	9.7%	115	8.1%	307
종교 모임	312	15.7%	215	15.2%	527
취미관련 동호회	111	5.6%	88	6.2%	199
학습관련 모임	192	9.7%	103	7.3%	295
모국인 친구 모임	289	14.5%	251	17.7%	540
모국인 사회단체	64	3.2%	44	3.1%	108
참여하는 모임 없음	499	25.1%	392	27.6%	891
기타	5	.3%	8	0.6%	14
합계	1988		1419		3407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종교모임이나 모국인 친구모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만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대상 역시 모국인 친구나 친척에 집중되어 있다. 감정·심리 문제에서 전체 과반수 이상이 모국인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외국인지원센터나 고용지원센터 등 공적 체계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한국인 사회종교단체보다도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공적인 지원체계의 이용보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들 간의 교류가 이주민 사회에서도 일반화된 만큼, 이러한 사적 공동체를 통한 이주민의 활동을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표 Ⅲ-35 | 감정·심리 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²⁸⁾

비고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49	3.4%	40	3.8%	89	3.6%
모국인 친구, 친척	748	52.1%	502	47.2%	1250	50.0%
한국인 친구, 친척	142	9.9%	82	7.7%	224	9.0%
모국인 사회/종교단체	70	4.9%	57	5.4%	127	5.1%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50	3.5%	32	3.0%	82	3.3%
모국인 직업소개업자	10	.7%	7	.7%	17	.7%
한국인 직업소개업자	7	.5%	5	.5%	12	.5%
서울시 외국인 지원센터	27	1.9%	12	1.1%	39	1.6%
스스로 해결	164	11.4%	178	16.7%	342	13.7%
문제 경험한 적 없음	170	11.8%	148	13.9%	318	12.7%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모국인 친구나 친척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한국인 친구나 친척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심리감정의 문제 같은 경우 스스로 해결하였다는 응답이 한국인 친구나 친척보다 높았던 것과는 차이나는 결과로, 전문 의료 기관 이용 등과 관련해 선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응답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Ⅲ-36 | 건강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²⁹⁾

비고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39	2.7%	30	2.8%	69	2.8%
모국인 친구, 친척	552	38.4%	354	33.3%	906	36.2%
한국인 친구, 친척	232	16.1%	115	10.8%	347	13.9%
모국인 사회/종교단체	65	4.5%	57	5.4%	122	4.9%

28) 성별*감정적,심리적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4, 성별*건강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1 이하, 성별*금전적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25, 성별*취업창업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1

29) 성별*감정적,심리적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4, 성별*건강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1 이하, 성별*금전적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25, 성별*취업창업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1

비고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59	4.1%	46	4.3%	105	4.2%
모국인 직업소개업자	21	1.5%	20	1.9%	41	1.6%
한국인 직업소개업자	12	.8%	12	1.1%	24	1.0%
서울시 외국인 지원센터	43	3.0%	26	2.4%	69	2.8%
스스로 해결	193	13.4%	207	19.5%	400	16.0%
문제 경험한 적 없음	221	15.4%	196	18.4%	417	16.7%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금전문제의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융통한 것인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도움 요청인지에 따라서 도움 요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이 또한 모국인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높으며, 문제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과 스스로 해결하였다는 응답도 감정·심리적인 문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37 Ⅰ 금전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³⁰⁾

비고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32	2.2%	34	3.2%	66	2.6%
모국인 친구, 친척	676	47.0%	432	40.6%	1108	44.3%
한국인 친구, 친척	169	11.8%	109	10.3%	278	11.1%
모국인 사회/종교단체	71	4.9%	56	5.3%	127	5.1%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36	2.5%	33	3.1%	69	2.8%
모국인 직업소개업자	35	2.4%	22	2.1%	57	2.3%
한국인 직업소개업자	9	.6%	10	.9%	19	.8%
서울시 외국인 지원센터	21	1.5%	19	1.8%	40	1.6%
스스로 해결	176	12.2%	168	15.8%	344	13.8%
문제 경험한 적 없음	212	14.8%	180	16.9%	392	15.7%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30) 성별*감정적,심리적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4, 성별*건강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1 이하
성별*금전적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25, 성별*취업창업문제처리방법 유의도 0.001

특히 취업이나 창업 등의 문제에서도 고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여성의 8.7%, 남성의 10.3%에 불과해 제도 이용율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했는가의 질문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취업 창업 문제와 관련된 응답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스스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모국인 친구나 친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하나, 이 또한 다른 문제에 비해 해당 항목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오히려 한국인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취업이나 창업 문제에서는 모국 자원보다는 한국 내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제가 말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이주여성들의 응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표 Ⅲ-38 취업·창업 문제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³¹⁾

비고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25	8.7%	110	10.3%	235	9.4%
모국인 친구, 친척	432	30.1%	326	30.7%	758	30.3%
한국인 친구, 친척	217	15.1%	139	13.1%	356	14.2%
모국인 사회/종교단체	72	5.0%	46	4.3%	118	4.7%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22	1.5%	13	1.2%	35	1.4%
모국인 직업소개업자	61	4.2%	82	7.7%	143	5.7%
한국인 직업소개업자	60	4.2%	62	5.8%	122	4.9%
서울시 외국인 지원센터	75	5.2%	39	3.7%	114	4.6%
스스로 해결	112	7.8%	83	7.8%	195	7.8%
문제 경험한 적 없음	261	18.2%	163	15.3%	424	17.0%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31) 성별*감정적, 심리적 문제 처리방법 유의도 0.004, 성별*건강 문제 처리방법 유의도 0.001 이하, 성별*금전적 문제 처리방법 유의도 0.025, 성별*취업 창업 문제 처리방법 유의도 0.001

이주여성이 겪는 구체적인 차별의 경험을 장소별로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별의 경험은 공적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이 비교적 낮은 한편 직장 내에서의 차별 대우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공간별 차별 대우 경험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성 중에는 유학생이 공공기관에서 겪는 차별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가장 빈번한 차별은 아시아 기타지역 출신 여성이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에게 직장내 집주인·부동산과의 사이에서 차별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³²⁾ 공공기관 같은 경우, 차별 대우 등에 의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담당자에게 징계가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기관에서의 차별대우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에 따라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직장에서의 차별은 생계와 관련되어 개인이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문제제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선주민이 공통으로 겪게 되는 고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Ⅲ-39 차별 대우 경험³³⁾ (5점 환산)

구분	사례	비율	거리, 등 네	상점, 음식점, 은행	공기관	집주인, 부동산	직장내	평균
전체	2500	100%	2.35	2.34	2.31	2.38	2.47	2.37
여성	1437	57.5%	2.34	2.34	2.26	2.35	2.40	2.34
남성	1063	42.5%	2.37	2.34	2.37	2.43	2.55	2.41
여성*중국인	666	26.6%	2.23	2.26	2.19	2.34	2.36	2.27
여성*일본인	106	4.2%	2.14	2.15	2.04	2.07	2.10	2.10
여성*타이완	126	5.0%	2.27	2.36	2.23	2.23	2.23	2.26
여성*베트남	112	4.5%	2.60	2.56	2.32	2.26	2.40	2.43
여성*아시아 기타	130	5.2%	2.60	2.46	2.28	2.51	2.86	2.54

32) 면접조사에서는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가 중국동포 출신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편견 어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례, 베트남 출신자 가족이 다른 한국인 세입자에 비해 수도요금 등에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사례가 이야기되고 있어, 실제 집주인과의 갈등과 상호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성별*차별대우 경험(평균) 유의도 0.224

구분	사례	비율	거리,동 네	상점, 음식점, 은행	공기관	집주인, 부동산	직장내	평균
여성*미국	98	3.9%	2.46	2.42	2.57	2.50	2.67	2.52
여성*영미권 기타	76	3.0%	2.70	2.52	2.78	2.70	2.74	2.69
여성*유럽권	64	2.6%	2.42	2.40	2.25	2.28	2.19	2.31
여성*기타 지역	59	2.4%	2.26	2.37	2.16	2.31	2.33	2.29
여성*방문취업	154	6.2%	2.19	2.15	2.32	2.31	2.32	2.26
여성*전문인력	63	2.5%	2.42	2.34	2.52	2.60	2.45	2.47
여성*유학	418	16.7%	2.20	2.25	2.00	2.16	2.16	2.15
여성*방문동거/거주/동반	113	4.5%	2.22	2.31	2.28	2.30	2.47	2.32
여성*재외동포	305	12.2%	2.48	2.45	2.52	2.51	2.56	2.50
여성*영주자	126	5.0%	2.47	2.40	2.37	2.44	2.47	2.43
여성*결혼이민자	139	5.6%	2.54	2.48	2.31	2.40	2.69	2.48
여성*기타 체류	119	4.8%	2.34	2.40	2.12	2.34	2.43	2.32
여성*20대	636	25.4%	2.28	2.32	2.12	2.22	2.29	2.25
여성*30대	332	13.3%	2.47	2.47	2.38	2.55	2.55	2.48
여성*40대	148	5.9%	2.37	2.36	2.54	2.46	2.37	2.42
여성*50대	179	7.2%	2.26	2.22	2.29	2.37	2.46	2.32
여성*60대	109	4.4%	2.36	2.26	2.29	2.30	2.46	2.33
여성*70대 이상	33	1.3%	2.42	2.11	2.31	2.34	2.40	2.32

차별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출신국가를 그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그 외 한국어 언어 능력과 외모(피부색), 경제력이 후순위 답을 점하고 있다. 한국어 실력의 경우 개인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지만, 출신국가나 외모 등의 문제는 선주민의 편견 해소가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이주민 사이의 갈등해소가 어느 일방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차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주민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차별원인 분석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차별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차별의 원인을 출신국가나 한국어 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질 수도 있다. 직접 해당 사안을 이야기했다면 차별의 원인 분석에 무리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설문지 재구성이 필요하다.

표 Ⅲ-40 차별 이유 (중복응답)

구분	성별				전체(중복)
	여성		남성		
	총계(중복)	%	총계(중복)	%	
출신국가	695	37.5%	504	35.8%	1199
한국어 언어능력	645	34.8%	391	27.8%	1036
외모 (피부색)	200	10.8%	184	13.1%	384
경제력	177	9.5%	212	15.1%	389
직업	98	5.3%	83	5.9%	181
종교	34	1.8%	31	2.2%	65
기타	5	.4%	1	.1%	6
합계	1854		1406		3260

차별을 당했을 때 실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응답되고 있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응답을 비교했을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차별 시정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차별 시정 요구 경험에 대한 질문보다 차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이다.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대응역량 강화나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41 차별 시정 요구 경험³⁴⁾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없다	1262	87.8%	967	91.0%	2229	89.2%
있다	175	12.2%	96	9.0%	271	10.8%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노동자 혹은 근로자에게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임금 체불은 삶의 기본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게 된다. 그럼에도

34) 성별*차별시정요구 경험 유의도 0.012

도 불구하고 여성의 36%, 남성의 40.7%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한다. 앞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국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응답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금전문제 중 특히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적 기관에 알려 구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제력을 전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다른 모든 이에게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주민에게는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표 III-42 | 임금체불 경험³⁵⁾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자주 있다	8	1.1%	14	1.8%	22	1.5%
약간 있다	73	10.3%	104	13.3%	177	11.9%
별로 없다	174	24.5%	200	25.6%	374	25.1%
전혀 없다	454	64.0%	464	59.3%	918	61.6%
전체	709	100.0%	782	100.0%	1491	100.0%

6) 삶의 질과 행복도

서울 거주 이주민이 보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6으로 여성은 평균값과 같으며 남성은 3.59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다만 질문 항목별로는 전반적 만족도가 부문별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여성은 부문별로 경제 환경(3.5)에 대해서, 남성은 교육환경(3.41)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여성의 경우 주거환경(3.73)과 도시안전(3.71)으로, 출신국적별로 베트남 여성은 도시안전에 대한 만족도(4.1)가 특히 높다.

출신국별로 베트남 출신 여성 3.92에서 일본 출신 여성 3.44까지 삶의 질 평균값에서 차이가 있다. 부문별로는 베트남 출신여성의 도시안전 분야의 삶의 질(4.1)에

35) 성별*임금체불 경험 유의도 0.143

대한 평가가 가장 높으며 일본출신 여성이 보는 경제 환경(3.08)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다. 체류자격별로는 여성의 경우 재외동포(3.48)가 삶의 질 평균에서 가장 낮았는데, 특히 재외동포여성은 교육환경(3.34)에서 삶의 질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여성, 영주권 소지 여성, 기타 체류 자격 여성의 평가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20대 여성은 경제 환경, 30대와 40대 여성은 교육 환경, 50대와 60대는 사회 환경, 70대 이상은 복지 환경과 관련한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Ⅲ-43 서울 거주 이주여성이 보는 삶의 질³⁶⁾

구분	사례	비율	전반적 만족도	주거 환경	경제 환경	복지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도시 안전	평균
전체	2500	100%	3.27	3.75	3.54	3.54	3.51	3.50	3.73	3.60
여성	1437	57.5%	3.26	3.73	3.50	3.54	3.53	3.57	3.71	3.60
남성	1063	42.5%	3.29	3.78	3.60	3.52	3.49	3.41	3.76	3.59
여성*중국인	666	26.6%	3.17	3.80	3.51	3.53	3.49	3.51	3.71	3.59
여성*일본인	106	4.2%	3.37	3.43	3.08	3.42	3.58	3.59	3.50	3.44
여성*타이완	126	5.0%	3.35	3.65	3.37	3.41	3.49	3.56	3.65	3.52
여성*베트남	112	4.5%	3.48	3.96	3.78	3.87	3.72	4.10	4.10	3.92
여성*아시아 기타	130	5.2%	3.38	3.85	3.61	3.58	3.63	3.46	3.83	3.66
여성*미국	98	3.9%	3.12	3.43	3.52	3.43	3.47	3.51	3.42	3.46
여성*영미권 기타	76	3.0%	3.20	3.51	3.53	3.49	3.54	3.41	3.43	3.48
여성*유럽권	64	2.6%	3.34	3.56	3.50	3.66	3.55	3.59	3.78	3.61
여성*기타 지역	59	2.4%	3.30	3.97	3.54	3.64	3.53	3.71	3.86	3.71
여성*방문취업	154	6.2%	3.07	3.89	3.38	3.51	3.58	3.38	3.69	3.57
여성*전문인력	63	2.5%	3.35	3.78	3.59	3.59	3.51	3.48	3.78	3.62
여성*유학	418	16.7%	3.35	3.74	3.45	3.44	3.54	3.84	3.80	3.64
여성*방문동거/거주/동반	113	4.5%	3.51	3.84	3.56	3.82	3.66	3.77	3.96	3.77
여성*재외동포	305	12.2%	3.04	3.57	3.52	3.45	3.47	3.34	3.51	3.48
여성*영주자	126	5.0%	3.25	3.63	3.41	3.63	3.42	3.30	3.54	3.49
여성*결혼이민자	139	5.6%	3.32	3.86	3.57	3.79	3.63	3.65	3.71	3.70
여성*기타 체류	119	4.8%	3.34	3.73	3.66	3.54	3.50	3.47	3.78	3.61

36) 매우만족 5점 - 매우 불만족 1점, 성별*서울 거주 만족도(평균) 유의도 0.933

구분	사례	비율	전반적 만족도	주거 환경	경제 환경	복지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도시 안전	평균
여성*20대	636	25.4%	3.35	3.73	3.50	3.52	3.55	3.77	3.78	3.64
여성*30대	332	13.3%	3.28	3.73	3.57	3.62	3.58	3.53	3.67	3.62
여성*40대	148	5.9%	3.26	3.70	3.51	3.51	3.57	3.33	3.53	3.53
여성*50대	179	7.2%	3.06	3.45	3.56	3.47	3.30	3.68	3.42	3.48
여성*60대	109	4.4%	2.98	3.38	3.49	3.42	3.28	3.71	3.38	3.44
여성*70대 이상	33	1.3%	3.06	3.39	3.42	3.30	3.36	3.61	3.36	3.41

도시정책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서울서베이 특성 상 조사 내용은 대체로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부문별 삶의 질 평가에 이어 건강, 재정, 인간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범주로 개인이 평가하는 행복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분야에 대한 평균값에서는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에 비해 낮다. 부문별로 볼 때 여성은 재정 상태와 사회생활에서 평가하는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출신국적별로 중국 출신여성의 행복도가 가장 낮는데 부문별로는 재정상태(5.2)에서 행복도가 특히 낮다. 재정 상태에 따른 행복도가 낮은 여성은 방문취업체류 자격의 여성으로 나타나 이들의 해당 분야에서 행복도는 4.96으로 70대 여성(4.85)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앞선 삶의 질 평가에서 경제환경 관련 삶의 질을 낮게 평가했던 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재정상태에 이어 낮게 평가되는 행복도가 사회생활이라는 점에서 이주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Ⅲ-44 서울 거주 이주여성이 보는 행복도³⁷⁾

구분	사례수	비율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인간 관계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평균
전체	2500	100%	6.71	5.69	6.52	6.53	6.15	6.32
여성	1437	57.5%	6.57	5.56	6.42	6.47	6.20	6.24
남성	1063	42.5%	6.90	5.87	6.66	6.63	6.08	6.43
여성*중국인	666	26.6%	6.37	5.20	6.21	6.18	5.93	5.98

37) 10점 만점으로 10점 가장 행복한 상태 - 0점 가장 불행한 상태를 의미함. 성별*서울 삶의 만족도(평균) 유의도 0.093

구분	사례수	비율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인간 관계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평균
여성*일본인	106	4.2%	6.42	5.72	6.62	6.73	6.75	6.45
여성*타이완	126	5.0%	6.29	5.40	6.43	6.32	6.05	6.10
여성*베트남	112	4.5%	7.04	5.50	6.49	6.80	6.94	6.56
여성*아시아 기타	130	5.2%	7.08	5.91	6.49	6.58	6.07	6.43
여성*미국	98	3.9%	6.60	6.37	6.71	7.06	6.32	6.61
여성*영미권 기타	76	3.0%	6.41	6.17	6.58	6.68	6.07	6.38
여성*유럽권	64	2.6%	6.80	6.02	6.63	6.59	6.63	6.53
여성*기타 지역	59	2.4%	7.69	6.46	7.20	7.22	6.92	7.10
여성*방문취업	154	6.2%	6.26	4.96	6.01	5.97	5.69	5.78
여성*전문인력	63	2.5%	6.95	6.48	7.10	7.17	6.57	6.85
여성*유학	418	16.7%	6.64	5.36	6.57	6.41	6.55	6.31
여성*방문동거/거주/동반	113	4.5%	6.87	6.12	6.58	7.05	6.55	6.63
여성*재외동포	305	12.2%	6.32	5.70	6.18	6.37	5.84	6.08
여성*영주자	126	5.0%	6.50	5.57	6.21	6.29	5.83	6.08
여성*결혼이민자	139	5.6%	6.95	5.70	6.55	6.94	6.29	6.48
여성*기타 체류	119	4.8%	6.54	5.47	6.61	6.26	6.25	6.23
여성*20대	636	25.4%	6.74	5.54	6.60	6.55	6.51	6.39
여성*30대	332	13.3%	6.71	5.77	6.44	6.63	6.12	6.33
여성*40대	148	5.9%	6.74	6.03	6.49	6.70	6.39	6.47
여성*50대	179	7.2%	6.18	5.23	6.17	6.11	5.71	5.88
여성*60대	109	4.4%	5.83	5.17	5.75	5.93	5.19	5.57
여성*70대 이상	33	1.3%	5.88	4.85	6.03	5.97	6.06	5.76

7)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서울거주 이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기회와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분야에서 어려움은 특히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은 경제활동 기회> 자녀양육 및 교육 순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남성은 경제활동의 기회> 교육기회 획득> 자녀양육 및 교육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45 서울 거주 이주여성이 겪는 삶의 어려움³⁸⁾

구분	사례	비율	언어 문제	외로움	자녀 양육 및 교육	한국 문화 적응	음식	사회적 편견	경제 활동 기회	한국인과 유대 관계	행정 민원 제기	교육 기회 획득	의료 기관 이용	주거 공간
전체	2500	100	2.85	2.86	3.00	2.57	2.48	2.83	3.07	2.92	2.94	2.97	2.89	2.94
여성	1437	57.5	2.87	2.85	3.03	2.55	2.43	2.83	3.07	2.96	2.94	2.98	2.89	2.98
남성	1063	42.5	2.83	2.87	2.95	2.61	2.56	2.84	3.06	2.85	2.94	2.97	2.89	2.89
여성*중국인	666	26.6	2.50	2.65	2.94	2.34	2.20	2.75	3.03	2.89	2.91	2.98	2.84	2.97
여성*일본인	106	4.2	2.83	2.69	3.07	2.55	2.29	2.58	3.01	2.86	2.91	2.80	2.84	2.96
여성*타이완	126	5.0	3.26	3.01	2.98	2.58	2.42	2.98	3.18	3.17	3.05	2.97	3.07	2.93
여성*베트남	112	4.5	3.78	3.42	3.54	2.95	2.86	3.24	3.34	3.25	3.20	3.04	2.83	3.16
여성*아시아 기타	130	5.2	3.22	3.05	3.39	2.78	2.75	2.82	3.23	3.10	2.87	3.01	2.95	3.13
여성*미국	98	3.9	2.90	3.01	2.84	2.72	2.72	2.95	3.01	2.84	2.90	2.97	2.80	2.84
여성*영미권 기타	76	3.0	3.09	3.07	3.16	2.75	2.73	2.77	2.80	2.83	2.87	3.01	2.81	2.97
여성*유럽권	64	2.6	3.08	3.03	2.89	2.72	2.55	3.00	3.02	2.86	3.05	2.90	3.13	2.94
여성*기타 지역	59	2.4	3.20	2.85	3.12	2.76	2.73	2.76	3.07	3.16	2.90	3.15	3.07	2.88
여성*방문취업	154	6.2	2.29	2.43	2.59	2.09	2.07	2.52	3.05	2.71	2.81	3.08	2.77	2.98
여성*전문인력	63	2.5	2.97	2.63	2.59	2.60	2.63	2.58	3.02	2.92	2.83	2.97	2.89	2.76
여성*유학	418	16.7	3.25	2.96	2.57	2.57	2.44	2.95	3.12	3.21	3.10	2.90	3.08	3.03
여성*방문동거/거주/동반	113	4.5	2.72	2.77	2.90	2.66	2.47	2.71	2.77	2.80	2.84	2.87	2.75	2.90
여성*재외동포	305	12.2	2.71	2.95	3.04	2.55	2.43	2.83	3.06	2.88	2.86	3.04	2.85	2.94
여성*영주자	126	5.0	2.56	2.74	3.11	2.43	2.44	2.92	3.21	2.90	2.87	3.01	2.63	2.98
여성*결혼이민자	139	5.6	2.85	2.99	3.36	2.73	2.52	2.85	3.09	2.79	2.91	2.93	2.65	3.06
여성*기타 체류	119	4.8	3.11	2.92	2.94	2.81	2.56	2.91	3.13	3.08	3.06	3.08	3.19	3.01
여성*20대	636	25.4	3.18	2.97	3.09	2.62	2.51	2.98	3.10	3.11	3.10	2.91	2.94	2.98
여성*30대	332	13.3	2.82	2.81	3.10	2.63	2.51	2.75	3.00	2.87	2.87	2.97	2.83	2.90
여성*40대	148	5.9	2.67	2.82	3.10	2.62	2.49	2.68	3.07	2.86	2.77	2.97	2.99	3.03
여성*50대	179	7.2	2.27	2.62	2.79	2.23	2.10	2.63	3.01	2.74	2.75	3.12	2.81	3.12
여성*60대	109	4.4	2.49	2.74	3.06	2.35	2.17	2.78	3.28	2.87	2.84	3.16	2.75	2.95
여성*70대이상	33	1.3	2.61	2.70	2.73	2.45	2.21	2.55	2.91	2.94	2.82	2.88	2.90	3.00

38) 5점 만점으로 5점은 매우 어려움 - 1점 전혀 어렵지 않음을 의미함. 성별*서울 생활의 어려움 유의도(평균) 0.232

출신국적 별로 중국출신 여성은 경제활동기회, 일본 출신여성은 자녀 양육, 타이완이나 베트남 출신여성은 언어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방문 취업 여성은 교육기회획득과 경제활동 기회에서, 유학생은 언어와 한국인과의 유대관계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자녀양육 및 교육과 함께 경제활동기회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여성 중 31.5%, 남성 중 26.6%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일정 수준 이상 느끼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보통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과 매우 느낀다는 응답에서 모두 여성의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아 여성의 스트레스가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Ⅲ-46 서울 거주 이주여성의 지난2주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느낌	70	4.9%	34	3.2%	104	4.2%
조금 느낌	382	26.6%	249	23.4%	631	25.2%
보통	428	29.8%	302	28.4%	730	29.2%
느끼지 않음	496	34.5%	406	38.2%	902	36.1%
전혀 느끼지 않음	61	4.2%	72	6.8%	133	5.3%
전체	1437	100.0%	1063	100.0%	2500	100.0%

앞서 경제활동 기회와 관련된 어려움, 재정 상태와 관련되어 낮은 행복도, 경제환경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낮게 평가했던 응답과의 연장선상에서 응답 여성 880명 중 26.1%는 재정 상태를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어 응답 여성의 19%가 건강상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와 학습을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꼽은 여성도 17.3%에 이른다. 재정 문제, 건강과 함께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큰 부담이라고 응답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처함 고충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한 노동,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문제가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스트레스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Ⅲ-47 스트레스요인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빈도	%
건강상태	167	19.0%	106	18.1%	273	18.6%
재정상태	230	26.1%	174	29.7%	404	27.6%
가족관계	79	9.0%	52	8.9%	131	8.9%
외국인 친구관계	56	6.4%	41	7.0%	97	6.6%
한국인 친구관계	41	4.7%	24	4.1%	65	4.4%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	108	12.3%	65	11.1%	173	11.8%
과도한 업무/학습	152	17.3%	104	17.8%	256	17.5%
실업	13	1.5%	8	1.4%	21	1.4%
가정관리	26	3.0%	8	1.4%	34	2.3%
기타	8	.8%	3	0.6%	11	.9%
전체	880	100.0%	585	100.0%	1465	100.0%

소수 응답으로 가족관계 갈등은 외국인 친구관계나 한국인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인간관계의 밀도가 감정적 지지대로 작용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로도 작용하는 삶의 현실을 반영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금전이나 정서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인 친구에 대한 의존보다 모국인 친구나 친척에 대한 의존이 높았던 만큼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의존도가 높았던 이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족 관계는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지만, 본국에 살고 있는 별거 가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 간 어떤 경우인지의 여부는 조사결과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3. 이주여성의 노동의 실태 : 외국인고용조사 분석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제5회 조사가 실시되었다.³⁹⁾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 주간에 국내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1만 명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⁴⁰⁾ 전국조사 항목은 3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의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Ⅲ-48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 법무부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 ☐ 표본추출틀 - 법무부「등록외국인 명부」와「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명부」 ※ 2016. 1. 31일 기준
표본설계방법	☐ 추출단위 - 외국인 개인 ☐ 표본추출방법 - 표본추출틀 : 법무부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 등록면제자 및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자) 제외 - 추출방법 : 이상(Two-phase) 추출 · 시군구 : 층화단순임의추출 · 외국인 : 층화계통추출 ☐ 표본규모 산출식 - 지난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예산 및 목표 상대표준오차(이하 RSE)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표본규모 산정
추정산식	☐ 표본설계가중치에 사후층화를 적용하여 보수추정 - 2016년 5월 법무부「등록외국인 명부」와「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명부」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 단위무응답을 위한 무응답조정기법 적용 - 단위 무응답은 응답률을 고려하여 성향가중치를 적용하여 무응답 조정 실시

39) 2017년부터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부터는 조사대상을 외국인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로 귀화한 귀화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고용 외에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 및 소지, 자녀교육, 체류사항 등 체류실태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40) 단 아산시 표본(610명), 파주시 표본(954명)을 추가 추출하여 조사(별도 표본설계). 전체 표본 11,564(전국 10,000명에서 아산시 610명, 파주시 954명 추가 추출)이며, 밀집 지역 표본은 각 1천명으로 구성

외국인고용조사는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6. 5. 8. ~ 5. 14. 한주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표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므로,⁴¹⁾ 다른 고용관련 자료나 다른 시점 또는 연간 경제활동상태 관련 자료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고용조사에서의 “외국인”은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한 「출입국관리법」(제2조 정의)에 따랐으며, 출생 시 국적이나 출생지역, 혈통 등에 의한 기준과는 다르며, “외국인 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같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실질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외국인 취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조사 대상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았으면 취업자가 아니고, “외국인 취업자”중에서도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⁴²⁾ 시도별 표본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9 외국인고용조사 시도별 표본 할당 구성⁴³⁾

시도권역																					합계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748	613	1361	912	1263	2175	539	1030	1569	613	787	1400	369	534	903	551	609	1160	272	274	546	11,564
6.5%	5.3%	11.8%	7.9%	10.9%	18.8%	4.7%	8.9%	13.6%	5.3%	6.8%	12.1%	3.2%	4.6%	7.8%	4.8%	5.3%	10.0%	2.4%	2.4%	4.7%	100.0%

1) 서울시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서울시 조사 참여 외국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3.0세(최대값 91세, 최소값 15세)이며, 외국인 남성의 평균 연령은 44.1세(최대값 87세, 최소값 15세)로 표본 전체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44.036세이다. 연령대별*성별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41) 조사기간은 2016. 5. 17. ~ 5. 30.

42) 통계청 통계별설명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http://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920018&inputYear=2016>

43) 2015년 기준 전국 외국인 인구 1,711,013명 중 서울시 외국인 인구는 408,083명으로 23.9%임(귀화자 제외 24.2%). 본 표본의 서울시 인구는 11.8%로 서울시 인구가 과소표집됨.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15.11.1. 기준) 이하 제시되는 통계표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2016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임.

표 Ⅲ-50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전체 중 %	p-value
15~29세	201	14.8%	130	9.6%	331	24.3%	0.017 **
30~39세	133	9.8%	139	10.2%	272	20.0%	
40~49세	105	7.7%	108	7.9%	213	15.7%	
50~59세	179	13.2%	140	10.3%	319	23.4%	
60세 이상	130	9.6%	96	7.1%	226	16.6%	
전체	748	55.1	613	45.1	1361	100.0%	

연령별 특성을 볼 때 주의할 점은 20대 조사 참여자의 경우 15세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연령대별로는 50대에 비해 15-29세 구간이 최다분포를 보이나, 실제 20대만을 집계할 경우 50대에 비해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출신국적별로는 아시아의 경우 동북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국적으로 분류하였으나,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의 경우 지역 분류만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최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자의 비율이 전체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 현황에서는 외국인 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53%로 외국인 고용조사의 여성 비율보다는 좀 낮은 편이며, 출신 국적별로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자들이 58.9%로 외국인고용조사의 중국 출신자 비율이 외국인주민조사에 비해 높다. 성별 여성의 비율이나 출신국적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출신자의 비중은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에 비해 외국인고용조사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표 Ⅲ-51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출신국적별 구성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한국계중국인	424	31.2%	391	28.7%	815	59.9%	0.218
중국인 (한국계 제외)	122	9.0%	74	5.4%	196	14.4%	
베트남	19	1.4%	7	0.5%	26	1.9%	
우즈베키스탄	5	0.4%	4	0.3%	9	0.7%	
필리핀	8	0.6%	2	0.1%	10	0.7%	
인도네시아	1	0.1%	2	0.1%	3	0.2%	
일본	18	1.3%	12	0.9%	30	2.2%	
태국	3	0.2%	1	0.1%	4	0.3%	
몽골	5	0.4%	4	0.3%	9	0.7%	
기타 아시아	40	2.9%	30	2.2%	70	5.1%	
북미	72	5.3%	56	4.1%	128	9.4%	
유럽	18	1.3%	17	1.2%	35	2.6%	
오세아니아	8	0.6%	5	0.4%	13	1.0%	
기타	5	0.4%	8	0.6%	13	1.0%	
전체	748	55.0%	613	45.0%	1361	100.0%	

서울서베이 조사 참여 외국인 주민 중 여성의 학력별 비중은 대학교(38.9%) > 고등학교(23%) > 중학교(14.3%)였으며,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34.2%) > 대학교(26.5%) > 중학교(14.4%)였다.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는 성별과 무관하게 고졸 > 대졸 > 중졸 순의 학력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Ⅲ-52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학력별 구성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교육 정도	초졸이하	104	7.6%	59	4.3%	163	12.0%	0.016 **
	중졸	117	8.6%	120	8.8%	237	17.4%	
	고졸	271	19.9%	244	17.9%	515	37.8%	
	대졸이상	256	18.8%	190	14.0%	446	32.8%	
전체		748	55.0%	613	45.0%	1361	100.0%	

외국인 고용조사이기는 하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 취업자 기준으로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재외동포의 비율이 크다는 특징이

나타나 여성 중 33.6%, 남성 중 32.1%를 재외동포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방문취업자, 영주권자이다. 다만 방문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 중 24.2%, 여성 중 20.2%로 나타나며, 영주권자 여성은 전체 여성 중 14.3%를 남성은 전체 남성 중 11.4%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경우는 그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남성 전문 인력이 전체 남성 중 차지하는 비중은 5.7%, 여성 전문 인력은 전체 여성 중 1.9%를 차지해 남성의 경우가 전문 인력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다.

표 Ⅲ-53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체류자격별 구성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비전문취업	0	0.0%	4	0.7%	4	0.3%	<0.001 ****
방문취업	151	20.2%	178	29.0%	329	24.2%	
전문인력	14	1.9%	35	5.7%	49	3.6%	
유학생	102	13.6%	50	8.2%	152	11.2%	
재외동포	251	33.6%	197	32.1%	448	32.9%	
영주자	107	14.3%	70	11.4%	177	13.0%	
결혼이민자	59	7.9%	19	3.1%	78	5.7%	
기타	64	8.6%	60	9.8%	124	9.1%	
전체	748	100.0%	613	100.0%	1361	100.0%	

체류자격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조사는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르고 있다.

- 비전문취업 : 일반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업체에 취업할 경우 발급 받는 체류자격(E-9) - 방문취업 : 외국국적동포⁴⁴⁾가 국내에 방문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 발급받는 체류자격(H-2)이며,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개시신고를 거쳐 특례고용허가제로 관리됨 - 전문인력 : E-1 교수, E-2 회화지도(일반회화강사, 학원보조교사),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홍행, E-7 특정활동 비자 소지자 - 유학생 : 유학비자인 유학(D-2) 및 한국어연수(D-4-1)를 포함 -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할 수 있음 (외국인고용조사에서의 재외동포(F-4)는 법률상 용어인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의미함) - 결혼이민자 : 체류 외국인 중 국민배우자·결혼이민(F-2-1, F-5-2, F-6)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외국인고용조사에서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영주 체류자격의 국민배우자(F-5-2)는 제외되었음

체류기간별로는 5년에서 10년 미만 거주자가 전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체류기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은 전체 남성 중 25.3%, 전체 여성 중 18%로 남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장기 거주자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조사에서는 5-10년 미만 거주 여성은 전체 중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이주민 전체 중 10년 이상 거주자는 9.3%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가 장기거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 서베이와 비교해 볼 때는 여성에 한정해 볼 때 1년 초과 3년 미만 거주자의 비율이 26.3%로 가장 높고, 외국인 고용조사에서 최다분포 구간으로 상정된 5년-10년 구간은 20.7%,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은 11.3%로 조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Ⅲ-54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체류기간별 구성

총 한국 체류기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6개월 미만	14	1.9%	6	1.0%	20	1.5%	0.023 **
6개월~1년 미만	55	7.4%	33	5.4%	88	6.5%	
1년~3년 미만	178	23.8%	139	22.7%	317	23.3%	
3년~5년 미만	136	18.2%	103	16.8%	239	17.6%	
5년~10년 미만	230	30.7%	177	28.9%	407	29.9%	
10년 이상	135	18.0%	155	25.3%	290	21.3%	
전체	748	100.0%	613	100.0%	1361	100.0%	

한편으로 비자 종류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정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거주자의 최초 체류자격과 조사 당시 체류 자격 등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다. 서울 혹은 한국 거주 이력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장기 거주를 위한 조건, 그리고 서울 생활을 지속해 가기 위한 정책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됨.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국내 체류 시 거소 신고를 할 수 있음).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전체 65.2%로 과반을 넘는다. 혼인상태별 분포에서 성별에 따라 특별히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유배우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혼인데, 다만 이혼과 사별에서는 여성의 경우 사별> 이혼의 순이나 남성은 이혼> 사별 순의 분포를 보인다.

【 표 Ⅲ-55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혼인상태별 구성

혼인상태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유배우	475	34.9%	413	30.3%	888	65.2%	<0.001 ****
미혼	180	13.2%	167	12.3%	347	25.5%	
이혼	31	2.3%	22	1.6%	53	3.9%	
사별	62	4.6%	11	0.8%	73	5.4%	
전체	748	55.0%	613	45.0%	1361	100.0%	

유배우 상태의 체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다시 배우자와 조사 참여자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반한다.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888명(여성 475명, 남성 413명) 중 배우자와 국내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72%(여성 73.5%, 남성 70.5%)로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배우자가 국내에 있음에도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는 전체 4.2%로 해외 거주 23.8%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지는 않다.

서울 서베이에서는 거주 형태와 관련해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가 아닌 부모 혹은 가족과 동거 여부를 물었는데, 전체 응답자 중 40%, 여성 응답자 중 40.3%가 부모 혹은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외국인 고용조사의 조사참여자 중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의 비율이 서울 서베이에 비해 높다는 점과 함께 한국계 중국인이 60%에 육박하는 특징은 그대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민족과의 결혼보다 민족 내부혼이 일반적인 동포들이 받게 되는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비자를 부부가 각각 받아 한국에서 가족 재회 후 함께 거주하는 식의 동거가 일반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Ⅲ-56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배우자 동거 관련 구성

배우자 국내거주 여부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국내 함께 거주	349	73.5%	291	70.5%	640	72.1%	0.022 **
국내 별도 거주	26	4.2%	11	2.7%	37	4.2%	
해외거주	100	23.8%	111	26.5%	211	23.8%	
전체	475	100.0%	413	100.0%	888	100.0%	

배우자의 국적은 동일한 국가인 경우가 전체 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여성(67.7%)보다는 남성(81.8%)이 동일 국적 비율이 높고, 여성은 배우자 국적 한국의 비율이 29.9%로 남성(15.9%)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조사 참여자 중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결과를 반영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응답자의 7.9%, 남성 응답자의 3.1%가 결혼이민자라는 구성비의 차이가 그대로 배우자의 국적 구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Ⅲ-57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배우자 국적별 구성

배우자의 국적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한국	112	29.9%	48	15.9%	160	23.6%	<0.001 ****
동일국적	254	67.7%	247	81.8%	501	74.0%	
기타국적	9	2.4%	7	2.3%	16	2.4%	
전체	475	100.0%	413	100.0%	888	100.0%	

여성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았던 현황을 반영하여 배우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160 사례(여성 112, 남성 48) 중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다. 이를 제외한 경우 여성 응답자 배우자의 체류 자격은 방문취업(37.6%)> 재외동포(30.4%)> 영주권자(16%) 순으로, 남성 응답자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34.6%)> 방문취업(33.1%)> 영주권자(14.6%)로, 당사자의 체류자격이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재외동포> 방문취업> 영주권자 순이었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추정된 바와 같이 조사 참여 응답자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출신자 부부가 각자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Ⅲ-58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배우자 체류자격별 구성

배우자 체류자격 분류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비전문취업	2	0.8%	3	1.2%	5	1.0%	0.662
방문취업	99	37.6%	84	33.1%	183	35.4%	
전문인력	9	3.4%	6	2.4%	15	2.9%	
유학생	1	0.4%	3	1.2%	4	0.8%	
재외동포	80	30.4%	88	34.6%	168	32.5%	
영주자	42	16.0%	37	14.6%	79	15.3%	
결혼이민자	8	3.0%	5	2.0%	13	2.5%	
기타	22	8.4%	28	11.0%	50	9.7%	
전체	263	100.0%	254	100.0%	517	100.0%	

서울 서베이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이주민이 전체 32.6%(여성 30.5%, 남성 35.5%)였으며, 부모나 가족과 거주하는 이들이 40%(여성 40.3%, 남성 39.5%)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고용조사 서울시 참여자는 1인가구의 비율이 전체 22%(여성 19.3%, 남성 25.3%)로 서울 서베이에 비해 낮으며 대신 가족 가구의 비율이 전체 69.2%(여성 71.7%, 남성, 66.2%)로 높다. 특히 여성에게서 가족 가구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은 여성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Ⅲ-59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가구유형별 구성

가구유형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1인가구	144	19.3%	155	25.3%	299	22.0%	0.028 **
가족가구	536	71.7%	406	66.2%	942	69.2%	
기타가구	68	9.1%	52	8.5%	120	8.8%	
전체	748	100.0%	613	100.0%	1361	100.0%	

거처의 종류에서도 서울서베이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 14.5%(여성 14.4%, 남성 14.7%)로 외국인고용조사의 서울시 거주자(전체 12.5%, 여성 12.8%, 남성 12.1%)와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외국인 고용조사의 응답자 거주지 종류에는 서울 서베이에 없는 거처 종류로 컨테이너와 판잣집 등이 예로 제시되는데, 보다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거주지에 살고 있는 이들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2.2%에 이른다.

표 Ⅲ-60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주거형태별 구성

주거형태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일반주택	610	81.6%	509	83.0%	1119	82.2%	0.888
아파트	96	12.8%	74	12.1%	170	12.5%	
기숙사	25	3.3%	17	2.8%	42	3.1%	
기타(컨테이너, 판잣집 등)	17	2.3%	13	2.1%	30	2.2%	
전체	748	100.0%	613	100.0%	1361	100.0%	

서울 거주 선주민 주택거주 통계 결과에서는⁴⁵⁾ 주택(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51.3%, 아파트 41.6%, 주택이외의 거처 7.3%로 나타난 데 반해 외국인 주민의 일반주택 거주비율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 낮다. 점유형태별로 볼 때에도 선주민은 자가 42.0%, 전세 26.3%, 월세(사글세 포함) 28.5%, 무상 3.2%인 결과에 비추어 외국인 주민의 자가 점유 비율 낮고, 전/월세 점유 비율이 높다.

표 Ⅲ-61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주거 점유 형태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자가	105	14.0%	65	10.6%	170	12.5%	0.147
전세, 월세	598	79.9%	506	82.5%	1104	81.1%	
무상(회사나 학교제공)	45	6.0%	42	6.9%	87	6.4%	
전체	748	100.0%	613	100.0%	1361	100.0%	

자가의 비율은 서울 서베이 응답자에서 전체 5.7%(여성 6.8%, 남성 4.2%)로 나타났던 데 비해 높은데, 이 또한 외국인 고용조사에 영주권자(15.3%)와 재외동포

45)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행정구역별 주택유형, 점유형태 (2016)

(32.5%)의 비율이 서울서베이(영주 9.0%, 재외동포 21%)에 비해 높은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속 거주를 할 것이 강하게 기대되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고용조사에서 2.5%, 서울서베이에서 7%였는데, 오히려 자가의 비율은 외국인 고용조사 참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의 자가 보유율이 양 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취업 관련 실태

조사가 외국인고용조사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유급노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일을 했다는 응답은 전체 59.1%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응답자 중 50%만이 유급노동을 했다고 답하고 있다. 조사 참여 여성에 유학생이 13.6% 포함되어 있으며, 7.9%의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입국시기에 따라서는 일상적인 취업 노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노동자(혹은 근로자) 조사가 아닌 외국인 고용조사로, 선주 한국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2016년 여성 고용율이 50.2%(남성 71.1%)로 보고되고 있어⁴⁶⁾ 이주민에게나 선주민에게나 취업이 특히 여성에게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Ⅲ-62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지난 1주간 유급노동 여부별

구분	여	%	남	%	전체	%	p-value
예	374	50.0%	430	70.1%	804	59.1%	<0.001 ****
아니오	374	50.0%	183	29.9%	557	40.9%	
전체	748	100.0%	613	100.0%	1361	100.0%	

지난 한 주간 무급 가족노동 종사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다는 응답이 0.5%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 중 가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방증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4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130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표 Ⅲ-63】 서울시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 성별 * 지난 1주간 무급가족노동여부별

구분	여	%	남	%	전체	%	p-value
예	2	0.5%	1	0.5%	3	0.5%	0.986
아니오	372	99.5%	182	99.5%	554	99.5%	
전체	374	100.0%	183	100.0%	557	100.0%	

일시 휴직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 1.3%로 남성은 그렇다는 응답자가 전무하며 여성 중 그렇다는 응답이 1.9%를 차지한다. 고용조사라는 조사의 특성을 생각할 때 일시 휴직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음에도 여성에게서 응답이 나온 것은 참여자 중 결혼이민여성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64】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지난 1주간 일시휴직 여부별

구분	여	%	남	%	전체	%	p-value
예	7	1.9%	0	0.0%	7	1.3%	0.063 *
아니오	365	98.1%	182	100.0%	547	98.7%	
전체	372	100.0%	182	100.0%	554	100.0%	

취업자는 통상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족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의미하는데, 서울시 외국인 고용률⁴⁷⁾은 결론적으로 전체 59.8%, 여성 51.2%, 남성 70.3%로 서울시 주민 고용률(전체 60.1%, 여성 51.3%, 남성 69.7%)⁴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47) 취업자/15세이상인구

48)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Ⅲ-65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 *주당 총 취업시간

구분	여	%	남	%	전체	%	p-value
20시간 미만	391	52.3%	187	30.5%	578	42.5%	<0.001 ****
20~30시간 미만	28	3.7%	13	2.1%	41	3.0%	
30~40시간 미만	21	2.8%	27	4.4%	48	3.5%	
40~50시간 미만	112	15.0%	195	31.8%	307	22.6%	
50~60시간 미만	49	6.6%	80	13.1%	129	9.5%	
60시간이상	142	19.0%	111	18.1%	253	18.6%	
일시 휴직	5	0.7%	0	0.0%	5	0.4%	
전체	748	100.0%	613	100.0%	1361	100.0%	

주당 취업시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결과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볼 때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 일반적인 근무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주 근로시간은 전체 42.5%(여성 52.3%, 남성 30.5%)가 20시간 미만의 취업시간을 보이고 있다. 40~50시간 미만 구간을 응답한 이들은 전체 22.6%로 여성(15%)에 비해 남성(31.8%)의 응답 비중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는 해당 응답 구간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다른 한편으로 60시간 이상을 응답한 경우도 전체 18.6%로 여성 응답자의 19%, 남성 응답자의 18.1%가 해당된다. 이는 일 없음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된 구조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⁴⁹⁾

전체 취업시간이 유급노동이었는지, 무급가족노동이었는지, 35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일했는지, 그 이상 일했는지의 구분에서는 여성, 남성 모두 36시간 이상 유급노동자로 일했다는 응답이 높다(여성 82.4%, 남성 91.6%).

49) 다만 조사 표본에 포함된 유학생의 경우는 합법적인 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 Ⅲ-66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주당 총 주당 취업시간의 성격별

구분	여	%	남	%	전체	%	p-value
1~17시간 무급가족 종사자	1	0.3%	1	0.2%	2	0.2%	<0.001 ****
1~35시간 유급노동자	65	17.3%	35	8.1%	100	12.4%	
36시간이상 유급노동자	310	82.4%	395	91.6%	705	87.4%	
전체	376	100.0%	431	100.0%	807	100.0%	

조사 참여자가 응답한 본인의 직업은 여성의 경우 서비스 판매종사자(37.6%)> 단순노무종사자(35.8%)순이며, 남성은 기계기능조립종사자(37.4%)> 단순노무종사자(25.3%) 순으로 응답되고 있다. 3순위는 여성, 남성 모두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응답되고 있는데, 해당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 그러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한국에 올 경우 EPS 제도⁵⁰⁾를 이용하는 사례에서는 단순 노무 직종, 일부 도소매, 여관업 등에 한정된 취업이 일반적이다. 결국 이주민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는 입국 당시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 고용조사를 통해 이주민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묻기 이전에 현재 한국의 비자제도가 이주민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67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직업 분류별

구분	여	%	남	%	전체	%	p-value
관리자, 전문가, 관련종사자	53	13.9%	81	18.8%	134	16.5%	<0.001 ****
사무종사자	28	7.4%	23	5.3%	51	6.3%	
서비스, 판매종사자	143	37.6%	55	12.8%	198	24.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	0.0%	1	0.2%	1	0.1%	
기계,기능, 조립종사자	20	5.3%	161	37.4%	181	22.3%	
단순노무종사자	136	35.8%	109	25.3%	245	30.2%	
전체	380	100.0%	430	100.0%	810	100.0%	

50)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eps.go.kr/>

3) 현재 직장 및 관련 개인 이력

외국인 고용조사에 나타난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임시·일용근로자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가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다만 조사대상자에 일부 포함된 결혼이민자를 제외한다면 전체 응답자 중 노동을 위해 한국에 온 이들 중 여성이주민의 종사상의 지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비자체계 상 노동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상용이 갖는 의미가 선주민들이 통상 안정적 일자리로 이해하는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Ⅲ-68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종사상 지위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상용근로자	118	31.1%	147	34.2%	265	32.7%	0.484
임시, 일용근로자	240	63.2%	254	59.1%	494	61.0%	
비임금 근로자	22	5.8%	29	6.7%	51	6.3%	
전체	380	100.0%	430	100.0%	810	100.0%	

서울시의 산업 구조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없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가 55%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에 비추어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파악도 필요할 것이다. 음식업의 경우 전문적 자격을 요구하는 조리파트인지, 서빙이나 정리 업무 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에 차이가 있고, 단순히 사업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조건들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표 Ⅲ-69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사업장 산업분류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농림어업	0	0.0%	1	0.2%	1	0.1%	<0.001 ****
광공업	28	7.4%	68	15.8%	96	11.9%	
건설업	7	1.8%	162	37.7%	169	20.9%	
도소매, 음식, 숙박	209	55.0%	89	20.7%	298	36.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5	1.3%	21	4.9%	26	3.2%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1	34.5%	89	20.7%	220	27.2%	
전체	380	100.0%	430	100.0%	810	100.0%	

월평균 임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일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더불어 상용직인지 임시·일용직인지에 따라 실제 일을 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급여라는 것이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더욱이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직장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입국과 해당 작업장 취업 시부터 제약을 안고 있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표 Ⅲ-70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월평균임금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100만원 미만	44	12.3%	8	2.0%	52	6.9%	<0.001 ****
100만원~200만원 미만	214	59.8%	113	28.2%	327	43.1%	
200만원~300만원 미만	86	24.0%	177	44.1%	263	34.7%	
300만원 이상	14	3.9%	103	25.7%	117	15.4%	
전체	358	100.0%	401	100.0%	759	100.0%	

서울 거주자에 대한 조사이기는 하나 실제 작업장이 서울에 있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인천이 다수이다. 선주 한국인의 경우에도 거주지와 일터가 지역적으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현실이 이주민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다만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주민에게 일터와 거주지가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에서는 가족 동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절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을 선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결여되어 있다. 이어지는 면접조사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인천이나 경기 지역과 지하철 등으로 이동이 용이한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서울거주자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황도 드러나고 있다.

표 Ⅲ-71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사업장 소재지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서울	341	89.7%	321	74.7%	662	81.7%	<0.001 ****
경기, 인천	36	9.5%	98	22.8%	134	16.5%	
대전, 충청	3	0.8%	9	2.1%	12	1.5%	
강원, 제주	0	0.0%	2	0.5%	2	0.2%	
전체	380	100.0%	430	100.0%	810	100.0%	

사업장 규모로 볼 때 문제는 여성의 경우 특히 48.2%가 4인 이하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확보되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에서 노동 관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일부 면접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야간근무 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면접 사례자의 경우는 모두 소규모 작업장에 근무 중이었다.

표 Ⅲ-72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사업장 규모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1~4인	183	48.2%	120	27.9%	303	37.4%	<0.001 ****
5~9인	86	22.6%	101	23.5%	187	23.1%	
10~29인	64	16.8%	89	20.7%	153	18.9%	
30~49인	17	4.5%	35	8.1%	52	6.4%	
50~299인	23	6.1%	64	14.9%	87	10.7%	
300인 이상	7	1.8%	21	4.9%	28	3.5%	
전체	380	100.0%	430	100.0%	810	100.0%	

근속기간의 경우도 비자에 따라서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종류와 교차 분석이 이루어질 때 보다 정교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직장이 정해진 이주민이라면 많은 경우 3년 이상 직장 근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제한된 범주의 조사 결과에서는 2년 이상 근속 기간을 응답한 경우 여성이 31.7%에 이르며 남성도 34%라는 점에서 상용직(여성 31.1%, 남성 34.2%)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Ⅲ-73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현재 직장 근속기간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6개월 미만	89	24.8%	103	27.5%	192	26.2%	0.012 ***
6개월~1년 미만	71	19.8%	43	11.5%	114	15.6%	
1년~2년 미만	85	23.7%	99	26.5%	184	25.1%	
2년~3년 미만	49	13.6%	41	11.0%	90	12.3%	
3년 이상	65	18.1%	88	23.5%	153	20.9%	
전체	359	100.0%	374	100.0%	733	100.0%	

직장 이동과 관계없이 현재의 직업을 지속한 기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근속기간 예시 중 3년 이상에서 최다 응답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실제 여성 조사 참여자의 33.6%(남성 32.1%)가 재외동포이고, 방문취업자가 20.2%(남성 29%)라는 조사 참여자의 구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 비전문취업이나 전문 인력의 경우 체류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표 Ⅲ-74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동일직업근무 기간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6개월미만	35	9.2%	30	7.0%	65	8.0%	0.105
6개월~1년 미만	37	9.7%	29	6.7%	66	8.1%	
1년~2년 미만	52	13.7%	66	15.3%	118	14.6%	
2년~3년 미만	55	14.5%	47	10.9%	102	12.6%	
3년 이상	201	52.9%	258	60.0%	459	56.7%	
전체	380	100.0%	430	100.0%	810	100.0%	

4) 이직 관련 이력

직장변경과 관련해서도 80%이상이 직장 변경 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직장을 변경한 경우라 해도 1회와 2회 총합이 여성 84.4%, 남성 87.1%로 직장을 옮기는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동일 직업 근무 기간에서 1년 미만이 전체 16.1%(여성 18.9%, 남성 13.7%)였다는 조사 결과와 흐름이 이어지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

표 Ⅲ-75 서울시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직장변경 유무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있다	51	13.4%	62	14.4%	113	14.0%	0.683
없다	329	86.6%	368	85.6%	697	86.0%	
전체	380	100.0%	430	100.0%	810	100.0%	

여성의 경우 직장 변경 횟수 1회에 보다 많은 응답이 나온데 반해 남성은 2회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다. 1회를 제외하면 모두 수치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직장 변동 이력이 2회를 넘어서는 경우, 어떤 체류 자격인지의 여부와 직장 변동 사유가 함께 제시된다면 이주여성의 직장 경력 관리 등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 표 Ⅲ-76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직장변경 횟수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1회	42	82.4%	45	72.6%	87	77.0%	0.087 *
2회	1	2.0%	9	14.5%	10	8.8%	
3회	6	11.8%	4	6.5%	10	8.8%	
4회	2	3.9%	4	6.5%	6	5.3%	
전체	51	100.0%	62	100.0%	113	100.0%	

이전 직장 정보와 함께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은 현재 직장의 산업 분류이다. 앞서 살펴 본 바(표Ⅲ-3)에 의하면 여성응답자 55%의 현 직장이 도소매·음식·숙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서비스·판매종사자 37.6%(표Ⅲ-3)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이전 직장과의 유사한 곳으로 직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표 Ⅲ-77 】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의 성별*이전 직장 산업분류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건설업	0	0.0%	18	29.0%	18	15.9%	<0.001 ****
광공업	9	17.6%	16	25.8%	25	22.1%	
도소매, 음식, 숙박	31	60.8%	14	22.6%	45	39.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	3.9%	1	1.6%	3	2.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9	17.6%	13	21.0%	22	19.5%	
전체	51	100.0%	62	100.0%	113	100.0%	

유사한 곳으로 옮김에도 불구하고 왜 직장을 옮기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응답 결과에서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근로조건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례 수가 적기는 하나 특이한 점은 육아나 가사로 인해 이직을 했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 쪽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또한 이전 직장의 휴·폐업이 이직 사유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체류 자격이 취업인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한 지원책 등이 보다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77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이직 사유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이전직장 근로조건(시간, 임금) 불만족	27	52.9%	19	30.6%	46	40.7%	0.071 **
개인사유(육아, 가사 등)	13	25.5%	17	27.4%	30	26.5%	
이전직장의 휴·폐업	9	17.6%	22	35.5%	31	27.4%	
기타	2	3.9%	4	6.5%	6	5.3%	
전체	51	100.0%	62	100.0%	113	100.0%	

전반적으로 이직이 드문 현실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에게도 이직의 주된 사유가 근로조건 불만족인 데 반해 이직을 하지 않았던 다수가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이직을 하지 않은 다수가 불만족스런 근무 조건을 견디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서울서베이 중 차별 대우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실을 생각할 때도 정교할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서베이에서 차별을 당한 이후 차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차별 시정 요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도적 차원의 요구였는지, 개인적인 항의 차원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5) 구직 관련 경험

앞선 분석 결과에서 지난 1주일간 일시 휴직에 응답한 여성은 7명, 남성은 0명이었다. 한편 지난 1주간 유급고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사 참여자(여성 748명, 남성 613명) 중 여성은 50%만이 남성은 70.1%가 그렇다고 응답해 여성의 경우 조사 참여

자 절반만이 조사 시점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을 하고 있었다⁵¹⁾는 점은 이미 앞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4주간 구직을 해보았다는 응답은 여성 25명, 남성 52명으로 나타나, 일을 하고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 표 Ⅲ-78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4주간 구직여부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구해보았음	25	6.8%	27	14.8%	52	9.4%	0.003 ***
구해보지 않았음	343	93.2%	156	85.2%	499	90.6%	
전체	368	100.0%	183	100.0%	551	100.0%	

또한 조사 대상 주간에 일이 주어졌더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 남성 모두 성별 1명씩을 제외하고는 그럴 수 있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결국 조사참여자 총 수 중 취업시간별 노동실태를 제외하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응답자 수(여성 748명 중 358-380명, 남성 613명 중 401-430명)가 적다는 점과 함께 그러한 응답자 중에도 임시·일용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취업자 중 여성 63.2%, 남성 61%)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표 Ⅲ-79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취업가능 여부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있었음	24	96.0%	27	100.0%	51	98.1%	0.294
없었음	1	4.0%	0	0.0%	1	1.9%	
전체	25	100.0%	27	100.0%	52	100.0%	

구직경험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응답자 수가 제한(여성 25인, 남성 27인)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다만 구직 활동 기간 1개월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하고 있으며 3-4개월을 넘기게 되면, 응답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구직개월 수는 2.46개월, 남성은 2.44개월(평균 2.45개월)로 여성이 구직에 걸리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길다고 볼 수 있다.

51) 조사 참여 여성 748명 중 상용근로자는 118명, 남성 613명 중 상용근로자는 147명에 불과하다.

【 표 III-80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구직활동 기간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1개월	12	50.0%	8	29.6%	20	39.2%	0.024 ***
2개월	3	12.5%	5	18.5%	8	15.7%	
3개월	3	12.5%	12	44.4%	15	29.4%	
4개월	4	16.7%	0	0.0%	4	7.8%	
5개월	1	4.2%	0	0.0%	1	2.0%	
6개월	0	0.0%	2	7.4%	2	3.9%	
6개월 초과	1	4.2%	0	0.0%	1	2.0%	
전체	24	100.0%	27	100.0%	51	100.0%	

조사 참여자 중 지난 1주간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일이 주어졌을 때 당장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이들의 지난 1주간 활동 상태를 보면 여성 344명 중 41.3%는 육아·가사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여성 375명(국내 함께 거주 349명)의 37.9%에 달하는 비율이다. 또한 유학생 여성이 102명이었음에 비추어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응답한 여성은 80명, 진학준비는 15명으로 이들이 모두 유학생이라고 보면 당연한 응답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 21명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고 있다. 이들이 입국 시와 달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진료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 지에서부터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 표 III-81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지난 1주간 활동 상태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육아, 가사	142	41.3%	5	3.2%	147	29.4%	<0.001 ****
정규교육기관 통학	80	23.3%	46	29.5%	126	25.2%	
진학준비	15	4.4%	14	9.0%	29	5.8%	
취업준비	6	1.7%	9	5.8%	15	3.0%	
심신장애	21	6.1%	19	12.2%	40	8.0%	
결혼준비	1	0.3%	1	0.6%	2	0.4%	
쉬었음	75	21.8%	59	37.8%	134	26.8%	
기타	4	1.2%	3	1.9%	7	1.4%	
전체	344	100.0%	156	100.0%	500	100.0%	

또한 단순히 쉬었음을 응답한 경우도 전체 26.3%(여성 21.8%, 남성 37.8%)에 이르고 있어,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었는지, 질병 등으로 인해 휴식을 요할 정도의 건강 상태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유급고용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실제 구직을 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수가 구직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좀 더 높다. 전체 조사 참여자 여성 중 365명은 유급이든 무급 가족 종사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앞서 살펴 본 바로는 그 중 344명은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중 27명은 다시 일을 원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표 Ⅲ-82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구직 희망여부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원하였음	27	7.9%	20	12.8%	47	9.4%	0.098 *
원하지 않았음	316	92.1%	136	87.2%	452	90.6%	
전체	343	100.0%	156	100.0%	499	100.0%	

6) 기타 : 체류 희망 및 조사 참여 유학생 관련 결과

계속 체류 희망에 대한 질문은 조사 참여자 중 영주자를 제외한 이들에 대한 질문이다. 이들 중 성별을 불문하고 85%이상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계속 체류를 원한다는 것이 곧 국적을 취득하겠거나, 항구적으로 거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은 이어지는 분석결과에서 나타난다.

표 Ⅲ-83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계속 체류 희망여부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계속체류 바람	548	85.5%	477	87.8%	1025	86.6%	0.237
계속체류 바람 없음	93	14.5%	66	12.2%	159	13.4%	
전체	641	100.0%	543	100.0%	1184	100.0%	

주목할 점은 결혼이민여성이 59명 포함되어 있으나,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여성은 43명으로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해도 국적취득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국적취득보다는 영주자격 취득을 바라는 이들이 2배수 이상이다. 또한 성별을 불문하고 60% 이상의 응답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의 체류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것일 뿐 굳이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⁵²⁾

【 표 Ⅲ-84 】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성별*계속 체류방법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체류기간 연장	345	63.0%	293	61.4%	638	62.2%	0.947
체류자격 변경	53	9.7%	48	10.1%	101	9.9%	
영주자격 취득	106	19.3%	94	19.7%	200	19.5%	
한국국적 취득	43	7.8%	40	8.4%	83	8.1%	
기타	1	0.2%	2	0.4%	3	0.3%	
전체	548	100.0%	477	100.0%	1025	100.0%	

유학생에게는 주 20시간의 노동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취업상황별 질문은 일한 기간을 개월로 표하고 있다는 점은 일종의 모순으로 읽을 수 있다. 실제 일을 했다는 응답 수도 전체 유학생 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실제 노동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 표 Ⅲ-85 】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 *지난1년 취업 상황별⁵³⁾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있었음	13	12.7%	5	10.0%	18	11.8%	0.623
없었음	89	87.3%	45	90.0%	134	88.2%	
전체	102	100.0%	50	100.0%	152	100.0%	

52) 이러한 사실은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결혼이민여성에게 즉각적인 국적 취득이 가능했던 시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 귀화자의 경우, 2017년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 중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지금이라면 국적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53) 빈도수가 5이하인 셀이 여럿이므로 유의도 사용 유의

취업 기간별로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포진해 있는 구간은 여성의 경우 1-3개월, 남성은 6개월-1년 미만이다. 조사가 실시된 5월 8일에서 14일이 방학 기간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주당 노동 시간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월 수로 일한 기간을 묻는 것은 유학생에 대한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의 유학생에게 생활을 위한 적절한 노동의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 가지 목적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삶의 다양한 국면이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는 추후 유학생 정책의 과제가 될 수 있다.

【 표 Ⅲ-86 】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 *지난1년 취업 상황별 실태⁵⁴⁾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1개월 미만	1	7.7%	2	40.0%	3	16.7%	0.066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6	46.2%	0	0.0%	6	33.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	23.1%	0	0.0%	3	16.7%	
6개월 이상~1년 미만	3	23.1%	3	60.0%	6	33.3%	
전체	13	100.0%	5	100.0%	18	100.0%	

유학생이 일한 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밖에서 일했다는 응답이 여성에게서 많이 나오며 남성은 50명 중 5명만이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 결과에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표 Ⅲ-86 】 서울시 거주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일한 장소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학교 안	2	15.4%	3	60.0%	5	27.8%	0.058 *
학교 밖	11	84.6%	2	40.0%	13	72.2%	
전체	13	100.0%	5	100.0%	18	100.0%	

다만 졸업 후 계획 중에는 전체 중 35% 가량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나는 경향으로 한국에서 유학을 한 경우,

54) 빈도수가 5이하인 셀이 여럿이므로 유의도 사용 유의

일 경험을 쌓은 후 귀환을 바라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것이 한국에서의 일로 이어졌다는 점이 졸업 후 바로 귀국하는 것보다 본국에서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I-87 서울시 외국인고용조사 유학생의 성별*졸업 후 계획별

구분	여성	%	남성	%	전체	%	p-value
한국 체류 합계	55	53.9%	23	46.0%	78	51.3%	0.264
진학	19	18.6%	5	10.0%	24	15.8%	
취업	36	35.3%	18	36.0%	54	35.5%	
출국 합계	47	46.1%	27	54.0%	74	48.7%	0.624
출신국	44	43.2%	26	52.0%	70	46.1%	
출신국 외	3	2.9%	1	2.0%	4	2.6%	
전체	102	100.0%	50	100.0%	152	100.0%	0.359

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와 공통 항목 비교

이 연구는 서울의 주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주여성의 실태를 분석해 이주여성 지원정책이 그 동안 간과해온 부분을 파악하고, 이주여성 지원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그동안 가장 정책적 관심을 많이 받아온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위 두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체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좀 더 평등하게 나아가기 위해 고려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1) 경제 상태 및 주거

서울서베이, 외국인고용조사가 개인에 대한 조사로 조사 참여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질문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가족에 대한 조사이니만큼 가구 소득을 별도로 질문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황을 놓고 볼 때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분포는 월평균 가구 소득 200-3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다 분포를

보이고 있다.⁵⁵⁾

표 Ⅲ-88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2015)

(단위: %)

구분	100 만원 미만	100~ 200 만원 미만	200~ 300 만원 미만	300~ 400 만원 미만	400~ 500 만원 미만	500~ 600 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합계
전국	8.8	23.8	30.4	20.5	9.4	4.2	2.9	100

다른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은 전체적으로는 2009년 보다 2012년에 수급권자 비율이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다시 소폭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8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단위: %)

구분	수급	비수급	합계
2009	8.3	91.7	100.0
2012	5.0	95.0	100.0
2015	5.1	94.9	100.0

도시거주자의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월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2015년 주택점유 형태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이 높다는 당연한 결과(정해숙 외, 2016)의 이면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57%라는 현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55) 서울서베이에서는 전체 75.8%의 응답자가 월평균 소득 100-300만원 구간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여성은 해당 구간에 74.3%, 남성은 77.1%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외국인 고용조사에서는 전체 43.1%의 응답자가 월평균 임금 100-200만원 구간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성과 남성의 최다 분포 구간에는 차이가 있다. 여성은 100-200만원 구간 응답자가 59.8%이나, 남성은 200-3000만원 구간에 44.1%의 응답자가 분포되어 있다.

표 Ⅲ-90 다문화가족의 주택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기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	무상	합계
전국	43.0	21.0	29.0	2.5	4.4	100.0

2) 경제활동 현황

이 연구에서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서울서베이, 외국인고용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공통적인 관심은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월평균 소득이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질문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법적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혹은 서울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경로를 거쳐 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해 여성이 가용할 수 있는 관계 자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구직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경로는 공적 지원체계보다는 사적 연결망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성의 경우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 습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설기관 이용 비중은 높지 않다.

표 Ⅲ-91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구직경로(2015)

(단위: %)

구분	본인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의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	한국인 친구나 아웃의 소개	고용센터 등 공공 기관 소개	사설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	대중매체 (신문, 잡지 등) 전단지를 보고	기타	합계
전체	9.3	5.3	27.6	15.9	7.0	7.9	17.8	9.3	100.0
여성	9.1	5.5	27.1	15.2	7.7	7.1	18.1	10.1	100.0
남성	9.9	4.5	29.1	18.0	5.0	10.2	16.8	6.5	100.0

2015년 결혼이민·귀화자 중 취업 중인 여성의 비율은 전체 평균 63.9%보다는 낮은 수치인 59.5%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고용조사나 서울서베이에서 나타난 관련

문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외국인 고용조사 참여 여성의 경우 지난 1주간 유급 노동을 했다는 응답은 50%, 서울서베이에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 여성이 19.2%라는 점에서, 실제 취업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수반되지 않는 한 주관적인 취업 여부 응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표 III-92 】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취업 여부(2015)

(단위: %, 명)

구분	취업	미취업	합계
전체	63.9 (194,641)	36.1 (109,875)	100.0 (304,516)
여성	59.5	40.5	100.0
남성	83.4	16.6	100.0

취업을 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낮으며, 다수의 결혼이민·귀화자 등은 임시직과 일용직에 포진되어 있다. 특히 여성이 전반적으로 상용직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조사에서는 서울시 거주자의 상용직 비율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낮았다(강희영 외, 2013). 2012년과 2015년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영업자와 상용직의 비율이 미미하게나마 증가를 보였고,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임시직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낮으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역으로 남성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급 가족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서울서베이에서 여성응답자의 0.6%, 외국인고용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0.3%만이 해당 항목에 응답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배우자가 국적자인 결혼이민자 그룹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93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종사상 지위(2015)

(단위: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전체	34.9	28.6	20.8	3.3	6.6	5.9	100.0
여성	33.5	32.6	18.4	2.4	5.7	7.5	100.0
남성	39.4	15.9	28.1	6.2	9.6	0.8	100.0

종사 직종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비추어 단순노무,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점(전기택 외, 2013)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시거주자인 동부 거주자가 서비스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서울 거주자 중 특히 여성은 서비스직의 비율이 거주 지역, 성별로 보았을 때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강희영 외, 2013).

2015년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부분을 분리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2012년 조사에서도 이미 전국적인 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항목이 서울거주 결혼이민·혼인귀화 등 여성의 종사 직종이다. 2012년 조사에서 서울 거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강희영 외, 2013). 2015년도 조사의 결과에서도 여성의 서비스직 종사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과 비교해 볼 때 2012년 조사에서 서울 거주 여성은 단순노무보다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 조사결과, 여성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쪽이 보다 많다는 결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2년 조사에서 전국보다 서울 거주 여성의 사무직 비율이 높았던 결과에서 유추한다면 2015년 조사의 서울 거주 여성의 서비스직, 사무직 종사 비율은 전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서비스, 단순노무에 이외의 남성에 비해 전문가 직종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또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다.

표 Ⅲ-94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종사 직종(2015)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숙련	기능원 ·관련 기능	장치 기계 조작 ·조립	단순 노무	군인	합계
전체	0.1	12.2	4.6	18.7	7.6	2.9	10.2	14.6	29.0	-	100.0
여성	0.0	9.7	4.2	21.7	8.3	3.7	6.7	14.6	31.1	-	100.0
남성	0.4	20.0	6.2	9.4	5.2	0.6	21.2	14.6	22.5	-	100.0

결혼이민·귀화여성 등의 종사상 임시직, 일용직에 포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임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결혼이민·귀화 여성 70%이상이 200만원 미만 월소득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현실은 2009년 실태조사 이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앞서 분석한 외국인고용조사나 서울서베이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Ⅲ-95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월평균 임금(2009, 2012, 2015)

(단위: %)

구분	임금 없음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합계
2009	-	1.9	39.5	41.0	4.7	1.7	0.9	0.9	100.0
2012	-	7.1	18.5	52.8	11.5	3.7	2.1	4.3	100.0
2015	5.9	5.8	18.8	50.0	13.1	3.5	1.4	1.6	100.0

2015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와 달리 100만원 이상 소득 구간도 50만원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100 만원 단위 구분에서 최다분포 구간이었던 100-200만원 구간을 50만원 단위로 세분한 결과는 100-150만원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용직의 42% 수준으로 임시·일용직의 급여 수준을 144만3000원으로⁵⁶⁾ 발표한 2016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도 맞아 떨어

56)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조사 시점은 2016년 4월이다.

진다. 결혼이민여성의 급여 수준은 결국 그들이 처한 종사상의 지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표 Ⅲ-96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지난 3개월 평균 임금(2015)

(단위: %)

구분	임금 없음	50 만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300만 원 미만	300~350만 원 미만	350~400만 원 미만	400~450만 원 미만	45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합계
전체	5.9	5.8	18.8	30.8	19.2	8.5	4.6	2.3	1.2	0.9	0.5	1.6	100.0
여성	7.5	7.1	23.4	36.3	17.4	4.5	1.6	0.7	0.4	0.3	0.2	0.5	100.0
남성	0.8	1.5	4.2	13.4	24.5	21.0	14.1	7.1	3.8	2.8	1.6	5.0	100.0

결혼이민·귀화 여성 58.8%가 취업 중이라는 결과는 2015년 한국 여성의 고용율이 49.9%였다는 발표⁵⁷⁾에 비추어 결혼이민·귀화 여성에게만 취업의 문이 좁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 취업을 한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이 여성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임금노동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하고, 강화해 갈 전망을 제시해 주는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불안한 종사상의 지위,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급여의 문제는 결혼이민·귀화자에게도 여성에게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⁵⁸⁾는 점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이들은 이민자로서의 어려움과 함께 기존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한 부담을 동시에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일을 둘러싼 경험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항목의 응답 비율이 다른 답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57)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여성 고용률은 49.9%로 50%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한 해인 1996년(48.1%)보다 1.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남성 고용률(71.1%)과의 격차는 21.2%포인트에 달해 OECD 평균 격차(15.7%·2013년 기준)보다 월등히 높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2403421>).

58) 2014년 기준 한국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36.7%다.

한국어실력과 한국에서의 경력 부족이 구직 시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앞서 분석한 두 조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구직 경험 자체에 대한 질문은 있지만, 구직 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서베이 또한 취업이나 창업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만, 해당 이슈로 인해 어떠한 곤란을 겪고 있는지는 애초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의 차이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그에 다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애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를 제외한 이주민의 구직 시 고통은 정책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예측도 가능한 현실이다.

【표 Ⅲ-97】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한국에서 구직 시 어려움: 복수응답(2015)

(단위: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어려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에서 경력 부족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모국학력 및 자격증인정 받지 못함	모국경력 인정 받지 못함	취업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 없음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기타
전체	6.3	29.6	29.8	57.2	8.5	5.1	14.3	20.1	5.3
여성	6.5	32.0	31.1	55.5	8.3	4.1	13.1	19.3	5.5
남성	5.1	18.1	23.5	65.4	9.5	10.3	20.3	24.3	4.3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해 본 여성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답변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제시된 응답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도 있겠지만, “적성에 맞지 않음”을 포함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기타 항목의 답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과 급여가 적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은 이미 새삼스러운 정보는 아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의 문제와 함께 급여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결혼이민·귀화 여성이 느끼는 어려움은 그들이 특별한 구성원

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일반성을 결여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나쁜 관행의 결과일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표 Ⅲ-98 결혼이민·귀화자 등의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2015)

(단위: %)

구분	별로 어려움 없음	한국말로 대화 어려움	힘들고 위험한 일	너무 긴 노동시간	돈을 조금 받음	직장 상사나 동료와 문제	외국 사람에게 대한 차별	자녀 양육	집안일 병행 어려움	기타	합계
전체	39.6	10.1	6.8	11.0	14.7	2.0	3.9	5.2	5.7	1.1	100.0
여성	38.0	10.7	4.9	11.1	15.0	1.9	3.9	6.4	7.1	1.0	100.0
남성	44.6	8.2	12.8	10.7	13.6	2.1	4.1	1.1	1.2	1.6	100.0

너무 긴 노동시간, 적은 급여가 문제인 만큼 결혼이민·귀화 여성 등이 느끼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한국가족의 지위 평가에서 스스로를 하층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Ⅲ-99 한국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2015)

(단위: %)

구분	하층	중층	상층	합계
전체	37.5	58.6	3.9	100
여성	36.1	60.1	3.8	100
남성	43.8	51.9	4.3	100

한국국적 가족이 하층민이라는 인식이 상층이라는 인식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남성이 상대적으로 하층이라는 인식이 높다. 이는 결국,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일을 한다고 해도 장시간 노동, 적은 임금에 시달리며, 임시·일용직이 대다수인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전체 50%이상이 중층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층으로 스스로를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같은 질문에 대한 서울서베이 외국인 조사의 응답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서울서베이에서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중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가족의 지위가 아닌 개인의 사회적 지위라는 면에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여성 중에서도 중국출신, 방문취업자, 20대에서 5점 이하의 점수가 나와, 이들이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Ⅲ-100 】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내 사회적 지위⁵⁹⁾(서울서베이, 2016)

구분	사례수	비율	사회적 지위 정도
전체	2500	100%	5.16
여성	1437	57.5%	5.09
남성	1063	42.5%	5.24
여성*중국인	666	26.6%	4.71
여성*일본인	106	4.2%	5.64
여성*타이완	126	5.0%	5.14
여성*베트남	112	4.5%	4.94
여성*아시아 기타	130	5.2%	5.50
여성*미국	98	3.9%	5.77
여성*영미권 기타	76	3.0%	5.32
여성*유럽권	64	2.6%	5.61
여성*기타 지역	59	2.4%	5.69
여성*방문취업	154	6.2%	4.94
여성*전문인력	63	2.5%	5.73
여성*유학	418	16.7%	4.67
여성*방문동거/거주/동반	113	4.5%	5.25
여성*재외동포	305	12.2%	5.34
여성*영주자	126	5.0%	5.15
여성*결혼이민자	139	5.6%	5.71
여성*기타 체류	119	4.8%	4.90
여성*20대	636	25.4%	4.90
여성*30대	332	13.3%	5.33

59) 10점 만점으로 10점은 최상위층을 1점은 최하층을 의미함. 성별*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내 사회적 지위 0.468

구분	사례수	비율	사회적 지위 정도
여성*40대	148	5.9%	5.34
여성*50대	179	7.2%	5.11
여성*60대	109	4.4%	5.21
여성*70대 이상	33	1.3%	4.76

4)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결혼이민여성의 등장과 그 수적 증가가 이슈가 되면서 생겨난 것 중 하나가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기관이다. 따라서 전체 결혼이민여성 규모에 비추어 각종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도 결혼이민여성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Ⅲ-101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관련 기관·단체 이용률(2015)

(단위: %)

구분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건강 가정지원 센터	1577- 1366	주민 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고용 센터	사회복지관	민간 외국인 지원단체
전체	42.3	12.7	6.1	73.9	12.4	24.1	16.4	7.1
여성	49.3	14.3	7.0	74.0	14.6	22.6	18.0	7.5
남성	11.0	5.9	2.6	73.6	2.9	30.7	9.5	5.7

이러한 기관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초기 입국자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그 범주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의 공공 서비스는 애초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될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결혼이민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자리 교육이나 일자리 소개 서비스이다. 현재 제공되는 일자리 교육이나 일자리 소개 서비스는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이나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는 기존의 선주 한국인 서비스에 결혼이민자 등의 특성을 고

려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형태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표 Ⅲ-102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복수응답(2015)

(단위: %)

구분	가정 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 지원 (자조모임 등)	각종상담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아이돌보 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파견 서비스
전체	40.7	51.2	5.5	22.7	5.7	9.7	20.7	5.0	10.4	23.1	9.2
여성	43.7	53.2	5.8	24.0	6.0	10.3	21.6	5.3	10.0	20.9	9.6
남성	13.7	33.0	2.4	10.7	3.1	3.8	12.4	2.5	13.8	42.8	5.5

이러한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한 삶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2015년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일자리 교육이나 소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임신·출산 지원이나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서울 거주자의 일자리 교육이나 소개 서비스 이용 경험은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임을 예측케 한다.

지원기관의 이용과 관련해서 앞서 분석한 서울서베이에서는 감정·심리문제, 건강문제, 금전문제, 취업·창업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했는가 하는 문항에서 일부 언급된 바 있다. 모든 질문 항목에서 고용지원센터나 외국인 지원센터를 이용했다는 응답의 합은 각각 감정·심리문제 5.2%, 건강 5.6%, 금전 4.2%로 10%에 훨씬 못 미치며, 취·창업과 관련해서만 유일하게 1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각 항목별 응답 차이도 크지는 않았다.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현상은 오히려 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한 다른 이주자들에게 보다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들이 다른 이주민에 비해서는 공적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기존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서울시 이주여성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체류 지위로 분류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별로 기타>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유학생> 결혼이민자로 전체 총합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수치이다. 다만 기타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 50-59세> 30-39세> 40-49세> 60-69세 구간 순으로 다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는 60-64세 구간에 최다 분포라는 점에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이주민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체류 기간별로는 5-10년> 1년미만> 2-3년> 1-2년 순의 분포로 초기 입국자에 비해 서울에서의 거주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거주자가 다수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기존 초기 입국자 위주의 이주민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이주여성의 서울 체류 및 한국 체류 경력을 반영해 다변화될 필요성을 암시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출신 국적별로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출신자가 다른 국적자를 압도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서베이와 외국인고용조사 중 서울거주자 분석,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이주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거주 결심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는 경제 환경을 꼽았고, 거주 이후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 그 원인으로 여성은 외국인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차별을 들고 있다. 취학연령 자녀가 있으면서도 서울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으로 여성은 본국과 다른 교육시스템을, 남성은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초등이하 자녀의 양육 방법으로는 가장 많은 여성이 어린이집을 들었으나, 실제 한국 국적자 가족이 아닌 경우, 어린이집 이용은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뒤에 이어지는 면접조사에서 이주여성들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일반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선주민들의 현황과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비용문제를 들고 있으며, 남성 응답자는 의료급여 형태에 대해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개인의료보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기적 참여 단체가 있는 경우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파악되는데, 한국사회에서 각

중 어려움에 부딪칠 경우는 모국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별 대우를 당한 경우 그 원인으로는 출신국가와 한국어 능력을 들고 있어, 이주여성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출신국가 변수의 경우, 선주민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주여성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경제활동 기회를 들어, 서울 거주 요인을 경제적 환경으로 든 것과는 모순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하게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경제적 이유인지 다른 요인인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고용조사 참여자 중 여성은 유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사례에서 국내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응답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에 발맞추어 가구 형태는 가족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주거지는 일반주택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조사이니 만큼 자가보다는 월세, 전세의 비율이 높는데, 고용조사임에도 여성참여자의 절반은 지난1주간 유급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나 주당 총 취업시간에 대해 여성은 20시간 미만 구간의 응답률이 전체 748명 중 391명으로 52.3%를 차지하였다. 반면 남성은 전체 613명 중 40-50시간 구간이 195명으로 31.8%이다. 서울 서베이와 외국인 고용조사의 차이는 종사상의 지위에서 나타나는데 서울 서베이에서 상용직이나 일용·임시직이 모두 30%대였던 데 반해 외국인고용조사에서 특히 여성은 상용직이 31.1%, 임시일용직이 63.2%라고 응답하고 있다. 산업별 분포에서는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가 뚜렷한데 여성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5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34.5%의 응답이 나옴에 반해 남성은 건설업 37.7%, 도소매 등 20.7%, 사업 등 20.7%로 응답되었다. 월평균 임금에서 여성은 100-200만원 구간이 59.8%, 남성은 200-300만원 구간이 44.1%로 응답되어 임금의 성별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유사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가 이주민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무관하게 공통적인 질문은 경제 상황, 일과 관련된 직업 지위, 가족 현황 등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주자의 노동권을 지원하는 정책이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체류 지위가 흔한 것도 아니다. 입국을 허용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노동환경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에서는 조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다. 다만 외국인 고용 조사라고 하더라도 조사 기간에 일을 하고 있던 이들에 대한 조사이니 만큼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단순히 취업비자로 이주를 감행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체류 지위에 따라 삶이 일률적으로 흘러가지 않음을 조사 대상 자체가 의미한다는 해석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이다. 어느 조사가 되었든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 종사 직종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 등은 이주민에게서나 선주민에게서 공통으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다.

IV

이주여성의 서울생활 경험과 정책 수요

1. 이주여성의 서울 생활 경험에 대한 조사개요
2. 체류 지위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보편성
3. 체류 지위에 묶인 삶
4.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생애사의 사건들
5. 이주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6.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이주여성의 서울생활 경험과 정책 수요

1. 이주여성의 서울생활 경험에 대한 조사 개요

기존 통계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서울시 이주여성의 실태를 기반으로 이주여성의 경험을 듣고, 이들의 삶의 고충을 파악해 지원을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경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지만 출신국적, 최초의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 현재 하는 일과 체류 자격, 가족상황, 네트워크 등에 따라 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면접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경험과 출신국적이 같은 여성을 중심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1대1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서는 이주여성 39명과 지원단체 및 기관 종사자 6인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면접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국적동포 활동가, 외국인 주민 자조단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소개를 받고 이후 이들을 통해 참여자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만났던 외국인주민을 통해 서울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조사는 9월-11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영어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참여자들이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주말을 이용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집단 면접과 개인 면접이 병행

되었다.

표 IV-1 면접조사 시기 및 조사별 참여자 개요

조사 시기	참석자	출신 국적에 따른 참석자 구성
2017. 9월	동포 유학생 출신 정착자 2인	러시아 1, 우즈베키스탄 1
2017.10월	폭력피해 및 위기 이주여성 3인	태국 2, 중국동포1
2017.10월	장애아를 양육하는 거주 이주여성 1인	몽골1
2017.10월	이주여성 자조단체 모임 활동 5인	베트남 2, 태국1, 스리랑카 1, 아프리카 1
2017.10월	필리핀 가사노동자 1인, 미등록이주여성 1인	필리핀 2
2017.10월	중국동포 출신 정착 여성 5인	중국동포 5
2017.11월	(지역봉사활동) 중국동포 정착 여성 6인	중국동포 6
2017.11월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노동자 6인	필리핀 6
2017.11월	베트남 및 몽골 출신 이주여성노동자 5인	베트남 2, 몽골 3
2017.11월	체류지위 변경 이주여성 4인	미얀마 1, 몽골 1, 중국(한족)1, 중국동포 1

1) 면접조사 참여 집단별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은 출신국적별로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아프리카⁶⁰⁾ 지역 출신자로 구성되었다. 최초 입국 지위별로는 유학생, 동포, 외국인근로자, 방문동거, 단기체류 방문, 방문취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중 한국에 체류하면서 결혼이민자로 체류지위가 바뀌거나, 학생에서 영주권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법적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현재의 체류자격, 최초 입국 지위, 연령, 하고 있는 일, 출신국적 등이 다양한 분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체류 지위에 따라 조사 참여자를 분류하면 11개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60) 국가명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면접 참여자가 난민 인정자로 국내 난민인정자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의도치 않게 그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표 IV-2 현재 체류 지위에 따른 면접조사 참여 이주여성

현재 체류지위	출신국적 구성	참여인원	최초 입국 지위	체류지위 변동	비고
국적취득	미얀마	1	단기방문 (C3)	미등록→결혼이민	시모 동거
	중국(한족)	1	유학생 (D2)	결혼이민	국적회복 희망
	몽골	1	국민의배우자	입국 즉시 귀화	아이 2
	중국(동포)	8	국민의배우자	입국 즉시 귀화	아이 1
			동포(F4)	-	부모 국적회복
			동거 (F1)	-	부모 국적회복
			방문취업 (H2)	결혼이민	귀화자와 결혼
				-	부모 국적회복
				동거(F1)	부모 국적회복
				-	부모 국적회복
				-	부모 국적회복
	베트남	2	국민의배우자 (F6)	-	
	스리랑카	1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	
미등록	태국	1	단기방문(C3)	-	
	필리핀	2	비전문취업(E9)	-	
		1	단기방문(C3)	-	
	베트남	2	단기방문(C3)	-	
	몽골	1		-	
국민의배우자(F6)	필리핀	1	종교(D6)		
	태국	2	국민의배우자(F6)	-	
			무비자입국	미등록	귀국대기
	중국(동포)	2	단기방문(C3)	-	
			방문취업(H2)	-	귀화자와 결혼
외국국적동포(F4)	러시아	1	동포(F4)	-	취업 중
	중국(동포)	2	동포(F4)	-	동포와 결혼
			단기방문(C3)	미등록 자진출국	
거주(F2)	아프리카지역	1	-	난민신청(G1)	
	몽골	1	단기방문(C3)	유학(D2), 취업(E7)	가족 동거
동거(F1)	필리핀	2	동거(F1)	-	
비전문취업(E9)	필리핀	2	비전문취업(E9)	-	
구직(D10)	몽골	1	유학(D2)	-	대학원 졸업
방문취업(H2)	중국(동포)	1	단기방문(C3)	-	귀화자와 결혼
영주권자(F5)	우즈베키스탄	1	유학생(D2)	동포(F4)	취업 중
특정활동취업(E7)	몽골	1	유학(D2)	-	사무직 근무

국적 취득자 14명은 이주배경 거주민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적 취득사유는 한국인과 결혼을 한 경우는 결혼이민으로 인한 국적 취득이나, 동포 출신자의 경우 국민과의 결혼 혹은 부모의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등 그 사유가 동일하지는 않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이나 국적취득자의 경우도 귀화자와의 결혼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변동된 사례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주(F2) 비자로 있는 경우도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와 국내 대학원을 졸업한 후 취업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로 갈린다. 후자의 경우 애초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진학을 하였고,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경우이다. 특정 취업 활동이나 구직,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 체류자 중 일부도 최초의 법적 체류 자격이 무엇이든 실제로는 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최초의 삶이다.

미등록자 중 한 사례는 임신사실을 모른 채 단기방문으로 입국하여 영어강사로 일하던 중 긴급히 출산으로 하게 되어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로, 조사 당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다른 사례들은 모두 제조업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동거(F1) 비자의 경우는 모두 가사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사례는 동일한 체류자격으로 2년간 일을 한 후,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이다. 또한 방문취업(H2) 비자 체류 자격인 경우는 귀화자와 결혼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현재 비자 체류지위 변경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한 반면 1990년대 후반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입국한 두 사례의 경우, 당시에는 입국하자마자 귀화가 필수였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 외국 국적자와 국적자의 결혼과 그에 따른 체류 지위의 인정이 시대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배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체류 지위의 변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등록자의 경우 국민과 결혼에 의해 국적 취득 혹은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지위가 바뀐 두 사례와 중국동포 중 부모의 국적회복으로 인해 국적 취득이 용이했다고 이야기하는 다섯 사례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전적으로 본인 요인에 따른 귀화가 그다지 녹록치 않다는 현실을 읽을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이주여성 39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그 특성을 달리 볼 수도 있다. 위 표 IV-1과 같이 현재의 체류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국적

취득자가 최다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면접참여자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모든 조사 참여자는 급여를 받는 일 혹은 지역 봉사 활동 참여 등 각종 사회 활동에 참여 중이다.

표 IV-3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따른 면접조사 참여 이주여성

주요 사회 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본국 경력	입국 목적	한국에서의 변화	출신국
자원활동 및 아르바이트 (17)	외국인지원 통역	종교활동	종교 활동	한국인과 결혼	미얀마
	외국인지원 통역	공무원	유학	한국인과 결혼	중국(한족)
	외국인지원 통역	초등교사	결혼 후 입국	입국 후 국적 취득	몽골
	통역자원활동	종교관련	종교활동	한국에서 결혼	필리핀
	통역 아르바이트	학생	단순체류→유학	본국인과 결혼/출산	몽골
	식당 아르바이트	생산직	결혼이민	이혼/재혼, 출산	베트남
	통역 아르바이트	학생	유학	대학원 졸업	몽골
	지역자원봉사	판매업	사업	결혼, 초혼자녀 동거	중국(동포)
	결혼이주자 자조모임	-	결혼이민	-	태국
	가사도우미(지역봉사)	-	영주(동포)	귀화자와 결혼	중국(동포)
	지역봉사	-	영주(동포)	남편 사망	중국(동포)
	지역봉사	교사	딸의 결혼(동거)	본인 결혼	중국(동포)
	지역봉사(기초생활수급)	-	영주(동포)	한국인과 결혼/암진단	중국(동포)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	-	단순체류	미등록 체류, 자녀출산	필리핀
	생산직아르바이트	사무직	영주(동포)	결혼/출산, 이혼소송	중국(동포)
	생산직아르바이트	단순노무	취업	결혼/출산, 이혼소송	태국
	식당 등 부정기	주부	난민	난민인정/자녀출산	아프리카
제조업 (6)	알루미늄 공장	병원근무	취업	-	필리핀
	금속가공 공장	생산직	취업	-	필리핀
	사출공장	-	취업	미등록/급여하락	필리핀
	의류(오바사)	미싱사	취업	결혼/출산/미등록	베트남
	의류(미싱사)	-	취업	결혼/출산/미등록	베트남
	의류(미싱사)	-	취업	결혼/출산/미등록	몽골
서비스 및 단순노무 (7)	가사노동자	초등교사	취업	미등록	필리핀
	가사노동자	-	취업	남편과 동거	필리핀
	가사노동자	-	취업	2년 취업 후 재입국	필리핀
	급식식당 조리	사무직	결혼 후 입국	출산, 취업	중국(동포)
	아파트청소	농업	영주(동포)	-	중국(동포)
	요양보호사	농업	영주(동포)	암 발병/수술	중국(동포)
	건설현장	-	영주(동포)	가족전원이주/남편장애	중국(동포)

주요 사회 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본국 경력	입국 목적	한국에서의 변화	출신국
사무직 (9)	각종 사무(계약직)	학생	유학	취업 후 부당 사유 퇴사	몽골
	여행사 직원	학생	유학	졸업 후 취업	러시아
	외국계회사 번역	학생	유학	외국인과 결혼/국적신청	우즈베크
	외국어 강사	강사	취업	출산/귀국대기(미등록)	태국
	자조단체 사무국	사무직	직장	결혼, 출산, 국적취득	스리랑카
	자조단체 사무국	-	결혼	출산	베트남
	요양보호사교육	농업	영주(동포)	국적취득/적추질환	중국(동포)
	전문통역	사무직	영주(동포)	가족전원이주, 국적취득	중국(동포)
	외국인 산재지원	사무직	영주(동포)	가족전원이주, 국적취득	중국(동포)

급여를 받는 정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무직, 제조업, 서비스 및 단순 노무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한편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이나 일터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이나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례자는 없다. 특히 중국동포 출신 거주자들의 경우 국적 취득자도 다수이며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밀집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거주 지역 내 방법이나 청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한국에 온 사례자들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상담 통역 자원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구직 중인 동시에 무급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여성도 눈에 띈다. 이주민 중 특히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결혼이민자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본국 출신 노동자의 상담 지원에 나서는 등 이주여성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혹은 같은 이주민 집단을 위해 활동하는 사례는 일반적이다.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장애아인 자녀 둘을 양육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부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다. 사무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례의 다수는 애초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였거나, 본국에서의 일이 사무직이었던 경우이다. 다만 본국에서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했을지라도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사례 여성들은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도 면접조사 참여자들에게서 발견된다.

2) 면접조사 참여자 개인별 특성

비자 체류 자격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구직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어, 체류 자격은 그저 법적으로 부여 한 자격일 뿐 실제 이주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적 취득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한국에서 거주한 기한이 긴 것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래 표를 통해 제시한다.

표 IV-4 면접조사 참여 이주여성의 개인 특성

사례	연령	주업	기타활동	동거 가족 현황	체류기간	체류자격
1	48	주부	외국인 지원 통역	남편, 시모	17년	국적취득
2	52	주부	외국인 지원 통역	남편, 아이1	13년	국적취득
3	46	다문화강사	외국인 지원 통역	남편, 아이2	17년	국적취득
4	40	급식식당 주방일	외국인 지원 통역	남편, 아이2	18년	국적취득
5	24	알루미늄공장 노동자	-	미혼	2년	비전문취업
6	34	기계가공 노동자	-	남편/아이(본국)	8년	비전문취업
7	42	사출 노동자	-	남편, 아이(본국)	12년	미등록
8	35	가사노동자	-	남편	4년	방문동거
9	39	가사노동자	-	아이 3(본국)	9년	미등록
10	36	주부	통역자원활동	남편	10년	결혼이민
11	26	사무직 노동자	-	미혼	3년	특정취업
12	53	미싱사	-	남편, 아이2	8년	미등록
13	37	미싱사	-	남편, 아이2	17년	미등록
14	32	오바사	-	남편동거, 아이(본국)	13년	미등록
15	36	구직 중	통역 아르바이트	미혼	10년	구직
16	55	식당종업원		남편	20년	방문취업
17	44	전문통역	각종 협회 활동	남편	4년	국적취득
18	60	외국인 산재 지원 단체 운영	-	남편 및 성인자녀	13년	국적취득
19	54	주부	식당 아르바이트	남편	10년	결혼이민
20	64	아파트 청소	-	남편	17년	동포
21	51	주부	지역 자원봉사	남편, 아이1	10년	결혼이민
22	69	무직	지역 자원봉사	사별	17년	국적취득
23	59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자원봉사	남편	10년	국적취득
24	64	요양보호사	지역 자원봉사	남편	12년	국적취득
25	59	요양보호사교육센터 운영	-	남편	14년	국적취득

사례	연령	주업	기타활동	동거 가족 현황	체류기간	체류자격
26	55	건설현장	-	남편	10년	국적취득
27	43	주부	가사도우미	남편, 아이2	9년	미등록
28	36	가사노동자	-	아이1(본국)	4년	방문동거
29	41	주부	통번역 아르바이트	남편, 아이2	11년	거주
30	30	주부	생산직 아르바이트	이혼소송 중/아이 1	1년 6월	동포
31	47	주부	생산직 아르바이트	이혼소송 중/아이 1	18년	결혼이민
32	32	영어강사	출국 대기중	남편(본국), 아이1	6개월 이내	미등록
33	29	주부	자조단체 활동	남편	1년 8월	결혼이민
34	38	식당 종업원	주부	남편, 아이1	15년	국적취득
35	38	주부	각종 아르바이트	남편, 아이4	13년(5년)	거주(난민)
36	36	자조단체 사무국	주부	남편, 아이2	12년	국적취득
37	42	자조단체 사무국	외국인관련 각종 활동	남편, 아이2	18년	국적취득
38	30	여행사 직원	-	미혼	7년	동포
39	35	외국인회사 사무직	-	남편, 아이1, 임신중	15년	영주

면접참여 이주여성 39명 중 20대가 3명, 30대가 14명, 40대가 10명, 50대가 8명, 60대가 4명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거주기간은 가장 짧은 경우 6개월에서, 가장 긴 경우 20년으로 매우 다양한데, 국적취득자 중에 거주기간이 4년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미등록자 중에도 거주기간이 17년인 경우도 있어, 체류 기간이 곧 국적 취득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례6과 같은 경우는 2007년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이래 2013년 출국 후 2015년 재입국한 경우로 총 거주 기간은 8년이나 그 체류 기간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다.

면접참여자들의 현황은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출신국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서 면접 참여자의 동질성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보편성과 차별적 지위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체류 지위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보편성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갖는 대표적인 체류 자격이 결혼이민자, 동포, 그리고 노동자라는 점은 이미 외국인주민통계에서도 제시된 바이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 동포, 이주노동자라는 체류 지위는 무엇 때문에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법적 체류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열쇠 말은 되지만, 삶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는 없다.

1)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과 경제력

스스로의 삶을 자신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정 연령이상의 개인에게 노동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노동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하고 그 경제력으로 스스로를 부양해 가는 것은 가족 단위 거주가 제한적인 이주여성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삶의 현실이다. 즉 일은 이주노동자에게 체류 자격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주여성 전반에 삶의 조건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삶을 위한 노동

생활비 충당방법	사례	현재 체류자격	직업 정체성	최초입국 지위	최초의 일	근무여건	기타
알루미늄공장	5	E9	공장노동자	E9	사출공장	하루 10시간 근무	-
기계가공 공장	6	E9	공장노동자	F4	학생	하루 10시간 근무	-
제조업 공장	10	F6	통역봉사자	D6	선교봉사	야간 아르바이트	-
통역아르바이트	15	D10	구직 중	D4	학생	일이 있을 때 호출	-
통역아르바이트	29	F2	주부	D4	여관청소	일이 있을 때 호출	-
남편의 노동	35	F2	아르바이트	-	주부	지속적인 구직	난민인정

면접조사에서 만난 모든 여성들은 하나같이 일을 원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만을 위하여 이주를 감행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 듯 이주여성은 스스로의 삶을 꾸러가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할 때 더 나을 거 같아요. 일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필리핀은 조금 불편해서..사실 부족해요. 사실 밤에도 공장에서 야간하고 있어요. 옷 만드는데 시다 같은 거 해요. <사례 10>

사례 10의 여성은 선교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주로 자원봉사를 하며 생활해 왔고, 현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상태이다. 대부분 일상의 시간을 봉사에 쏟고 있지만, 부족한 생활비 문제에 부딪쳐 밤 시간을 빌어 공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여성에게 생활은 “봉사” 이지만, 생활비 문제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비해 일자리가 많은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 일 너무 좋아요. 필리핀 나이 많으면 일 못해요. <사례 6>

공부한 거랑 다르지만, 괜찮아요. 월급이 더 높아서 <사례 5>

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경우 일 자체에 이주의 목적이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본국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일에 대해서 조건을 따져 만족, 불만족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 그러나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본국과의 단순 비교에 따른 현실 인식은 적극적으로 삶의 문제를 직시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주여성의 생애 설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저희 불안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직장이 비자나 무비자 있는 사람들도 다닐 수 있는 직장...<사례29>

애초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합법적인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한 사례 29의 여성은 현재 비자 체류 자격이 F2이다.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된 비자이기 는 하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대한 바람은 크다. 더욱이 사례 여성은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된 경우이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큰애 낳기 전에 정직원으로 2년 동안 일하다가 큰 애 낳고나서, 계약직으로 가끔씩 알바생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회사도 아기 있는 사람은 정직원으로 받을 수 없대요.. 언제든 아기를 있으니까,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당 7만원씩... 7만원이면, 한 달에 140만원 정도. 주말에 가끔씩 출장 있거든요. 남편 쉬는 날이나... 외국인들 행사하는데 나가서, 우리 회사도 나가서 일하게 되면, 제가 나가면, 7만원 더 주고... 140만원에서 90만원은 애기 어린이집 주고, 저 버스타고 밥 먹고.. 딱 그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애들과.. <사례 29>

명백한 차별일 수 있는 상황을 차별로 인지하기 보다는 아이가 있는 여성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이가 있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경제력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나,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에서 밀려나는 것이 사례 여성이 처한 현실이다. 더욱이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은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인 동시에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없는 한계로도 작용한다.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경영학이니까 일 경험이 있으면 돌아가도 그 경력을 살리는 게 좋을 텐데, 한 1년만 경력을 쌓고 싶은데...<사례 15>

당장 먹고 살 방편으로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귀국 후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일에 대한 욕구를 불러 넣고 있다. 특히 사례 여성은 학교 졸업 후 구직 비자로 체류 중이어서 취업이 시급한 상태이나 졸업 이후 구직활동은 오롯이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주여성들에게 일의 의미가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은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좋은 일자리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수입이 주어지는 일 그 자체에 대한 갈구라는 점이 명확해 진다.

아이가 넷이니까....남편만 벌면 어려워요. 저도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다들 하는 말이 꼭 그렇게 입고 일해야 하냐고, 그러면 일을 줄 수 없다고... <사례 35>

난민인정을 받은 사례 35의 여성은 아이가 넷이고, 그에 따른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슬람 신자로서의 복장이 일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종교가 인간에게 일종의 신념체계로 작용함에도 일을 하려면 종교의 규율을 깨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주여성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노동을 위해 이주하였다고 해서 노동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 듯, 애초 체류 목적이 달랐다고 해도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자원을 얻기 힘든 것이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서울에서의 삶이다.

■ 노동을 위한 이주가 아닌 이주여성의 노동

현재 하는일	사례	현재 체류자격	입국	근무여건	비고	
미싱사	12	-	2009	하루 10시간(9시-8시)근무	1회 이직	가족동거
미싱사	13	-	2000	하루 10시간(9시-8시)근무	잔업수당 없음	가족동거
오바사	14	-	2004	하루 10시간(9시-8시)근무	5회 이직	남편동거
요양보호사	24	국적취득	2005	파트타임	대상자와의 불화	남편동거

살아가면서 미래를 기획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삶은 현재를 통해 지속된다. 이주여성들에게도 삶은 현재를 통해 미래로 이어지고 그 삶의 공간이 지금 한국 그리고 서울인 것이다. 과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가 과거를 부정한 상태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가 현재를 오롯이 지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어느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서 호명되지만, 개인이 노동을 위해서 살아간다고보다 삶의 여러 장면 중 노동이 개입되고, 절대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나 정체성이 그로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 흔히 간과되고 있다.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서울에서 보증

금은 500, 집세는 50인데 그걸 내려면 일해야 돼요. <사례 12>

현재 서울에서의 삶에 드는 돈을 충당한다는 것이 사례 12의 여성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여성에게 일은 애초 한국에 온 목적이 일이었다거나 본국으로 귀국해서 좀 더 나은 삶을 꾸려보겠다는 기획에 앞서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사례여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 유사한 이야기는 사례 13여성에게서도 발견된다.

아이들 유치원비만 90만원...야근 수당을 안 주는데 내가 불법이라서 그런지 어쩔지 따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족이 같이 있는 집인데, 우리만 수도요금 많이 내라고, 그런 돈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사례 13>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거주민이 되었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복지 체계에서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경우는 애초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췌이다. 같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에게도 밝아야 하는 삶의 단계가 있지만, 부담은 현재 개인의 노동에 의한 대가로 지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직장은 다섯 번 옮겼고, 그 때마다 월급은 조금씩 올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에서 미싱사로 일해서 기술도 있고... <사례 14>

사례 14의 여성은 미숙련 노동자가 아니다. 이미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 왔고,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을 쌓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은 미등록에 가려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그때마다 직장을 옮기면서 나름대로는 본인의 기술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애써 왔다. 대부분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자리가 개인의 경제력 확보와 나아가 정체성의 실현이라면 법적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이주여성에게도 일은 같은 의미로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는 할 수 있는 일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평가 받는 부당함이 발생하고 있다.

아줌마들 같은 사람들, 여름에는 방 구석구석에 똥 싸는 거 그거 치우다가 죽느라고, 처음에 나는 비위가 약해서 막 오바이트하고 했었어요. 그거 내가 그러고 살아야하니까 그러지 야 중국 아줌마들이니까 하지 한국여자들은 이틀을 나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례 24>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보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이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일이자 노동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간과된 채 “일하는 이주여성=이주노동자여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지점이다. 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고용조사에서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가 아닌 체류 외국인 전반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미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서는 이주민의 노동과 고용이라는 접근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주여성들이 임금노동을 하는 현장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하는 이주여성”으로 이들의 노동과 삶이 가치 부여를 받는 것이 아닌 “일하지 말아야 할 여성”의 불법적인 노동으로 치부되어 여성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2) 드러나지 않는 삶, 왜곡되는 현실

이주여성들의 삶 자체가 체류 자격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도 실제 삶 자체가 체류 자격대로 살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획일적인 체류자격이 이주여성의 삶을 왜곡해서 집계함으로써 현실의 삶이 가려지는 경우는 이주여성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내용이다.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를 넘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의 이슈가 결여된 것이 현재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정책이 갖는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다. 더불어 실제의 삶과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이주여성의 삶이 오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 삶을 설명해 주지 않는 체류 자격

사례	체류 자격	동반 입국자	입국사유	한국에서 일 경험	본국에서의 일
19	H2	딸	한국인과 결혼하는 딸과의 동거	제조업 공장, 식당 조리	교사
22	H2	남편	작은아버지 초청, 영주목적	식당 주방 업무 등	
29	D2	단신	국내 장기거주 및 취업	여관청소, 대학원 진학(학업)	
39-1 ⁶¹⁾	F4	딸	손자녀 돌봄	-	엔지니어

사례 19의 여성은 유일한 가족인 딸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경우로 딸이 한국으로 올 때 함께 입국하였다. 그리고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딸 가족의 일상생활을 챙겨주며 한국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여성의 체류 지위는 동반 거주자가 아닌 방문취업(H2)비자였다. 현재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선주민과의 결혼이 아닌 귀화자와의 결혼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2007도에 딸이 시집와서, h2로 왔어요. 지금은 결혼비자로 바꿨어요. 우리 단체에서 만났어요. <사례 19>

서울에서 살면서 급여를 받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체류 목적은 어디까지나 딸과의 동거였고, 일은 부수적인 개념이었으나 사례 19 여성의 실제 거주 목적과 법적 지위는 오히려 역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사례 29 여성의 경우는 애초 비자 발급 등을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단기 체류 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경우이다. 스스로 “불법” 혹은 미등록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원 입학 선택하였다. 그리고 체류를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 1년 동안 학비 벌려고 모텔 청소 했어요. 다행히 **시에 모르는 몽골 언니한테 간 거예요. 그 언니가 일을 잘하고, 처음부터 일을 잘 가르쳐 주고, 지금도 친언니처럼 지내요. 안부도 묻고 금전거래도 하고 몽골 음식도 나누고... 그 언니 덕분에

61) 인용되는 사례는 면접조사 사례 39 여성이 전하는 그 어머니의 한국체류 이야기이다.

90만원 월급. 거기에서 지내고 모텔 청소 일은 일주일에 두 번 쉬어요. 안 될 때도 있고.. 안 쉬면 일당을 받는 거고.. 3만원. <사례 29>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해도 여성은 유학생으로 집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살지 못하도록 살 수 없도록 막자는 데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목적하는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례 39 여성의 어머니 이야기도 위 사례 19와 유사하다.

엄마가 오셨어요. 결국...회사가 너무 멀어서 출근시간 맞추려면 어린이집 너무 일찍 데려다 줘야 하고, 저녁에도 너무 늦으니까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재외동포니까 엄마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례39>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조부모의 양육 부담은 이주여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딸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라고 해도 딸의 체류 지위에 동반되는 체류가 아닌 개인인 동포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조차도 사례여성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양육이나 돌봄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의 옳고 그름 역시 따져볼 문제이지만 하나, 많은 경우 이주여성들은 허용되지 않는 가족 초청으로 인해 사례 39 여성과 같은 가족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적은 작은 아버지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따라서 귀화를 했어요. 남편은 못했어요. 귀화신청을 하러가니까 우리 결혼 등기증을 가져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가 한국 오면서 누가 신경 써요? 안 가져왔죠. 남은 서류해서 나이도 나랑 동갑인데 같이 신청을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어느 조건이나 다 부합되는데 등기증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귀화 허가가 나오면 그때 등기증을 가지고 다시 하면 된다 이러는데 귀화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례 22>

사례 22의 여성은 부모의 국적 회복으로 인해 용이하게 귀화가 되었으나, 함께

입국하여 생활하던 남편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걸려 동반귀화하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하였다. 실제 두 사람의 관계를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는 규정에 걸려 부부임에도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고, 남편의 죽음 이후 이것은 사례 여성에게 일종의 상처로 남아 있다.

■ 누구보다 합법적으로 사는 미등록자

사례	미등록 경험	현재 체류자격	최초입 국	노동경험	미등록 기간	가족상황
24	있음	F4	2000	식당, 가사노동자, 아파트청소	2년	가족동거
27	현재 미등록	-	2000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	9년	가족동거

미등록외국인의 다른 이름은 소위 “불법체류자”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한 체류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삶을 불법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법적 체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이다. 더욱이 미등록자일수록 누구보다 사회가 정한 규정을 지키며 살려 노력한다. 눈에 띄는 위법행위야 말로 체류의 종료를 의미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2000년에 딱 3개월 비자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똑바로 살았어요. 일도 다른 사람들은 늦기도 하고...빠먹기도 하는데...내가 그 식당에서 일을 제일로 잘했어요. 그때는 더....<사례 24>

체류 지위의 불안은 그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통해 자신의 일상이 일반인들 속에 묻히길 바라게 된다.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 곧 원치 않는 귀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 미등록 거주자가 “불법”을 행할 여지는 그만큼 축소되고 있으나, 일상을 사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불법체류자”라는 모순이 공존하고 있다.

경찰이 있으면 걸음도 더 똑바로 걸으려고 하고...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우리도 좋은 분들 도움 받으니까, 기부도 해요. <사례 27>

아이를 낳기 전에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고자 했던 사례 27 여성은 예기치 않았던 조기 출산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서 비자 체류 기간 만료를 맞이한다.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했던 시도와 일반적인 경우라면 축하받아야 할 출산은 여성에게는 미등록체류자라는 삶을 남겨주었고, 면접조사 당시 9년째 서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 지역에 공헌하는 이주여성

사례	체류 자격	입국 지위	한국에서의 일 경험	현재 지역 활동	본국에서의 일
1	국적취득	C3	사무직	이주민 지원 통역	-
3	국적취득	F6	다문화강사	적십자봉사단	교사
4	국적취득	F6	급식 식당 주방일	의용소방대	사무직
18	국적취득	H2	제조업 등	지역자율방범, 산재피해 지원	인쇄업
25	국적취득	H2	식당 주방노동, 요양보호사 교육	지역 자율 방범	농사
36	국적취득	F6	-	이주여성자조단체, 학부모모임	-
37	국적취득	E9	학업 및 의류 관련 사무직	이주여성자조단체, 시정자문	회사원

이주민 인구의 증가와 결혼이주,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이전에 논의되지 않던 사회구성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주민이 사회의 일방적인 수혜자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거주 경력이 쌓이면서 이주여성들이 활발하게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그 활동은 때로 자신보다 뒤늦게 한국사회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주민인 경우도 있고, 때로 선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하고 아플 때나 퇴직금을 받아야할 때나, 그 사장과 소통 안 될 때나 병원 갈 때 통역 필요 할 때나 그거 제가 도움 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아서 애기 태어날 때 제가 한국말 모르는 거 사람들도 도왔고, 그 때 아, 많이 힘들었겠다, 엄

마. 그리고 애기 입원할 때 병원에 상담하고, 통번역.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또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소통이 안 되면 연락 와서 제가 상담하고, 아니면 직접 가서 그대로 이거 아, 이렇게 외국에 살면서 소통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 생각도 있어요. <사례 1>

사례1의 여성은 단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정착해 스스로 미등록체류자 신분을 경험하였다. 서울에 인구 수가 많지 않은 미얀마 출신으로 자국 출신 노동자들의 각종 고충이 언어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자원봉사 통역으로 이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 급여를 받는 일이 시급함에도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주여성이지만 이주민을 돕는 활동 뿐 아니라 선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 아이는 연년생이고, 이제 작은 애가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사회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사회 나가서 다문화센터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의뢰가 들어오면 다문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기회라서 너무 그 일 해야 되면 직장 이제 근무하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가끔씩 할 수 있는 게 파트 타임이라 아는 동생이 소개해줘서 여기 와서 봉사하게 됐어요. <사례 3>

IV

육아기를 지나 사회활동 욕구가 생겼고, 일부 아르바이트를 겸한 일도 하지만, 봉사활동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주여성으로서 같은 이주민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성을 띠지만, 선주민과 함께 하는 적십자 봉사단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우리도 지금 봉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의용 소방대원이라고 **에 있어요. **의용 소방대원을. 봉사도 얼마 전에 대만 분이 그 소방서 대만에 무슨 부총장님이 오셨는지 가서 통역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중 언어 아니까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봉사냐고 아니면 돈을 받냐, 그래서 우리 봉사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은 일 한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례 4>

지역 봉사와 본인의 이주배경을 결합한 활동으로 스스로의 보람뿐 아니라 지역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주여성 스스로 급여를 받는 일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의 다양한 사례발굴은 결국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 쓰레기부터 시작하자, 경찰관들이랑 같이, 7월 8월 얼마나 더워요 한 바퀴 돌아요. 담배꽂초 줍고 쓰레기 줍고 매주매주, 전봇대의 전단지도 떼고, 그런거 그렇게 하면서 그 때부터 많이 회복이 됐어요. 좀 하다가 벌써 여기서부터 쓰레기 줍고 20-30명 가게 되면 어떤 가게에서는 이 더운데 다 젖는 거예요. 땀에, 커피타서 마시세요. 물도 한 잔하세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감동이 되니까 아,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한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사례 18>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중국동포 밀집지역이 형성되면서 범죄문제, 쓰레기처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당 지역 거주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서울시 차원의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중국동포 자조단체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례이다.

내가 항상 관공서나 관공서 회의할 때 우리 단체장들이 회의할 때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거지 일부러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국자들에게는 이런 평소에 일반 생활 이런걸 교육을 시켜야한다. <사례 25>

직접 활동에 나설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주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정책 당국에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단위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오해 없이 살아갈 방안을 이주민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례는 자조집단을 결성한 여성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먼저 와서 내가 경험했으니까 후배들에게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알려 주는 거죠. <사례 36>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여기서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거예요. <사례 37>

우리사회에서 이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매몰된 한편으로는 이들을 대상화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편견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런 편견과 맞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어디에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적이다.

■ 국적 취득의 이중성: 받고 싶은 국적/ 돌이키고 싶은, 강요받은 선택

사례	체류 자격	동반 입국자	국적취득 및 비자 제류지위	한국에서 경험	가족특성
2	국적취득	-	결혼 즉시 취득	학업, 봉사활동	자녀1
3	국적취득	남편	입국 즉시 취득	식당 주방 업무 등	자녀2
4	국적취득	남편	아이 학교 입학으로 취득	다문화강사	자녀2
27	미등록	-	-	가사도우미	장애자녀
29	F2	-	C3→D2→E7	모텔 청소, 은행 통역	장애자녀

결혼이민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가장 용이한 체류지위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귀화자의 다수는 동포귀화자와 혼인귀화자가 채우고 있다. 일부 단순히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혼인으로 오인 받는 경우(사례21)는 이 연구 과정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모든 이주여성이 한국국적 취득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저는 귀화가 그거 선택권이 저때는 없었고, 그냥 자기 나라 거 포기하고 무조건 바꿨어요. 저때는. 그래가지고 바뀐 것 같아요. 저때는 그랬어요. 99년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귀화했어요. 무조건 포기해야 되요. 자기 나라 거. 그러고 나서 여기 국적 가졌어요. 살다 보니까 웬지 포기 안하고 그쪽 국적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3>

중국동포 출신으로 현재 중국에 부모가 생존해 있는 사례 여성은 너무 서둘러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적을 바꾼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품고 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자격으로 살아도 한국사회에서 큰 불편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본인의 정체성이 맞닿아 있는 국적으로 원래의 국적을 생각하는 데에는 본국에 아직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저는 다시 기회가 되면 국적을 바꿀 것 같아요. 한국국적을 받느라고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이런 거 포기한 것도 많고...여기 사는 게 아직도 불안해요. 거기는 중국은 편해요. 계속 마음 한 쪽 구석에는 아직도 내 고향 내 조국이 아니다.
<사례2>

사례 2의 여성은 중국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쌓였던 연금수급자격을 한국국적 취득과 함께 상실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중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은 단지 연금 수급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본인의 정체성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 한국국적이 아닌 원래 국적 회복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기회가 된다고 해도 원래의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례도 있다.

이름이 어렵고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에 어디가든. 병원가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냥 애 학교들어가기 전에 엄마이름 다르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귀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5년 후에. 그리고 그 때 그 2년인가 2년마다 거기 가서 또 이제 연장도 해야 하니까. 서운하긴 하지만 다시 바꾸라고 하면 애들 문제도 있고 안 바꾸고 싶어요. <사례 4>

한국어와 발음 등이 다르고 성명체계가 다른 몽골 출신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는 자녀들의 학교 입학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엄마의 이름이 언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도 역시 아이들을 생각해서 바꾸고 싶지 않다

는 것이 여성의 바람이다. 한국국적을 간절히 원하는 두 사례 여성의 경우 또한 그 이유는 아이들에 있다.

국적신청은 6천만원 모아야 되는데, 월세 천만원 있다고 해도 5천은 모아야 하는데.. 큰 애도 태권도 가고 싶다고, 친구들 다 가고 있다고...처음에는 이 비자로 있다가 갈 생각이었다가 국적을 왜 받으려고 하나면, 애를 위해서.. 병원이나 어디 다니면, 장애 등급 없다고 하고, 구청이나 가서 혜택 받으려고 바우처 만들려고 하면 장애 등급 없다고 하고, 통합 어린이집 가면 장애등급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2014년 10월에 국적 신청해야겠다고 아기 장애 진단서를 받았는데 <사례 29>

필리핀으로 가면 지금 아이들 받고 있는 정도의 치료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만 있다면 한국 국적 받고 싶고, 그냥 이대로라도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사례 27>

사례 27, 29 여성의 아이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치료를 한국에서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가진 사례 29 여성은 사회복지 기관 등의 도움으로 아이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등록체류자인 사례 27 여성의 아이들은 이주민 건강권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 체류 자격은 곧 아이의 회복과 치료의 지속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 29 여성은 한 번의 귀화 신청이 좌절되었고, 사례 27 여성의 경우는 미등록체류자로, 치료 목적의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거부되면 바로 출국조치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현재의 상황을 불안하게 유지해 가는 것이다.

3. 체류 지위에 묶인 삶

앞서 면접참여자의 특성에 드러나 듯 체류지위가 같다고 해도 현재 삶에서 동질성 보다는 이질적인 측면이 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체류 자격이 다르다고 해도 하는 일에 따라서는 유사한 삶의 현실과 고충이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에게 부여하는 이름이 체류 자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실제 이주 여성의 삶이 법적 체류 자격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은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 같은 일 다른 대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욕구는 노동에 기대여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당연한 바람이다. 그러나 선주민에게도 이는 바람일 뿐 성별에 의해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종사상 지위로 인해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이주여성에게는 체류 지위의 문제까지 얹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 같은 일, 다른 체류 자격: 3인의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

현재 하는 일	사례	현재 체류자격	최초입국 시기	최초입국 지위	최초의 일	현재급여	한국 거주가족
가사노동자	8	-	2008	C3	핸드폰 공장 노동자	월 180	-
	9	F1	2013	F1	가사노동자	월 100	이모가족
	28	F1	2013	F1	가사노동자	월 130	남편

면접조사에 응해 준 3명의 가사노동자는 모두 필리핀 출신이다. 그 중 둘은 법적 체류지위가 같고 한 명은 미등록 상태이다. 모두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나 급여는 꽤 차이가 있으며 한국 내 친족 지지기반도 상이하다. 특이할만한 점은 소위 “불법 체류” 중인 경우가 급여가 가장 높으며, 가사노동자 에이전시를 통해 입국한 사례 9의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급여가 제일 적은 편이고, 개인적 친분에 의해 고용된 사례 28이 뒤를 잇고 있다.

처음에 2013년 11월에 에이전시로 왔고 그때는 90만원, 2년 끝나고 귀국했고, 다시 계약해서 왔고 지금은 100만원 <사례 9>

사례 9의 여성은 동일한 일을 하는 데도 2년의 경력이 의미 있는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합법적 번거로움을 거쳐야 했다. 반면 똑

같이 2013년에 동일한 비자로 입국해 같은 일을 해 온 사례 28의 여성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도 사례9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제도는 사실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 개인에게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도 없고,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이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서게 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다.

집주인이 다른 집주인 옮겨서 추천하는 거는 계속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초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 소개로, 130만원 받아요. < 사례 28>

현재의 제도상 F1 비자를 통해 가사노동자로 한국에 오는 경우 계약 기간이 2년이다. 사례28의 여성은 처음 일하게 된 곳에서 사례여성의 사정을 명확히 인지한 고용주가 계약 기간 만료 즈음에서 다른 일자리로 적극적으로 알아봐준 경우이다. 출국과 재입국의 번거로움 없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제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례9에 비해 급여도 올랐다. 반면 사례9의 여성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출국과 재입국 과정을 거쳤고 수수료 문제로 급여도 낮다. 보다 극적인 것은 사례 8의 여성으로 미등록자인 이 여성은 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다른 사례에 비해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가 가장 높다.

처음 3달만 핸드폰 케이스 공장 일하고 계속 같은 집에서 일해요. 한국 agency통해서 아이들이 15살, 12살인데 유치원 때부터....지금은 180만원 받아요. <사례 8>

한 개인이 같은 노동을 하고 있고, 일의 경력이 쌓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가 체류 지위의 탓에 걸려 악화된 경우도 있다. 즉 합법적 체류 지위에서 받던 기본적인 처우가 미등록체류자 신분에서는 일의 경력이 쌓였음에도 더욱 하락한 경우이다. 이주여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간다면 그만큼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미등록체류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노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회에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공정한 배분은 체류 지위의 문제와는 별도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등록과 미등록, 한국인과 외국인

현재 하는일	사례	현재 체류자격	최초입 국 시기	최초입국 지위	최초의 일	근무여건	이직
사출공장	7	-	2005	E9	사출공장	야간전담	-
여행사 직원	30	F4	2000	F4	학생	4대 보험 미적용	3회
사무 계약직	11	E7	2014	D2	학생	불안정 계약직	1회

사례 7의 여성은 2005년 처음 한국에 와서 현재까지 사출 관련 제조업 공장에 다니고 있다. 2012년 법적 체류자격이 만료되기 전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곳과 동일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법적 체류자격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성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일의 경험이 쌓여간다는 면에서 여성은 이전보다 훨씬 숙련된 기술자일 가능성이 높다.

월급이 더 낮아졌어요. 토요일에는 야간 말고 계속일해요. 비자 있을 때는 토요일 12시까지만 일했는데 비자 없으니까 토요일도 하루종일일해요. 비자 있을 때 150, 지금은 109, 옛날에는 야간주간 교대를 했는데. 지금은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계속 <사례 7>

그러나 합법적 체류 지위에 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 한 후, 이를 계기로 급여가 150만원에서 109만원으로 떨어졌고, 근무도 야간 교대 근무가 야간 전담으로 일하게 되었다. 체류 자격의 상실이 삶의 질에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문제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근무 조건이 건강에 심대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는 점이다. 여성 스스로도 몸에 무리가 있음을 느끼고 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쳐 병원 이용 등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보험 없어요, 너무 비싸 <사례 7>

사례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는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미등록체류자가 현재 서울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녀의 교육권 정도가 유일하다.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치료나 진료는 오롯이 개인이 비용의 전부를 지불하면서도 병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분 노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권이 생활을 위한 권리라면, 건강권은 그에 앞서는 생명권이지만, 현재의 제도에서 미등록 체류자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미등록 체류자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습기간이라 계약서는 안 썼어요. 사실 이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 어... 4대 보험도 안 되고~얼마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보험이 안 돼서 저보다 의사선생님이 더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른 한국 직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처음부터 그냥 계약서 쓰는 것 같은데... <사례 30>

사례 30의 여성은 유학생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한 동포체류자격자로 직장 선택 등에서 비교적 선택의 여지가 많은 편이나, 막상 직장 생활 중에는 외국 국적자로서 한국인과 다른 처우로 대우받고 있다는 데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주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을 한 개인의 특성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은 사례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데에는 때로 체류지위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주민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도 한다. 제도에 따른 지원이 아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다른 처우가 발생하며, 이주여성이 만나는 선주민마다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일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일을 하면서 받아야 하는 대우가 기준이나 제도와 무관하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며, 오히려 제도가 개인의 노동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모순인 것이다.

전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조용히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고 해서 정규직이었는데도 사표를 냈는데, 알고 보니 실업 급여 받을 수 없게 신고 했어요. 나는 비자 때문에 항의도 못하고, 그런 일 있었을 때 회사에서 내 편 들어 주는 사람도 없었고...<사례 11>

사례 11은 E7 비자로써 취업이 불가능한 곳에 취업을 했다가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겪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본인의 체류자격에 위촉되어 상호합의 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만큼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약속하였으나, 현실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처리였다. 체류 자격 문제를 들어 회사에서는 사례 7 여성의 항의에 무시로 일관하였으며, 면접 당시에는 자포자기 상태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다.

2) 서울에 사는 다른 아이들, 다른 가족들

저출산이 화두가 되고, 중앙정부보다도 한발 앞선 공보육 체계를 진척시키고 있는 서울시이지만, 그러한 정책과는 무관하게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다. 서울시에 살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를 공적으로 부인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며 의미부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눈치를 봐야만 하는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2017년 서울이다.

■ 성장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

사례	현재 하는 일	현재 체류자격	최초입국 시기	최초입국 지위	최초의 일	자녀	한국거주 가족	출신국
39	외국계기업 사무직	F5	2003	D2→F4	유학생	미취학 1, 임신중	결혼, 친정어머니	우즈베크
14	오바사	-	2005	C3	미싱사	초등 2년 1 (본국거주)	가족동거	베트남
13	미싱사	-	2000	C3	미싱사	취학 2	가족동거	베트남

사례 39, 14, 29의 여성은 모두 한국에서 출산하였다. 그리고 현재 체류자격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국적이 없으며, 결혼이민자가 아닌 관계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전액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사례 7 여성의 가장 큰 불만은 비용을 전액 다 지불함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찾는 데 어려움이 심했다는 점에 있다.

어린이집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만 알아 봤어요. 하나는 공립 자리가 안 나서.. 그리고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걸어서 1분, 2분. 우리는 선생님이 좋으신지 그것 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지만 봤어요. 그 때는. 따로 건물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정보는) 맘스 카페에서 말하는 좋은 데는 거의 다 멀리 버스타고 가야하는 거리였어요. 삼성어린이집인가. 근데 줄이(대기자) 600명이었어요. 600명이면 우리는 다 외국인이고, 마지막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인데, 맞벌이 부부, 아니면 다문화, 아니면 한 명 장애인 그런 경우면 빨리 올라가요. 우리는 그런 것 없으니까, 2,3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600명이면. 돈을 다 내는 데도 어쩔 수 없어요. <사례 39>

사례 39 여성이 아이 돌봄 문제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서 언급되었다. 그나마 동포 체류 자격으로 어머니가 비교적 쉽게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점이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전무하다. 더욱이 현재 국적 신청 중으로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그 때는 이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더욱 어려운 상황은 사례14의 여성으로, 현재 체류자격이 없으며, 남편도 같은 상황이다. 2006년 이미 미등록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불안정한 체류 지위로 인해 출생 8개월 만에 아이를 본국으로 보낸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처음에 혼자였는데,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남편도 미등록... 애기 8개월 때 일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집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할 수 없이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이 애기 데리고 갔고, 지금까지 못 만나요. 영상통화만....<사례 14>

본인의 불안정한 삶으로 인해 아이를 서울에서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4의 여성은 아이와의 영상통화에 만족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족이산의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경우 그리고 미등록 체류 자격인 많은 여성들이 사례 14의 여성과 같은 가족 이산을 경험하고 있다. 사례 13의 여성은 위 사례 14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본인 모두 미등록인 상태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교육을 위해 지원 단체의 도움 없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센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첫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고, 둘째도 입학했고, 중학교 갈 때도 센터에서 알아봐주고, 선생님 만나고..센터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사례 13>

외국인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기는 하였으나, 학교와 사이에서 지원 단체의 도움이 없을 때 곤란을 겪고 있다. 지원단체에서 국제규약을 들어 입학을 시켜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의무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체류자격으로 인한 불안을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발언을 인용하지는 않으나, 사례 9 여성은 아이가 발달장애를 안고 있다. 역시 어린이집에 보내는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출생 시부터 안고 있는 장애로 인해 치료비 마련에도 애를 먹었다. 어린이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 받고는 있으나, 외국인신분이라는 점과 아이의 장애로 어린이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 아이의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기대

사례	체류 자격	동반 입국자	국적취득 및 비자 제류지위	한국에서 경험	가족특성
2	국적취득	-	결혼 즉시 취득	학업, 봉사활동	자녀1
3	국적취득	남편	입국 즉시 취득	식당 주방 업무 등	자녀2
4	국적취득	남편	아이 학교 입학으로 취득	다문화강사	자녀2

사례 여성들은 모두 결혼이민여성으로 국적 취득자이다. 이주를 배경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이용에서 느끼는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선주민이 갖는 인식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하면 잘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자기 집 주변에 중학교까지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그 혁신학교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보내기 싫다 했더니 그 이쪽에서 하는 분이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뭐 있나 했더니 다른 방법이 뭐 주소 옮겨서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집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있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중학교 가려니까 그게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사례 2>

사례 2의 여성은 아이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보다 교육환경이 좋다고 판단되는 학교로의 진학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느냐의 여부, 어린이 집을 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국적이 없는, 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여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인 것이다. 친밀감을 느끼는 이들과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그 과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등의 생애사적 사건들로부터 이주여성이라고 해서 제외될 수는 없다.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는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이 처한 현실로 인해 본인이 위치한 사회의 일반적인 방식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다.

영어 학원하고 수학학원이 전문적으로 가야 하니까 이제 비싸. 근데 너무 비싼 학원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좀 잘 돼있는 학원으로. 둘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우리는 자사고라서 등록비가 조금. <사례 4>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고민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지출을 마다지 않는 것은 국적취득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선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차이라고 한다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개방적인 교육을 선호하는가, 보수적인 경쟁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는가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저도 혁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지금 중학교 올라갔거든요. 나
빠진 않은 것 같아요. <사례 3>

국적취득자, 결혼이주자, 영주권자가 아닌 이주여성이라고 해도 가족 단위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 안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가족의 존재는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때로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 가족 이산과 시간이 흘러도 늘지 않는 한국어

사례	거주 형태	본국 가족	결혼유무	비자	하는 일	한국어 사용능력	거주력
9	단신	아이 3	이혼	E9	사출공장	단어나열식 회화	9년
28	단신	아이 1	이혼	F2	가사노동자	불가	4년
6	단신	아이1, 남편	결혼	E9	기계가공	단순한 단어 듣기	8년
14	남편동거	아이 1	결혼	미등록	오바사	불가	13년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이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방법은 가족원이 각자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함께 살거나, 각자 살던 이들이 결혼 등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9 여성은 합법적 체류 지위가 있지만 본인의 힘으로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이도 한번 와서 같이 여행도 하고 다녔으면 싶은데 우리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요...<사례 9>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 인터뷰 도중 아이 이야기를 하며 한동안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더해 사례 28 여성의 이모인 미등록 체류자 사례 27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장례식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음에 눈물을 흘렸다. 출산을 앞두고 남편을 만나기 위해 이루어진 한국행은 체류 자격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긴급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미등록 체류자라는

굴레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다. 가족 상봉을 위한 한국행은 역으로 또 다른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아이러니를 초래한 것이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그 집에 같이 사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도 같이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사례 28>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그 때 한국에 온 후로 보지도 못하고 난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장례식도... <사례 27>

한국으로의 이주가 누군가를 더 그리워하고 아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대면하고 감정을 나눌 기회도 한국에 있음으로 인해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이다. 더욱이 그 아픔을 토로할 기회도 없고, 그것을 위로받을 공간도 없다.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점, 자신의 체류 지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가족 동반은 금지되고, 가족 초청 조차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가족을 대체할 어떤 감정적 지지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가 과제이다.

필리핀은 18살 넘으면 한국 C3비자 받을 수 없어요. 아마도 불법 걱정돼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례6>

사례 여성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거주 경력이 짧게는 4년에서 13년에 이르지만 인터뷰는 간단한 영어와 통역을 통해 진행하였다. 공장노동자, 제조업 종사 중인 미등록 체류자, 가사노동자로 일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배울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만,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산인 한국어조차도 되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의사소통 가능 수준의 한국어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사례 12나 13의 미등록 체류자 같은 경우 아이 학교 문제 때문이라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희망은 크다. 문제는 절대적인 노동 시간으로 인해 그 틈이 주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데 있다.

4.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생애사의 사건들

법적인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의 체류자격에 한정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정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돌아갈 것이 예정된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적을 받기가 비교적 용이한 결혼 이민자, 동포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의 이용자가 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상황은 훨씬 혹독하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생애사적 사건이 미등록 상태인 이주여성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에게도 삶은 지속된다.

1) 격려 받지 못하는 임신과 출산

사례 여성들 중 한국에서 출산을 경험한 미등록체류자는 5사례이다. 각각 사정은 다르지만, 출산이나 임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었고, 2년 정도 생리가 없었어요. 임신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3달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가려했는데, 아이 낳았고, 보험 없고, 문제 있어서 일한 돈 500만원 정도 모두 병원비로 났어요. <사례 32>

사례 32 여성은 면접조사 참여자 중 한국 체류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이다. 단기 체류비자로 있던 중 예기치 않았던 출산으로 당사자도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고, 지낼 만한 곳이 없어 위기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대기 중이었다. 다른 미등록체류자의 경우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출산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출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이 아닌 선량한 시민의식에 기댄 행운이었다.

**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보험 없고 그냥 좀 싸게 소개 받았어요. <사례 12>

은평구에서 낳았어요. 거기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가는 데예요. <사례 13>

다른 경우는 동포여성의 사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출산뿐 아니라 폭력으로 인해 서도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 그나마 본인의 지역보험 가입으로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었지만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기이주여성 보호시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아이는 혼자 낳았어요. 남편은 아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은 몸도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은데...갈 데도 없고, 엄마는 청주에 있지만, 재혼했고, 아빤 대구에 있는데, 아이를 낳은 저를 봐 줄 수 없을 테고...<사례 30>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 서울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일정 연령에 다다른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결혼이나 출산 등의 생애사적 사건이 체류 자격이나 개인의 사정을 가려가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체류자격을 구분해 주어지고, 제도적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은 선량한 시민의 선행에 기대야 하는 것이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이다.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과 불특정 다수의 착함에 기대는 것이 사이에서 어느 쪽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보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정착할 만한 곳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길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점이다.

2) 아픈 몸, 불안한 노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임신이나 출산보다도 더더욱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겪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실이다. 더욱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질환과 신체적 쇠약을 동반하게 된다. 이주의 역사만큼이나 이주여성들도 나이가 들었고 그에 따라 몸 아픔과 노후에 대한 불안 등이 한국어실력이나 일에 대한 욕구 못지않게 크게 부각되고 있다. 면접조사에 응해 준 여성 중에는 현재 암으로 치료 중임을 밝힌 여성은 2명이나, 그 외에도 간경화나 류머티즘, 척추 질환 등 중증 질환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상적인 몸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14년도에 유방암 수술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3년째인데요. 3년 놓고 나니까 경제상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래도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지금 할머니 하나를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야하지요. 제가 안 벌어 놓으면 연금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국민연금이라도 이제 나온다 해도 20 만 원짜리 이것뿐이고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3년 동안 돈 쓰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이제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못 쓰잖아요 할 데가 없잖아요. <사례 24>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중국동포 출신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온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드러나는 문제는 질병이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본국에서의 삶과 서울에서의 삶의 단절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다고 해도 연금 등 복지제도를 이용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저는 류머티스예요. 지금도 손이 부어 있어요. 이러니까요 내가 좀 하고 싶어도 진통제 약을 먹으니까 크게 아픈 줄은 모르는데 어디 나가서 일을 하려고하면 일을 안 쓰려고 해요. 손이 이러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저 유방암이다 하면 말 안하면 모르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하면 손이 딱 보여서, 지금은 이래서 옷으로 딱 가리지만은 <사례 23>

서울에서 스스로의 노동에 기댄 수입 이외의 다른 생계유지 수단을 갖지 못한 이주여성에게 건강한 몸은 그 자체로 생활의 밑천이 된다. 또한 병든 몸이라고 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몸 아픔의 문제는 이주여성에게 치료보다는 생계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당사자뿐 아니라 남편 역시 몸이 성치 않은 상태이나 당장의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이다. 장애가 있다고 해도 국민이 아닌 경우는 주어지는 혜택이 없다는 데 대한 불안도 있다.

원래부터, 한 20년 됐어요. 장애인이어도 외국인이라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고 등급으로는 3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국적, 국적신청 그것을.. 그것도 뭐 5년 지나야 하잖아요. 우리 정착한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나중에 5년 되면 봐야죠. <사례 20>

아저씨는 척추협착증이 있어서 작년도에 한번 수술했어요. 시술하고 시술 안 되서 수술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가 손목이 이렇게는 앓아가지고 가정집 일해서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협착증 수술하고 나서 좀 낫다 이랬는데 이제 4년 되니까요. 그 위에 또 협착증이 생겼어요. 지금은 아저씨가 아파, 집에 있어도 아프고 나가 일해도 아프면 나가 일해야지 하면서 <사례 23>

물론 국민이라고 해도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으로 인해 중증장애가 아닌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무엇이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개인에게 차별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국적일 때는 국적을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시 문제는 체류 자격으로 귀결된다.

3) 삶을 위한 공간 확보

서울의 주거비는 선주 한국인에게도 큰 부담이며, 집값 이슈는 늘 정책의 화두가 되었다. 주거를 둘러싼 문제는 비용에서, 주거 공간 자체의 쾌적함, 집주인이나 이웃 주민과의 갈등 등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서울 서베이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만이 자가라고 응답하였고,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어 이주민들에게 집값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면접조사 참여 여성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이나 같은 세입자 간 갈등이다.

갑자기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물 또 그날처럼 가득 나와 있어요. 주인한테 전화를 했지, 전화를 했더니 아줌마가 내려와서는 어디서 물이 이렇게 나왔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여기 하수구가 막혔다 플래시로 비춰보니까 싱크대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역류해서....그 아줌마가 중국 사람들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래서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줌마 중국 사람만 기름 먹나요? 걸리려니까 별게 다 걸려, 내가 들어가 4년 동안 살면서 막힌 거면 내가 고

기를 얼마나 먹고 기름을 얼마나 버렸다는 말이에요? <사례 22>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특정 국가출신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요인들이 시시때때로 불거지고, 그때마다 원인을 이주민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 대해 사례 여성의 불만은 매우 크다.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같은 세입자 간에 생기는 갈등 문제에도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보다는 특정인의 탓으로 돌리는 관행 속에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사는 집은 3층 다가구 주택인데...2층에 우리가 살고 3층에는 다른 우즈벡 사람 살아요. 반지하 하고 1층에도 외국인이 사는 것 같은데....집주인은 다른 데 살고...집주인이 한국 사람이어도 어느 한 집이 외국인이면 그 집은 한국 사람이 잘 안 사는 거예요. <사례 >

이주민과 선주민이 아예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살게 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주인 차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 세입자를 가려 받고 결과적으로 특정 주택의 경우는 세입자 전원이 이주민으로 꾸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보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분리가 문제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휴식과 생활을 위한 재충전의 공간인 집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주 여성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몇 집이 같이 있으니까 수도요금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걸 사람 수로 나누는데, 우리 집에만 늘 비용이 더 나와요...우리가 미등록인 거 아니까 우리한테 자꾸 더 내라고....<사례 12>

통상 수도요금 등이 개별 호수로 분리 부과되지 않고 건물 단위로 부과될 때 호수별로 거주자 인원수에 따라 분담을 하기 마련이다. 사례 12의 여성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집마다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에 따라

얼마씩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사례 여성은 해당 정보를 들은 바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결국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례 여성의 이야기가 오해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선 서울 서베이에서도 집주인이나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차별 대우 경험이 직장 내 차별 다음으로 높게 나왔으며, 일상에서 이주여성이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얼굴이 표나니까, 그리고 아이도 넷이어서 집은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냥 외국인이니 안 된다는 말을 집주인이 많이 해요. <사례 38>

인종적 특성이 두드러진 이주민의 경우는 집을 구하는 일 자체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게 난민 체류 자격을 인정받아 정착한 사례 38 여성의 가족은 아프리카 지역 출신으로 자녀가 넷이다.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요인인 외국인이라는 점, 아이가 넷이라는 점이 이 여성의 가족이 집을 구할 때마다 겪는 어려움의 핵심이다. 문제는 그것이 선주민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가장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영원히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5. 이주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은 현재 30여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국경 안에서 다른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앞선 이주여성들의 면접조사에 나타나듯 삶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의 속성은 삶의 장면 장면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 체류 자격에 묶인 이주여성의 거주자로서의 권리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주여성 정책 지원의 시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지원단체 활동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주민 지원단체 활동가의 면접조사 결과와 이주여성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함께 인용하여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접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IV-4 】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사례	소속	관련 경력	현재직책	주요 이용자
가	이주민 건강권지원 단체	15년	대표	성별 불문 이주민 전반, 미등록 이주민
나	이주민 건강권지원 단체	12년	사무처장	
다	이주노동자 지원 기관	15년	지원팀장	필리핀 출신 이주민
라	이주노동자 지원 기관	9년	교육팀장	초기입국자, 미얀마 출신 등
마	이주노동자 지원 기관	3년	직원	장기체류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양육
바	위기 이주여성 지원기관	10년	대표	체류자격 불문 위기이주여성 전반

1) 기본권으로서의 건강

서울 서베이에서는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대상으로 모국친구나 친척이 우선적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건강문제는 모국 친척이나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료 기관을 찾아야 하나, 이주여성의 형편에 따라서는 의료기관 이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질환 여부를 떠나서 100% 본인 부담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역간병사업을 할 때 어쨌든 시 사업으로 저희가 12년도부터 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안 되고, 부산만 의료 통역 사업, 통번역 사업을 좀 했었고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방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은 거다..... 가장 체감 적으로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소통이나 건강 문제발생에 있어서 간병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 이고 쉽게 해결 되지 않는 부분이니 시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되게 좋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주민들, 서울시 이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사례 나>

의료 서비스 체계를 이용할 때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번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이주민 건강권지원 단체 관계자의 제안뿐 아니라 이주여성 자조단체 관계자로부터도 제안되었다. 병원 진료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이 일반적인 회화와는 다른 전문성을 띠는 점에서 이는 삶의 편의를 넘어 생명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병원에서 쓰는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병원이 영어라면 그래도 좀 큰 병원들에서 되는데 작은 동네 병원은 영어도 어려울 때가 있고, 동남아 언어라면 더 안 되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울시내 크고 작은 병원에 다 비치하면 어떨까...<사례 37>

나아가 이주민들이 특히 미등록 거주자라 할지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주민 건강증진센터가 서울 정도 규모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하나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도 나온다. 간단한 질환에 대해서도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미등록 체류자가 기존의 의료시설 이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더불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신분의 노출로 인해 의료시설 이용에서 늘 불안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존재가 더욱 절실할 수 있다.

우리가 이주민 건강증진센터를 제안한지가 꽤 됐어요. 현장 활동을 하면서 전국 단위의 이주민들의 건강 양상 이라든지 질병 양상 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그런 걸 해보겠다. 몇 번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2008년 2010년, 두 세 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부터 모델로 해도 되는데, 서울시에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들이 거주 하고 있으니까 <사례 가>

기본적으로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외국인주민 종합시설 중 한 공간에 이주민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선다면 실제 효용성이 클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될 점은 이주민이라면 법적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특히 중국동포 출신 고령자들의 건강문제, 미등록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건강 지원이 전무 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 고려해 볼 사안이다.

2) 적응지원 만큼 중요한 귀국 준비 지원

건강권이 한국에 살고 있는 동안 기본권으로서 시급한 지원 과제라면 현재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결국 귀국하게 될 이주민에게 귀국 준비를 지원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한국에 들어올 때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고려한 프로그램도 보다 정교하게 구성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이주민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현재의 비자 체류 제도가 설계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이주여성의 생애주기와 함께 이주주기를 고려한 정책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근로자들도 이제는 좀 다르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입국하는 친구들은 가장 기본이 언어의 욕구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입국하는 친구들이나 E7이라는 특정 활동의 비자를 가진 친구들은 언어보다는 문화의 관심이 더 많고, 귀환을 앞둔 친구들은 귀환교육에 더 관심이 많고 이래서 지금 센터별로 특성이 다 다른데. 귀환 교육을 준비하는 센터가 있고 <사례 라>

현재 이주민의 수요 역시도 한국 체류 단계에 따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기관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정도의 규모와 역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단계의 교육이 정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미등록 체류자가 다수 이용하는 기관의 활동가는 특히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견디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귀환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음이 제안하고 있다. 귀환 준비의 필요성은 단순히 지원 단체 활동가에게서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야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지금까지 왔지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겠다고 하면 그냥 출국되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사례 9>

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특히 귀환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입국의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는 정해진 기준을 개인이 가늠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결국 입국 시부터 귀환 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한국 생활에 대한 설계가 없을 경우, 사례 여성처럼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일피일 귀환을 미루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어려서...좀 크고 나니까 여기 생활에 익숙해져서...지금은 아이가 대학까지는 여기에서 다녀야 하지 않을까...아이가 한국에서 대학 갔으면 좋는데...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아직 엄마도 있고...<사례 13>

일부 동포들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현재 외국인의 한국 거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머뭇이라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생애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해진 시기에 떠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

한번 놓친 시기를 되돌리는 것은 개인이 기획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거나,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경우, 귀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어떻게 귀환을 준비할지 막막해 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오늘 당장이 아니라 해도 어느 시기를 정해두고 귀환을 준비해야 함에도 당위로서의 귀환은 존재하지만 그 실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실에서 법적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아동의 교육권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성년기에 이른 자녀의 교육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빨~리 보내라. 어느 정도 살았으면 빨리 갈 것을 계획해라! 당신의 아이가 여기서 한국인과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체류를 위해서 결혼해서 똑같이 결혼이민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라고 생각될 때 빨리 가라! 가서 그 나라에서 적응해라! 그리고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다른 경로의 이민을 잡아라...<사례 마>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미등록 체류 상태의 한계 등이 이야기되고는 있다. 그 핵심에는 한국에서 정착을 원할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재입국을 하는 것이 당사자나 자녀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이라는 매우 원칙적인 이유가 전제되어 있다. 실제 자녀

가 있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현재 제도 하에서는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조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귀환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본국으로의 귀환 역시 또 다른 이주로 쉬운 결정은 아니다.

지금은 지원 단체에서 도와주니까 이나마 재활을 하는데 돌아가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치료 비자⁶²⁾ 얘기도 센터에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거 신청했다가 안되면 바로 출국하니까...떠나온 지 9년, 10년 이니까...〈사례 27〉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2명이 모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사례 27의 여성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의 치료 때문이다. 현재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그 치료조차도 민간 지원 단체의 도움에 의존한 기본적인 재활임에도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그 정도 수준의 치료조차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귀환을 막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대를 걸어봄직한 치료 목적의 비자 또한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거부당했을 경우 즉각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데 부담이 크다. 결국 이주민 정책이 간과해 온 귀환 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당사자의 불안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애의 인생까지 망가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어 교육과 몽골어 교육을 미친 듯이 시키고 의무적으로 강제로 거의 시키거든요? 그래서 엄마아빠들이 자기 애가 한국인을, 한국인처럼 자라기를 바래요. 근데 그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한국인처럼 자랄 수 없고 한국인처럼 살 수 없고 한국의 주류사회에 들어올 수 없고. 〈사례 다〉

한국사회가 보다 이주민이 정착하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가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더불어 그 못지않게 이주민에게도 다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를 고민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어디에서 살 든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지만, 과연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이주민들 스스로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62) 한국 내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전용 사증으로 환자 본인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체류기간 1년, 비자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용 비자 “G1(M) : 1년 (장기 치료와 재활 등)”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할 삶의 과제이다. 이주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당장 오늘 내일의 시급함을 해결해 주는데 급급하기보다 스스로 사고하고 삶을 경영하는 개인으로 내일을 설계하는 이주민의 상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3) 통합지원의 과제

여기에서 통합지원이란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기관들이 정보가 모이는 허브로 기능하면서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할 때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체류 자격의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러한 기관을 연결해주는 기능까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목적으로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가를 묻는 지원이 아닌 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를 파악해 이슈별로 대응해 갈 필요성은 본인을 지원해 줄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불이익을 참고 견디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절실하다.

제가 본 이직하신 분들은 다 스스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은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고 고용센터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고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바로 생계적인 부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역꾸역 참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직을 하는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 내가 외국에 왔으니 관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조력해주는 센터라든지 담당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사례 마>

정착이든 귀환이든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주민의 상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체류 자격으로 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최대한 능동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갈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 여러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 역시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주여성에 한정해 볼 때 통합지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삶의 국면을 맞게 되는 많은 체류자격의 여러 국가로부터 온 이주여성들은 그 다양성 속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

밖에 없는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 사례들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갈라서 당신은 자정폭력이니 여기로 가라, 당신은 난민이니 여기 오면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례 바>

앞선 면접조사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위기 출산을 경험하거나, 긴급한 귀국이 필요해지는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도 개별 사례에 따라 분리된 체계에서의 지원이 아닌 이주여성인 동시에 위기에 처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항구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피해가 더 큰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주민의 경우 폭력 피해 여성 등의 지원체계는 각각의 폭력 유형별로 구분된 지원이 이루어지나, 이주여성의 경우 그렇게 세분화될 때 오히려 지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여성 전반과 위기 상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긴급 지원 시설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센터가 있고,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센터들이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근로자들이처음에는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했지만 나중에는 한국어보다는 문화 활동을 하는 센터들이나 이런 데를 더 찾아다니고 싶어 하고 <사례 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주여성의 삶과 그 삶을 하나의 주기로 접근하는 정책을 고려할 때 보다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례 라의 지원 단체 활동가의 이야기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서울생활의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어떻게 욕구가 달라지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 초기에 절실했던 한국어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중요해지는 단계에서는 그 중요도가 문화 활동에 밀리게 된다. 귀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주여성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통합지원은 서울 생활 지원을 위한 이주민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인 동시에 이주여성에게는 낯선 땅 서울에서의 적응을 위한 지원에서부

터 귀환 준비까지의 통합지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이주여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체류자격이 실제 삶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체류 자격에 의해 이주여성들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는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같은 아이라고 해도 다른 조건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모두 체류 자격에서 비롯된다. 물론 일부 노동의 대가로서 급여는 일반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기는 체류 지위의 이주여성이 더 높은 경우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목격되기도 하였다. 결국 제도의 밖에서 작동되는 기준은 체류 자격이라는 제도가 만들어 낸 부작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이주여성이 경력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 체계를 논할 기회 자체가 막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직업으로서의 일,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주여성의 직업 전문성과 경력은 한국 체류 경험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었는지, 유학이나 결혼이주였는지 등 입국 시 체류 자격이 한국에서의 삶을 규율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서울에서의 생활이 체류 자격에 의해 일원화될 수 없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생활을 위해 경제력이 필요한 도시에서의 삶과 체류 자격대로 살아지지 않는 삶의 우연성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로 통용되나,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는 점도 목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나 지역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체류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해 편견에 찬 선주민들의 인식 수준에 비해 이주여성들은 스스로 일터에서 지역 사회 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주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선주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지점이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체류 자격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굳이 면접조사 결과를 들지 않아도 명백하다. 정해진 체류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규정하지 않은 결혼이나 가족 형성, 출산 등의 변수가 생겼다고 해도 변화를 고려한 제도적 지원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임신과 출산이 뒤따르는 경우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극히 일부의 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에게서 결혼이나 출산, 육아와 관련된 이슈는 보다 침예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현재 일부의 이주여성에게는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차원에서 미등록 체류자라고 해도 건강권 확보, 육아 지원 등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진료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주여성들의 경험과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서울의 특성을 살린 지원 기관을 이야기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통해 볼 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선험함에 기댄 지원이 아닌 제도적 지원이다. 육아 문제의 경우 가장 심각한 처지에 놓인 것이 미등록 체류자이기는 하나, 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이라고 해도 현재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 체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 아닌 주민의 권리가 어디에서부터 확보될 것인지도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안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주 정책이 영주나 귀화를 목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귀환을 목적으로 했는가이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실에서 체류기간을 정해두고 입국하는 이들이 다수임에도 현재 정책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 인터뷰에서는 일부 지원 기관들이 귀환 준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입국 초기에서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주기를 고려한 정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고려된다면, 한국에서의 삶이 이주민에게도 또 다른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계기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환이 유예된 생활을 이어가는 미등록 체류자 이슈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이주 여성이 한국 국적이나 한국에서의 영주나 귀환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이주

여성이 귀환을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체류자격이 같다고 해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을 때 이주여성의 삶은 지금까지 다문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이 보고자 하는 이주여성만이 부각될 것이다. 이주여성이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노동하는 이주여성, 자기 돌봄을 하는 이주여성, 가족과 함께 하는 이주 여성 등 다양한 층위의 삶을 생각할 때 지원 정책은 이주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떠날 수 있음을 고려한 정책은 바로 개인이 처한 생애주기와 함께 입국에서 귀환 혹은 영주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을 둘러싼 이슈는 다음의 도표를 통해 보다 적나라하게 읽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사안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시간의 문제이고, 시간이 쌓이면서 감정이나 정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현재의 법적 체류 자격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여성들의 이야기가 현재의 정책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같은 노동, 다른 보상과 다른 체류지위	들키고 싶지 않은 착취: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고정 관념과 오해
•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 3인의 이야기. • 법적 체류자격 상실 이후 가혹해지는 노동, 하락하는 노동조건	• 노동하고 사고하며 비용을 지불하는 삶. • 인정받지 못하는 경력과 격려 받지 못하는 노동	• 여성귀화자의 남편 • 남성 귀화자와 결혼한 여성 • 법을 잘 지키는 미등록자 • 되돌리고 싶은 국적 / 받고 싶은 국적

특히 미등록 체류자는 주목해야할 중요한 집단이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노동자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저출산을 이야기할 때 이들의 아이들은 빠져 있었고, 건강문제에는 특히 무감했던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미등록이주아동이라고 애도 아동 권리협약 등에 의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만큼이나 어쩌면 교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주여성의 건강권 특히 미등록 체류 여성의 건강권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과제로 던져진 숙제이다.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1.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방향
2. 이주여성의 생애주기와 이주주기를 고려한 정책 지원
3. 기타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1. 이주여성 지원 정책의 방향

현재 서울시의 이주민정책은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제외하면 일부 서남권 지역이나 공동체 사업 중심의 중국출신 동포 정책과 유학생 인턴 사업 등으로 극히 제한적인 범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책명으로 외국인다문화정책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많은 사업들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다수의 이주여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이주여성 전반을 포괄하고, 해당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주여성지원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기존의 선주민 사회와 이주여성의 통합을 이야기했다면 통합적 관점이란 “이주”라는 특성이 갖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공통 속성을 조망하는 관점에서의 통합을 이야기한다. 즉 선주민사회와의 통합은 물론이거니와 이주여성에게 특정 삶의 국면이 아닌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함에 주목하는 것이다. 더불어 입국 초기에 초점을 둔 정책뿐 아니라 입국에서 귀환 혹은 영주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주기 전체를 조망하는 차원의 논의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앞선 면접조사나 기존

통계에서도 이미 이주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정착, 출산, 양육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대다수 이주여성이 체류 기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기한이 얼마이든 입국 초기부터 귀환으로 이어지는 주기에 맞춘 삶의 설계는 이제까지의 정책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이주여성 전반에서 이주노동자나 동포여성의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음에도 이들을 외국인다문화정책에서 포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출입국통계나 집계외 편의상 법적 체류지위를 단위로 분류한 현재의 체계가 이주여성의 삶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여성에게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이슈뿐 아니라 취업과 직장 이슈가 대두되는가 하면, 면접조사에서는 법적 체류 지위를 가지지 못한 미등록 체류자라 할지라도 가족을 이루고, 스스로의 직업 정체성을 명료히 하며 오랜 기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책이 이주를 배경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또한 서울을 구성하는 주민이라는 시각을 기본으로 할 때 다양한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 이주여성 삶의 실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으며, 이에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이주민에게 개방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삶의 단계와 이주의 특성 그리고, 이주자로서 이주와 재이주 사이의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는지의 위치가 교차하는 지점들 속에서 이주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체류 지위에 갇힌 이주여성의 삶의 다차원성이 보다 섬세하게 드러내기 위한 탐색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의 지속

이 연구가 이주여성 지원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기존 선주민에 대한 주제별 정책 이용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해서 기존의 이주다문화 정책이 필요 없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대상별 정책에 갇혀 있는 이주여성 지원 정책을 다양한 주제로 확장해 가야 함에 주목한 것이며, 보다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현재 서울시의 외

국인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비교할 때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등 대상의 확장과 함께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등 지역 정책으로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정책이 담지 못하고 있는 취업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삶과 미등록체류자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동을 동기로 이주를 한 여성이라고 해도 삶 전반에 걸쳐 노동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삶의 다양한 국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주노동자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고 해도 기존의 결혼이민여성이나 외국국적 동포 여성에 대한 정책과 전혀 다른 맥락의 정책으로 흐르게 될 수는 없다는 정책의 공통 속성 속에서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이주여성지원 정책의 확장 가능성 : 일반정책의 이용

현재 이주여성지원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최초에 입국을 허락한 체류자격을 통해 이미 삶의 범주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실태조사가 가족 동거 여부를 질문하지만, 면접조사 참여자 중 가족 동거가 허용되는 체류자격은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일부 체류 비자를 가족단위로 받은 경우도 눈에 띄나,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지나지 않으며, 가족이 함께 산다고 해도 각각의 가족원이 각자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동거하는 경우이다. 즉 가족이 함께 산다고 해도 이들의 동거를 한국이 허락했다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알아서 한국으로 온 이후에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이에 다양한 이주민 조사에서 가족 동거 여부를 묻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수순이다.

이주민이라는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함께 서울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교통 정책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문제에서 선주민에게 지원되는 복지 및 건강 정책 등 특별히 이용자의 국적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정책의 융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 국적자 가족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양육 지원은 보다 시급히 이주여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시행될 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

시에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나 여성·가족 거버넌스의 외국인주민 분과 등을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때 정책이 당사자들로부터 훨씬 풍부히 제안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여성의 생애주기와 이주주기를 고려한 정책 지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해서 국적에 상관없이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장의 확대, 외국인 가족의 인정,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인정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아동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한국 국적 선택 기회 부여, 한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미성년자의 한국 국적 선택 기회 부여 같은 방안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될 정책들이다. 더불어 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이나 범죄 피해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 체류 자격 부여 등은 미등록 상태 그 자체가 취약성을 만들기 때문에 고려되는 조치들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은 이주여성에게는 국경을 넘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해 나가야 한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가족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이 뒤따르는 등 인간 삶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입국을 앞둔 상태에서 혹은 입국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이주여성의 생애에 미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서울 생활 중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응 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는 이제까지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이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국내 정착과 귀화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정 기간 체류 후 귀환이 예정된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이나 귀화를 목표로 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은 그에 따라 귀환 준비가 아닌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등으로 내용이 달리 구성될 수 있다. 이에 서울생활 초기부터 귀환 준비기까지를 주기로

한 단계별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V-1> 이주 주기를 고려한 정책 과제



1) 건강

건강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주여성은 미등록체류자이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질환이라고 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하며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 더욱이 자녀가 장애라도 있을 경우는 시민단체 등의 지원 없이는 치료나 재활에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정책들은 현재 특별히 이주여성 중에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에 한해 지원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많은 이주여성이 서울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서울시 이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주민 건강증진센터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건강권을 지원하는 기존의 단체와 협력하거나 해당 지역 보건소를 이주민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미등록 체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그 규모나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정책 사업 중에는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해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히 체류자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⁶³⁾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 12 곳⁶⁴⁾에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는 2018년도에 1,488백 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원 목표 건수는 1,700건으로 잡고 있다. 건당 87만원 가량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도출되어 100만원 이하 치료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 중심의 이주민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알려지고, 센터를 통한 다국어 의료 정보 제공과 일반적인 건강 검진 프로그램이 체류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된다면, 이주여성이 진료비 걱정이나 신분 노출 우려로 인해 진료와 치료를 꺼리는 사태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자녀 양육 및 교육

현재 합법적 체류 자격이라고 해도 결혼이주여성과 법적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이주민 자녀의 보육에 한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도 이주민들은 우선순위에 밀려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는 형국이다. 미등록체류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물론 미등록체류자라고 해도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아이 맡기기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아동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아동이라고 해도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육 역시 같은 수준의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소위 합법적 체류자의 아이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 보육이 불가능하다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영주권자나 거주 비자를 가진 이들 중 국적 신청자의 경우 국적이 나온 이후에는 이미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할 시점이 된다는 모순도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미등록체류자 자녀의 경우 군포시에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미등록아동 어린이집의 사례⁶⁵⁾를 모델로 서울시에도 같은 형식의

63) 사업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 및 그 자녀로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이다

64)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에이치플러스병원, 상계백병원, 성애병원, 북부병원, 성북중앙병원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분명한 것은 통합의 원칙과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그 안에서 보완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로, 특화 시설 등의 설립은 불가피한 경우의 고려사항이라는 점이다.

3) 적응과 귀환 지원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의 삶이 이주여성 전체 삶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애설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한국어교육이나 상담 지원 등에 더하여, 입국 초기 한국에 온 목표에 맞춘 생애 설계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면 소비생활이나 개인 시간 설계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 차원의 이주민 정책이 원칙적으로 가족 동반 이주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 감정적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을 위한 공동체 지원 사업을 서울시의 다문화마을 사업 중 일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차이는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역기반 사업이라면 이주민공동체 지원 사업은 일정 인원 이상의 이주민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업 제안 등에서 당사자의 역량 등을 고려한 사전 교육 등은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든 지방 정부든 정책을 이용하는 이들이 대다수 합법적 체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체류자격에 불문한 지원을 실시하다면 보다 많은 이주여성이 서울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주민으로 성장해 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입국 시기가 각기 다른 이주여성들이 공동체 내에서 서울 생활 경험을 나누거나, 귀환을 위한 준비 등을 함께 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통한 자조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센터 프로그램을 입국초기에서 중기, 후기의 시기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생활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65)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을 돌보는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시에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제공하고, 이주민 인권단체 ‘아시아의 창’이 운영을 맡고 있다.(한겨레 신문 2017-05-04 기사 참조)

할 수 있다. 지속 거주 의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 이주여성이 서울에서 살 결심을 했을 때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귀환 시까지의 생활 설계가 착실히 이루어질 때 서울에서의 삶이 이주여성 삶 전체의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주여성의 서울 생활 경험이 이후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여성이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는지와 함께 이주의 어떤 지점에서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이 연구는 기존의 이주 논의가 “다문화”로 수렴되면서 많은 이주여성들을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양한 체류 자격의 이주여성이 서울을 구성하는 주민으로 정책의 적극적 이용자로 거듭나게 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이주여성정책에서는 적응과 정착,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면, 이 연구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체류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초기 정착 못지않게 서울에서의 삶과 귀환을 위한 준비에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주여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그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조사인 서울서베이의 외국인조사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서베이 조사 참여자의 연령대별 배분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과 달리 20대의 비율이 39.3%로 과도하며, 체류 자격에서도 외국인주민 현황에 비추어 유학생이 비중이 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에서는 소득 구간이 200만원 단위로 광범위해 정교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50만원 단위로 소득 구간이 좁혀질 때 조사 결과가 실효성 있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참여자의 거주 형태에서는 혼자, 부모/가족과 거주 등으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데 반해,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 항목이 따로 있어, 거주형태

에서 부부 함께 거주나 별거 등의 항목이 추가될 때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가족 동거나 자녀 동거의 경우는 실제 응답자 본인의 비자 체류 자격에 의한 가족 동거인지, 가족 개개인이 따로 비자를 받아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가 구조화된다면 비자제도의 모순과 함께 가족 동거에 대한 개인들의 바람의 수위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취학 연령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원인으로 제시된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문제인지, 같이 살기 위한 비용의 문제인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통합적 관점으로 이주여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목표 하에 구성되었다. 이에 그동안 다문화정책이 간과해 온 이주여성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선주민과 이주민이 동등한 정책이용자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책의 적극적 이용자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의 가능성 제시 차원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주여성을 체류자격과 출신 국적에 의해 구분하고 정책적으로 분리해 온 관행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이주 주기의 개념으로 이주의 다양성을 해석하고자 한 것은 이 연구가 가진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의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연구는 정착과 귀화에 한정해 주장되던 사회통합에서 입국부터 정착뿐 아니라 귀환까지를 아우르는 이주주기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현민 외(2014), “중양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0권 제4호, 215-240쪽
- 강희영 외(2013),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분석을 통한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공수연 외(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1호 (통권 제127호), 133-150쪽
- 김민길 외(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옥사카(Oaxaca) 분해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5권 제4호, 65-106쪽
- 김경희 외(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14년 제53권 2호, 75-110쪽
- 김선영(2015), “중국 유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인턴십 경험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2호, 107-135쪽
- 김영경 외(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근린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권2호, 163-175쪽
- 김재민 외(2012),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립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혜순 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219-249쪽
- 노지현(2015), “산업재해를 겪은 후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 연구 접근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제9권 제1호, 315-347쪽
- 문형란(2016),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권2호, 215-234쪽
- 민가영(2009), “트랜스 개념을 통한 저소득층 십대 이주여성의 반복적 이주에 관한 연구 :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4호, 5-39쪽
- 박미숙 외(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4권 제2호, 269-302쪽
- 박재규(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제15권 제1호, 5-33쪽
- 박준성 외(2015),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 사회문제』 제21권 제1호, 21-43쪽
- 성지혜(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통권 제88호, 83~115쪽
- 신선희 외(2014), “재한(在韓)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45-69쪽
- 윤기찬 외(2016),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QOL) 도농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42권 2호, 343-367쪽
- 윤민숙 외(20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여가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6호, 337-349쪽
- 윤성학외(2011), 『한·중앙아시아 인적 자원의 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승주 외(2016), “몽골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경험: 가부장제, 차별주의, 낙인의 다중적 결합”, 『동서연구』 28권 4호, 5-34쪽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51-290쪽
- 이기연(2015), “네팔여성의 한국이주와 임금노동에 관한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9권 제2호 (제18집), 121-149쪽
- 이민경(2015), “중국 출신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을 통해서 본 정체성 재구성: 대구,경북 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권2호, 141-171쪽
- 이병렬 외(2017), “예술홍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행위 대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 문화연구』 제50집, 177-204쪽
- 이송이 외(2010), “한국에서 조선족이모로 살아가기- 조선족 육아·가사도우미의 삶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1호 25-36쪽
- 이은아(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115-146쪽
- 이혜웅(2013), 『중장년 조선족 이주 여성의 노동 경험과 탈구적 삶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혜웅(2014),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의 몸 아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30권 1호, 213-252쪽
- 이혜경(2011), “한국이민정책사”,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IOM 이민정책연구원
- 이혜경(2014), “국제이주·다문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제15집 1호, 129-161쪽.
- 이희영(2014),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 : 아시아 여성 이주민들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제102호, 110-148 쪽
- 임현진 외(2000),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한국사회과학』 Vol.22 No.3, 153-186쪽

장갑수(20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양육”,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4집, 341-365쪽

장명선 외(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명선·김선옥(2017),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Vol.7 No.1, 164-204(41쪽)

최은희 외(2014), “몽골 출신 대학원 유학생의 대학생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 17집, 309-353쪽

한승미(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기타 자료

2013-2017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조사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6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2016 외국인고용조사

Abstract

A study on Support Policy Measures for Migrant Women from an Integrative Perspective

Kang, Hee-Young

(Research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This study began by taking a critical perspective toward the fact that systemic aid for migrants is graded in accordance with current legal sojourn status and aims to highlight the fact that migrant women, despite what their legal sojourn status may be, have the same needs as Korean citizens in each life stage. This study thus emphasizes the fact that policies must regard migrant women not in terms of their sojourn status but as human beings who have the same needs as other legal citizen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statistics related to Seoul residents taken from the Foreigner Survey (2016) and Foreigner Employment Survey (2016) conducted by Seoul Survey in addition to answers given to the questions on common characteristics in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tatus Survey (2015). Interviews were conducted of 39 migrant women and six women actively involved in migrant aid associations.

Analysis of the survey content revealed a number of inconsistencies, including the fact that the surveys asked questions about family member cohabitation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sojourn statuses available to migrants do not permit their families to stay with them in Korea. There were also questions that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come ceiling for certain types of sojourn statuses. The interviews that were conducted

revealed the desire for close relationships of migrant laborers who are prevented from bringing their families to Korea, the health-related difficulties of illegal aliens who are unable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and the exclusion of legal aliens from all forms of childcare-related aid. This shows that current policies largely fail to understand that migrants are equal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who have the same needs and emotions as Korean citizens.

The lives of migrant women, in particular, show that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sojourn status, are members of our society who live and work alongside Koreans and must be regarded as such. Migrant women struggle with two types of difficulties—one related to their status as laborers, marriage immigrants, or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the other related to the problems experienced by native residents of Seoul. Future support policies for migrant women must reflect this dual burden.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이주 다양성을 중심으로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강희영·문영민
발행일 2017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I S B N 979-11-87956-58-7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